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6호
2017. 2. 23.(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6419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6420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6

제6421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1

제6422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33

[훈 령]

제10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48

[예 규]

제115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53

제116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57

제117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59

◆ 고 시

제2017-4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61

제2017-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1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2

제2017-52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7

제2017-53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75

제201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77

제2017-55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9

제2017-56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23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37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정정) 139

제2017-59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43

◆ 공 고

제2017-395호 2017년도 제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51

제2017-42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152

제2017-42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54

제2017-4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55

제2017-437호 설계공모(지명초청)공고 156

제2017-4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57

제2017-4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59

제2017-45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161

제2017-452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162

제2017-454호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청회 및 특화
 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163

제2017-457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166

◆ 구 고 시

제2017-1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87

제2017-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191

제2017-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94

제2017-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95

제2017-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성공회대학교)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97

제2017-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200

제2017-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206

◆ 구 공 고

제2017-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안) 열람공고(종로구) 208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동대문구) 208

제2017-211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209

제2017-261호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
 공고(양천구) 214

제2017-270호 공향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열람 공고(강서구) 215

제2017-2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관악구) 216

제2017-250호 도시계획시설(장군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관악구) 217

제2017-2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218

제2017-24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219

제2017-2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221

◆ **사업소고시**

제2017-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24

◆ **사업소공고**

제2017-3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25

제2017-3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28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구로소방서) 238

제2017-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서초소방서) 238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송파소방서) 239

◆ **기 타**

제2017-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0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6419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보실장·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언론홍보실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을 “정례회 및 임시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의사진행”을 “본회의 의사진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청원·진정서”를 “청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출결처리”를 “결석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용조정”을 “의식배정 및 사용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의사운영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전산실의”를 “전산실·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같은 조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결산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제5조제15호(중전의 제16호) 중 “u의회시스템 구축(의원요구자료 등)”을 “의정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7.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20.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민권익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U-신문고 시스템(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화·방문 민원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9.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0.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민원 및 시민권익에 관련된 사항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호 중 “의원들”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5.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조사회답에 관한 사항
6. 국내 입법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10. 의회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의정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7조)제4호 중 “시·교육청”을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시민권익담당관 업무를 새로

이 분장(안 제2조, 제3조, 제6조)
 나. 신규 부서설치에 따른 부서간 업무 이관 및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신규 업무 추가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8조)
 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회 용어를 본 규칙에 적
 용하여 의회 용어의 일관성 확보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6420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
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를 “제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 제도”를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
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로,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고지서
등””으로, “건수에”를 “건수에도”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과세요건성립여부”를 “과세요건 성립 여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
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6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
례」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
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7인 이상 10인 이내”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7인”을 각각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
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인영 기타”를 “인영, 그 밖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7호 중 “17.활용대상”을 “17. 활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19.보존가치”를 “19. 보존가치”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로 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7항에 따라”로, “제1호서식에 의하고”를 “제1호서식에 따르고”로,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을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설치 운영하여”를 “설치·운영하여”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청 직장어린이집을”을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부위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활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하“부서”라 한다)”를 “(이하 “부서”라 한다)”로, “관리한다.다만”을 “관리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3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을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2조 중 “청원경찰의 징계”를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로 하고,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등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2”를 각각 “둘”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 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 제3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음연도 사용신고 수리)”를 “(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로 하며, “(이하 “농협”이라한다)”를 “(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별도계약에 의하여”를 “별도계약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용자대상자에 대하여”를 “용자대상자에게”로,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금의 상환기한전 회수)”를 “(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를 “제5조에도”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6월의 범위 안”을 “6개월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외빈영접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외빈영접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 2항”을 “제2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과 관련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10인”을 “10명”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를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후단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본문 중 “제84조 제2항”을 “제84조제2항”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받기 전”을 “받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을 “한정하여 10일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6조제2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첨부서류중”을 “각 호의 첨부서류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3조 중 “간사장”을 “간사장은”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조직내”를 “조직 내”, “통 폐합”을 “통폐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4조 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명이내”를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중 “4급상당”을 각각 “4급 상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인”을 “5명”으로, “5급상당”을 “5급 상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1조 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2”를 각각 “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3조의 규정”을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제2항 에 의한 ‘3급이상’을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자”를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조 제1항의 규정에”를 “이 조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를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를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내용이 나”를 “내용이나”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위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1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중 “업무등”을 “업무 등”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지원과장”을 “디지털창업과장”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재활용사업자 <제9조에 의하여”를 “재활용사업자 (제9조에 따라)로, “제외한다. 이하”를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없는 한 지체없이”를 “없으면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3에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규정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르
”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
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친
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재무회
계 규칙」 제12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
으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제9조에 따른 녹색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구매·용역·계약”을 “녹색제품 구매·용역·계
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녹색제품 구매계획”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를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
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를 “「녹색제품 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공고 및 열람하지 아니할”을 “그 요청에 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시일”을 “시작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한”을 “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전단 중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진술인과 주민측”을 “개최할 때 사업자 측
의 진술인과 주민 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가로 하여금”을 “전문가가”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을”을 “조정요청을”로, “이의신청서”를 “조정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 별표 5”를 “제17조제1항”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 중 “착공일기준”을 “착공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출 받은”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된 의견을 제출 받은”을 “의견을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통보하여”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입고의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입고의뢰서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경우에 한하여 입고 될”을 “경우에만 입고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차에 걸쳐”를 “여러 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 그 발생원인을 명기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적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자”를 “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결과”를 “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장에 따라”로,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한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출원등”을 “지출원 등”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체로하고”를 “자체로 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직인에게”를 “직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근무시간후”를 “근무시간 후”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사용료 기준)”을 “제3조(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마목 중 “기타식물: “가”목 내지 “라”목”을 “그 밖의 식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7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원””을 “제2조에 따른 동물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동물원””을 “동물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작 보존”을 “제작·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기타”를 “기관,

그 밖에”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모에 의해”를 “공모를 통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당해 문화지구내”를 “해당 문화지구 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4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지구내”를 “문화지구 내”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지구내”를 “문화지구 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외”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 의한”을 “1항에 따른”으로,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3항에 따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용자당시”를 “용자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호 서식에 의한”을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인”을 “2명”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
 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
 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을 “얕은 사
 항을 정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면에 대하여는”을 “지면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
 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
 廳)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취소 하고자 하는 때”를 “취소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매 발행일마다”를 “발행일마다”로, 같은 항 단서 중 “2회이상 발행하는
 때”를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분기”를 “분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특별위로금 지급”을 “특별위로금”으로,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만 지급한
 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를 “예금계좌로”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편의시설 그 밖에 노인에 대한”을 “편의시설과”로, “제공함으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에 대하여”를 “노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자로부터”를 “자에게”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2조”로,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경우에는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0조”를 “제22조”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9조 중 “자활공동체와”를 “자활기업과”로 한다.

제10조제3호 본문 중 “국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서울특별시”를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로, 같은 호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호 규정”을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 수 는”을 “받을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호 에”를 “제2조제1호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나목 및 라목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진행함에 있어서”를 “진행하는 데”로,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명하는데”를 “규명하는 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인후”를 “승인 후”로, “의한 연구 비지급계획서”를 “따른 연구비 지급계획서”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기금지원사업에”를 “기금지원사업에”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필요한 경우에는 심

의위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포함하여”를 “포함해”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추가로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검토회의시”를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검토회의 시”로,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을 “입찰참가업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심의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심의위원이”로 한다.

제30조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소집할 때”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않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등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기술자로 하여금”을 “책임기술자가”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규모, 기타”를 “시설규모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1월3일부터 2월말일까지”를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8월1일부터”를 “8월 1일부터”로, “제1호서식에 의한”을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6월전”을 “6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를 “회계규칙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전승락을 득하여야”를 “사전승낙을 받아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통합하고”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제작사로 부터”를 “제작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 중 “발생 할”을 “발생할”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인”을 “2명”로, “1인과 구조구급대원 2인”을 “1명과 구조구급대원 2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경우에는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하여는1명”을 “대하여는 1명”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 중 “하여서는아니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곤란 하다”를 “곤란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초래 할것”을 “초래할 것”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득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도착할 수있는”을 “도착할 수 있는”으로, “항공관계법령에서정한”을 “항공관계법령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바 에”를 “바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행중”을 “비행 중”으로, “거부 할”을 “거부할”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자료를제출하여야”를 “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소방학교 (이하)”를 “소방학교(이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6인”을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협의 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비치 활용할 수 있다”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으로 하여금”을 “소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무자로 하여금”을 “근무자에게”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득한”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륜차 운영관은 소방서의 경우”를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은”로,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를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분전에 운영관의 입회하”를 “10분 전에 운영관의 입회 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록 유지하여야”를 “기록·유지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득하지”를 “받지”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때에는 보상협의회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보상협의회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첨부 신청하여야”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일회계년도”를 “같은 회계연도”로, “기분”을 “분기”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를 “(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중”을 “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로,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

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5조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를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재무과”를 “자산관리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분임수입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분임수입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재무과”를 “자산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8조제1항”으로 “담당 공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8조제1항”으로 “담당 공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지처분후”를 “환지처분후”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의2제1항제4호다목”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제3조제4항에 의하여”를 “제3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영 제5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의한 당해”를 “따른 당해”로,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의 원활을 기하기”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6421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6.6.30 시행)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16.6.30 및 '16.3.30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 심사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강화) 조정

나. 투자심사 전 반려근거 강화(안 제8조)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규칙 제6422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를 “이에”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회계책임관 - 재무국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의회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다만

도로사업소의 종합·전문 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과”를 “각 과”로, “과장 및 관서의 장”을 “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계담당부서의”를 “회계담당부서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실행예산이”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로, “주관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징수”를 “법 제7조에 따라 징수”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8조 중 “영 제78조 예”를 “시행령 제23조에”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르되 서울특별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19호의2 서식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징수관은 영 제84조”를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3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40조의4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을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45조제3항 후단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47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을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 에”를 “대하여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로 한다.

제55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영 제104조 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구분하며 영 제103조 에”를 “구분하며 시행령 제49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영 제 102조 및 제103조”를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채권자가 현금지급명령서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서”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송금지급절차”)를 (“계좌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영(인영)”을 “인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 지급명령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를 “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인영(인영)과”를 “인영과”로, “인영(인영)이”를 “인영이”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서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중”을 “현금지급명령서 중”으로, “지급명령통지에”를 “지급명령서에”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 에”를 “시행령 제50조에”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별지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별지 제39호의3서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으로, “의한 신용카드를”을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32조 단서 중 “회의참석,”을 “회의참석에 대한 비용과”로,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

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청구서”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회계 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시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5조 중 “은 영 제108조”를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173조 중 “및”을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 제23호, 제24호, 제32호, 제4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2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일상경비교부금 반납품의와 반납결의서

반납품의

	수신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문서번호 :	접수일자			
시행일자 :	접수번호			
제 목 : 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요청 - 재무과		예 산 과 목	첨 부 참 조	
반납사유 :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 1. 회 계 명 : ○○ 회계 2. 건 명 : 첨부 참조 3. 반납금액 : 금 원(금 원) 4. 반납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원 계좌로 e뱅킹 처리. 끝.				

증 뒷쪽 참조	반 납 결 의 서			○○○○ 년도	○○ 회계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전 결			
금 원(금 원)					
반납일자	년 월 일				
반 납 자	성명 ○○ 국 ○○ 과 일상경비출납원 ○○○				
주 관 과 취급자	일상경비출납담당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반납				

(뒷쪽)

연번	결의번호	예 산 과 목			반납액	비 고
		세부사업	통계목	적 요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23호서식>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 보고서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채 주			채 주			채 주			채 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단			단			단		
			위 과오납금을 반 환하시기 바랍.			위 금액을 본 명령 서 지참인에게 지 급 하시기 바랍.			위 금액을 채주에 게 반환하였기 통 지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송부			단체명			단체명			금고		
			징수관 직 성명 ㉠			징수관 직 성명 ㉠			징수관 ㉠		
			금고 귀하			금고 귀하					
징 수 관		작 성 자				관	항	목	관	항	목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채 주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징수관		작성 자	
관	항	목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채 주			
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 금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송금과오납금반환보고서

제 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 관
채 주			
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 금 반환하였기에 통지 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계좌·현금) 지급 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주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	고지서					
		계좌	계좌 이체					
		현금 +계좌	계좌 이체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4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수 신

년 월 일
발신 : ○○시 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4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증 권 _____
증 권 명 _____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증 권 _____				
증 권 명 _____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결	실무 담당자	출납원	탐장	과장
재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증 권 _____
증 권 명 _____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별지 제52호의2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_____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 회계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및 기타 서식 개정,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나. 재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및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안 제3조)
- 다. 예산업무담당관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8조, 제9조)
- 라.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된 수입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안 제24조)
- 마.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24조의2)
- 바.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29조)
- 사. 회계서류 서식 통합 및 전자화(안 제31조)
- 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0조의4)
- 자.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44조)
- 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7조, 제48조, 제97조, 제98조 내지 제101조)
- 카.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
- 타.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대민행정지원”을 “행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는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민종사원 :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등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7조제1항 중 “2,071명”을 “2,196명”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계약의 해지,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부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 정원표(제7조 관련)

공무원 정원표(제7조 관련)

1. 250일이상 고용 공무원의 정원

부 서 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총계	1,693	111	505	75	363	407	161	71
본청	427	42	12	75	141	143	8	6
시민봉사담당관	5				2	2	1	
민방위담당관	4				2	2		
통계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담당관	22	22						
희망복지지원과	1	1						
인생이모작지원과	1	1						
택시물류과	2	2						
역사문화재과	4		4					
한양도성도감과	2		2					
총무과	138				52	86		
정보공개정책과	8	8						
건강증진과	1	1						
생활보건과	3	3						
도로관리과	81		6	75				
교량안전과	6							6
역사도심재생과	3					1	2	
소방행정과	142				85	52	5	
직속기관	104	6			32	45	21	
시립대학교	80				22	37	21	
보건환경연구원	14	2			10	2		
인재개발원	6					6		
농업기술센터	4	4						
사업소	1,153	63	493		190	210	132	65
상수도사업본부	127	8	9		27	68	15	
한강사업본부	81		76		4		1	
데이터센터	8				3	2	3	
시립어린이병원	38	12			7	13	3	3
시립서북병원	36	5			12	10	9	
시립은평병원	26	3			7	8	6	2
역사박물관	93	23			18	23	29	
한성백제박물관	46				14	9	23	
교통방송	6							6
시립미술관	50	6			11	17	1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3		49					24
동부도로사업소	3					1	2	
서부도로사업소	2						2	
남부도로사업소	2						2	
북부도로사업소	1					1		
성동도로사업소	3					2	1	
강서도로사업소	2					2		
역사편찬원	4	4						
중량물재생센터	13		5		1	2	5	
난지물재생센터	8		8					
서울대공원	211	2	69		72	35	7	26
품질시험소	1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3		8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4		1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0		90					
아동복지센터	7				2	2	3	
공무원수련원	17				6	9	2	
차량정비센터	1					1		
시립과학관	17				6	5	6	
의회사무처	9						9	
의회사무처	9						9	

2. 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총계	503
본청	110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0
교량안전과	48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68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중 량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44조 관련)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경고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 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 고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경고 경 고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5. 공정 의무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8. 가. 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 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 라. 경고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9. 동일 건에 수개의 위반 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한다.
10. 위반사항이 월중에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1. 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12.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양정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3. 처분양정 기준 이외에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정직을 대신하여 감봉처분 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차관리·운전·안내·매수표·재봉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업무-직종명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직종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기관별 정원조정, 인사관리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대민종사원” 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일반종사원” 정의 변경 (안 제4조 및 별표1)
- 나.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인력 정원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2,071명에서 2,196명으로 125명 증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반영사항 수정(안 제15조제5항)
 -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 문구 삭제
- 라. 공가 허가 범위의 확대(안 제32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마. 병가 시 유급 및 무급의 기준 명확화(안 제33조제2항)
 - 6일 이하의 병가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에만 유급 처리
- 바. 비위의 유형 추가로 징계양정기준 강화(안 별표 2)
 -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의예규 제115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사담당관은 접수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입법담당관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입법예고 의뢰공문을 받은”을 “의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으로, “3일”을 “3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를 각각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을 “상임위원회는”으로,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조례 공포 의뢰공문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규칙안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담당관”을 각각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단,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u>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u>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입법예고 기간) ----- ----- ----- ----- ----- <u>상임위원회</u> ----- -----</p>
<p>제5조(입법예고 절차) ① <u>의사담당관은 접수된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의뢰한다.</u></p> <p>② <u>입법담당관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입법예고 의뢰공문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법예고 생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u> 다만, 소관 <u>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입법예고 할 수 있다.</u></p> <p>③ <u>입법담당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생략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u></p>	<p>제5조(입법예고 절차) ① <u>의사담당관은 접수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u></p> <p>② <u>의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u> ----- -- 3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u>상임위원회의</u> ----- ----- <u>상임위원회의</u> ----- -----</p> <p>③ <u>의사담당관</u>----- ----- <u>상임위원회</u>----- ----- ----- ----- -----</p>
<p>제6조(입법예고 생략) ① (생략)</p> <p>② 소관 <u>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u></p>	<p>제6조(입법예고 생략)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상임위원회는</u> ----- -----</p>

<p>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공문을 제 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입법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한다.</p>	<p>----- ----- <u>의사담당관</u> -----.</p>
<p>제10조(공포절차) ① <u>의사담당관은 입법담당관에게 조례의 공포를 의뢰한다.</u></p> <p>② <u>의사담당관으로부터 조례 공포 의뢰 공문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조례번호를 부여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u></p> <p>③ <u>입법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u></p>	<p>제10조(공포절차) <삭 제></p> <p>② <u>의사담당관</u>----- ----- ----- -----.</p> <p>③ <u>의사담당관</u>----- ----- -----.</p>
<p>제13조(공포절차) ① <u>의사담당관은 의회가 의결한 의회규칙안에 대하여 입법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한다.</u></p> <p>② <u>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규칙안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u></p> <p>③ (생략)</p>	<p>제13조(공포절차) <삭 제></p> <p>② <u>의사담당관</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발령절차) ① 각 실·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안의 원본을 <u>입법담당관에게</u> 이송하여 발령을 의뢰한다.</p> <p>② <u>입법담당관은 각 실·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한 발령안에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u></p>	<p>제18조(발령절차) ① ----- ----- ----- <u>의사담당관</u>----- -----.</p> <p>② <u>의사담당관</u>-----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일부개정(2017. 2. 23. 시행)으로 입법예고 및 의회 훈령·예규의 발령 등 의회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이 기존 입법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 사무로 이관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입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16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제2호”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법규의”를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법규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결처리 할 수 있다”를 “종결처리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타인”을 “입안 및 검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한 입법담당관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 -----		
제2조(지원대상)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외의 자치법규를 입안 및 검토 의뢰하는 사항 2. 의장단(의장 및 부의장을 말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관한 사항 3.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자치법규안의 법체계 검토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실·담당관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관한 사항	제2조(지원대상)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외의 자치법규를 입안 및 검토 의뢰하는 사항 2. 의장단(의장 및 부의장을 말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관한 사항 3.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자치법규안의 법체계 검토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실·담당관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조(입안 및 검토 의뢰) ①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 송부한다. ② (생략)	제3조(입안 및 검토 의뢰) ①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 송부한다. ② (생략)	제3조(입안 및 검토 의뢰)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법규의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검토의뢰 철회 등) ① (생략)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9조(검토의뢰 철회 등) ① (생략) ② 의뢰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9조(검토의뢰 철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종결처리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뢰된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자치법규의 입안 및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뢰된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 ----- ----- 입안 및 검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이 일부개정(2017. 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입법지원 대상을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로 확대함에 규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입법지원사무의 근거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로 함 (안 제1조)
 - 나. 입법지원 대상을 삭제함 (안 제2조)
 - 다. 의뢰주체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제2호와 같이 의원 및 상임위원회로 함 (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17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욱 인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약간인”을 “약간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6인”을 “6명”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시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생 략) ②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직원 <u>약간인</u> 을 둔다.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약간명</u> -----.
제12조(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u>6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입법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정자료팀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2조(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 ----- <u>6명</u>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사항) (생 략) <u><신 설></u>	제13조(심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시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의회 전문도서관은 의회의 기관 특성에 따라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자료구입을 하고 있음. 이 외에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요청 시 수시구입하고 자료선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사후 심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자료를 수시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기준점 명칭 및 번호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설치일 (측량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지적삼각점 서울55	중부	X 444895.40	82.60	경도	37° 30' 12.460"	1983.12.01	표석	동작구 상도동 36-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5481.10		위도	126° 56' 55.995"					
지적삼각점 서울311	중부	X 445303.60	39.02	경도	37° 30' 25.721"	1984.10.31	표석	동작구 흑석동 1-3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6768.18		위도	126° 57' 48.396"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319호(1990.5.28.)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2006.4.20.)로 변경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신정동 319-1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 및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나. 명 칭 : 공공업무시설 증축
- 3. 사업시행 면적 : 1,954.5㎡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나. 성 명 : 서울특별시청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8개월
- 6. 건축계획 : 4,106.3㎡ (994.83㎡ 수평증축 포함)
 - 건축면적 1,026.25㎡, 건폐율 52.52%, 용적률 179.25%, 규모 지하1층~지상5층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양천구 목동동로 155	대	1,954.5	1,95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기타 상세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3846)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4호(2006. 7.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6-47호(2006. 8.17.)로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985호(2016. 8.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강동구고시 제2016-127호(2016. 9. 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173호(2016.1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청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2-29,

강동구 암사동 425-200, 강동구 암사동 425-201,
강동구 암사동 425-202, 강동구 암사동 425-188,
강동구 암사동 476-34.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12~15m → 15~22m, 연장 1,340m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76-34(304㎡)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02-2133-8089) 및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암사동 421-142	37	37	도	지분	이형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29-5 삼익아파트 608-30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일동지점)	근저당권	
					41.568 /314	오은주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3, 201호 (암사동, 효성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방이동지점)	근저당권	
					42.012 /314	경점례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55길40		근저당권		
					41.568 /314	이행자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3, 301호 (암사동, 효성빌)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31	근저당권	
2	암사동 422-29	3	3	대	42.012 /314	김일환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3, 302호 (암사동, 효성빌)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31	근저당권	422-10 에서 분할
					41.568 /314	박진홍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3, 401호 (암사동, 효성빌)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문충동지점)	근저당권	
					41.706 /314	권경희	서울 강동구 천중로 49길78 302호(길동)				
					32.388 /314	윤석은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63, 501호 (암사동, 효성빌)	삼성화재 해상보험	서울 중구 을지로29 (을지로1가)	근저당권	
					31.178 /314	김순경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32-1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3	암사동 425-202	1	1	대	최승엽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55 (암사동)				422-186 에서 분할	
4	암사동 425-201	1	1	대	최창호	서울 성동구 상왕실리동 992 무학현대아파트 102-1405				425-197 에서 분할	
					최영복	서울 강동구 풍성로 114-1 102동2203호(성내동, 성인마을청구아파트)					
5	암사동 425-200	13	13	대	조성철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349(암사동)				425-164 에서 분할	
6	암사동 425-188	226	226	도	강유근로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현대아파트 81동 608호 (압구정동)					
7	암사동 476-34	22.2	22.2	대	조성철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349(암사동)	서울 우유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암사역지점)		476-20 에서 분할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구친면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	
1	암사동 422-29	담장	콘크리트 담장	0.88	㎡	41.568/314	오은주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63, 201호(암사동, 효성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방이동지점)	근저당권	422-10에서 분할
						42.012/314	경점례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55길40		근저당권		
						41.568/314	이행자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63, 301호(암사동, 효성빌)	강동농업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331	근저당권	
						42.012/314	김일환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63, 302호(암사동, 효성빌)	강동농업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331	근저당권	
						41.568/314	박진홍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63, 401호(암사동, 효성빌)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둔촌동지점)	근저당권	
						41.706/314	권경희	서울 강동구 천장로 49길78 302호(길동)				
2	암사동 422-29	안 내 표지판	철판	3.5	m	32.388/314	윤석은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 363, 501호(암사동, 효성빌)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 중구 을지로29 (을지로1가)	근저당권	422-10에서 분할
						31.178/314	김순경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32-1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2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289호(2007.08.23.)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 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초 아파트지구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1,187,270.5㎡	증) 0.5㎡	1,187,271.0㎡	

- 2. 주요 변경내용
 - 가. 구역면적 변경(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나. 건폐율 변경(20%이하→30%이하):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 다.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비율 변경(40%이상→35%이상):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3.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 1) 지구면적표

(단위 : ㎡)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변경전	1,187,270.5㎡	524,213.5㎡	246,916.0㎡	416,141.0㎡
변경후	1,187,271.0㎡	524,214.0㎡	246,916.0㎡	416,141.0㎡
비고	증) 0.5㎡	증) 0.5㎡	“변경없음”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합계	1,187,270.50	100.00	1,187,271.00	100.00	증) 0.5m ²	
주거 용지	소계	750,419.74	63.20	750,420.24	63.21	증) 0.5m ²
	주택용지	750,419.74	63.20	750,420.24	63.21	증) 0.5m ²
중심 시설	소계	55,287.90	4.66	55,287.90	4.66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41,834.10	3.52	41,834.10	3.52	변경없음
	분구중심	13,453.80	1.13	13,453.80	1.13	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381,562.86	32.14	381,562.86	32.13	변경없음
	도로용지	154,213.29	12.99	154,213.29	12.99	변경없음
	공원용지	42,534.87	3.59	42,534.87	3.58	변경없음
	완충녹지	64,439.70	5.43	64,439.70	5.43	변경없음
	학교용지	117,475.20	9.89	117,475.20	9.89	변경없음
	공공청사	2,899.80	0.24	2,899.80	0.24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합계	524,213.50	100.00	524,214.00	100.00	증) 0.5m ²	
주거 용지	소계	364,816.70	69.40	364,817.20	69.41	증) 0.5m ²
	주택용지	364,816.70	69.40	364,817.20	69.41	증) 0.5m ²
중심 시설	소계	17,226.30	3.29	17,226.30	3.28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14,998.20	2.86	14,998.20	2.86	변경없음
	분구중심	2,228.10	0.43	2,228.10	0.42	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143,170.50	27.31	143,170.50	27.31	변경없음
	도로용지	67,665.50	12.91	67,665.50	12.91	변경없음
	공원용지	18,572.90	3.54	18,572.90	3.54	변경없음
	완충녹지	16,646.70	3.18	16,646.70	3.17	변경없음
	학교용지	40,285.40	7.68	40,285.40	7.68	변경없음
	공공청사	-	-	-	-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가로망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규제계획 - 변경

- 1) 용도 : 변경없음
-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없음
- 3) 건폐율 : 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변경전	변경	변경후	
연립주택	40%이하	-	-	
저층아파트	30%이하	-	-	
중층아파트	25%이하	-	-	
고층아파트	20%이하	증)10%	30%이하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기타건축물	50%이하	-	-	

※ 변경된 건폐율은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그 외 단지는 변경전 계획 적용

- 4) 용적률 : 변경없음
- 5) 세대밀도 : 변경없음
-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없음
-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없음
- 8)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	변경후	비고
녹지확보비율	40%이상	감)5%	35%이상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 변경된 녹지확보비율은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그 외 단지는 변경전 계획 적용

- 9)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라. 중심시설 건축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 반포현대아파트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변경 (3,621.0㎡→3,621.5㎡)

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주구 (면적)	시설명	계획 면적(㎡)	개발내용				개발시기
			층수	세대수 (세대)	건폐율		
1주구 (524,214.00㎡)	주택용지	364,817.20	13층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기정 20% 이하	변경 20%이하 (반포현대 아파트 30%이하)	고시일 이후 단지별로 재건축필요
	주구중심	14,998.20	5층이하	50%이하		· 용적률:230%이하 · 용적률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시행단위별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적용	
	분구중심	2,228.10					
	도로용지	67,665.50					
	공원용지	18,572.90					
	완충녹지	16,646.70					
	공공청사	-					
학교용지	40,285.40						
2주구 (246,916.00㎡)	주택용지	132,426.00	13층 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20%이하		고시일 이후 단지별로 재건축 필요
	주구중심	8,061.90	5층이하		50%이하		
	분구중심	4,934.90					
	도로용지	131,212.40					
	공원용지	10,000.40					
	완충녹지	23,554.50					
	학교용지	33,826.10					
3주구 (416,141.00㎡)	주택용지	254,177.04	13층 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20%이하		고시일 이후 단지별로 재건축 필요
	주구중심	18,774.00	5층이하		50%이하		
	분구중심	6,290.80					
	도로용지	55,335.39					
	공원용지	13,961.57					
	완충녹지	24,238.50					
	학교용지	43,363.70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건폐율 완화 20%이하→30%이하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30-16번지일대	3,621.0	증)0.5	3,621.5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621.0	증)0.5	3,621.5	100.0	
주거 지역	소계	3,621.0	증)0.5	3,62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21.0	증)0.5	3,621.5	100.0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2) 용도지구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사평로	일반 미관지구	동작동(이수교차로)~ 반포IC	80,700 (1,082.3)	3,300 (89.0)	양측12	94.8.18	-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21.0	증)0.5	3,621.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6.8	-	6.8	0.2%	도로기부채납
	도로	6.8	-	6.8	0.2%	
획지	소계	3,614.2	증)0.5	3,614.7	99.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3,614.2	증)0.5	3,614.7	99.8%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변경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621.5㎡	획지	3,614.7㎡	반포동 30-15, 30-16일대	1	-	-	1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621.5㎡	획지	3,614.7㎡	반포동 30-15, 30-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56	299.98	59.3m /20층	16,066.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세대수</th> <th colspan="2">주택연면적</th> </tr> <tr> <th>세대수(세대)</th> <th>비율(%)</th> <th>면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7</td> <td>100.0%</td> <td>16,066.0</td> <td>100.0</td> </tr> <tr> <td>60㎡이하</td> <td>18(16)</td> <td>16.8%</td> <td>2,101.0</td> <td>13.08</td> </tr> <tr> <td>60~85㎡이하</td> <td>89</td> <td>83.2%</td> <td>13,965.0</td> <td>86.92</td> </tr> <tr> <td>85㎡초과</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세대수		주택연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면적(㎡)	비율(%)	계	107	100.0%	16,066.0	100.0	60㎡이하	18(16)	16.8%	2,101.0	13.08	60~85㎡이하	89	83.2%	13,965.0	86.92	85㎡초과	-	-	-	-
	구분	세대수		주택연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면적(㎡)	비율(%)																												
	계	107	100.0%	16,066.0	100.0																												
	60㎡이하	18(16)	16.8%	2,101.0	13.08																												
60~85㎡이하	89	83.2%	13,965.0	86.92																													
85㎡초과	-	-	-	-																													
※ () : 소형임대주택 세대수 ▶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30\% + [230\% \times 1.3 \times (6.8/3,614.7)] = 230.56\%$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α=대상지내 확보된 공공시설용지 면적비율) ▶ 재건축 임대주택 : $[상한용적률(299.98\%) - 정비계획용적률(230.56\%)] / 2 = 34.71\%$																																	
심의완화 사항	- 건폐율완화 20%이하 → 30%이하 - 녹지확보비율 완화 40%이상 → 35%이상 - 용적률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9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 법령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7.1.18.) : 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할 것. · 주민공동시설은 대상지 서측 공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방형으로 계획 · 사평대로변 소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동배치 조정 검토 · 장애인, 고령자, 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설계 검토 · 임대주택 소설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적절히 분산배치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서초구 반포동 30-15, 30-16일대	-	-	16세대	59.85㎡	1,867.8㎡ (주차장포함)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반포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7세대 (현황: 80세대, 계획: 107세대)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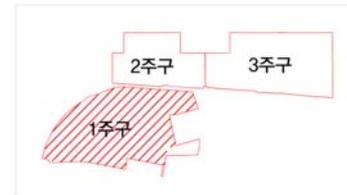
서초아파트지구내 반포현대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범례

- 아파트 지구
- 주택용지
- 주구 중심
- 시장
- 학교
- 공공청사
- 근린공원
- 시설녹지
- 도로

■ 색인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3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결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비고
기정	은평	갈현동	12-248	3.2ha	170	60	5	2	단독	2010.11.25. 서고시 제2010-421호)	갈현1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변경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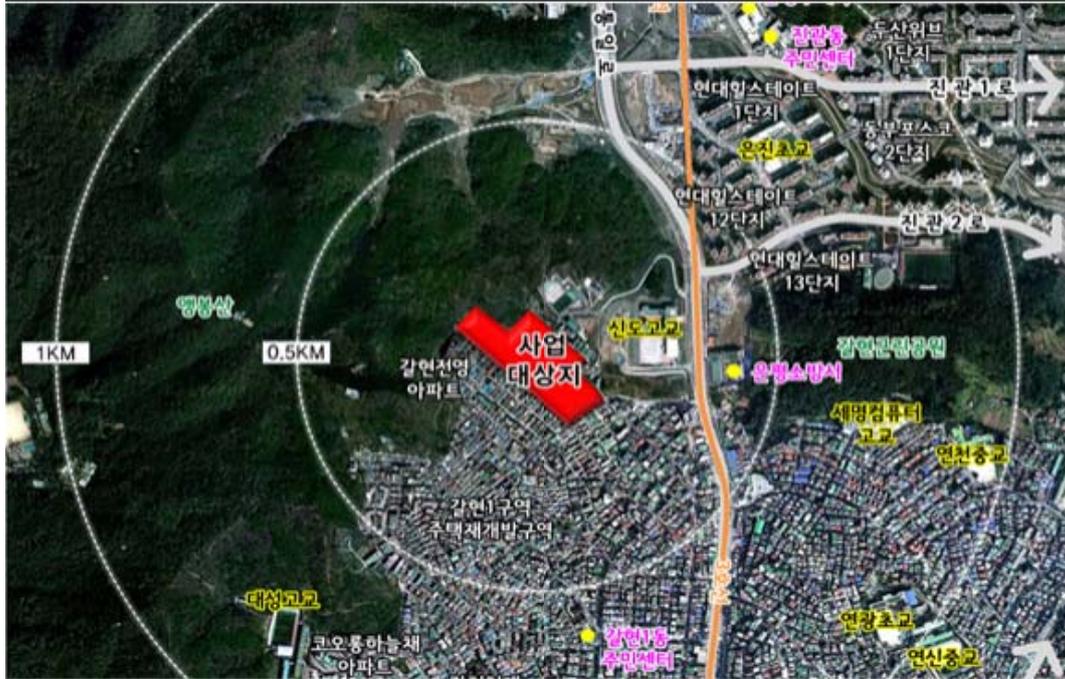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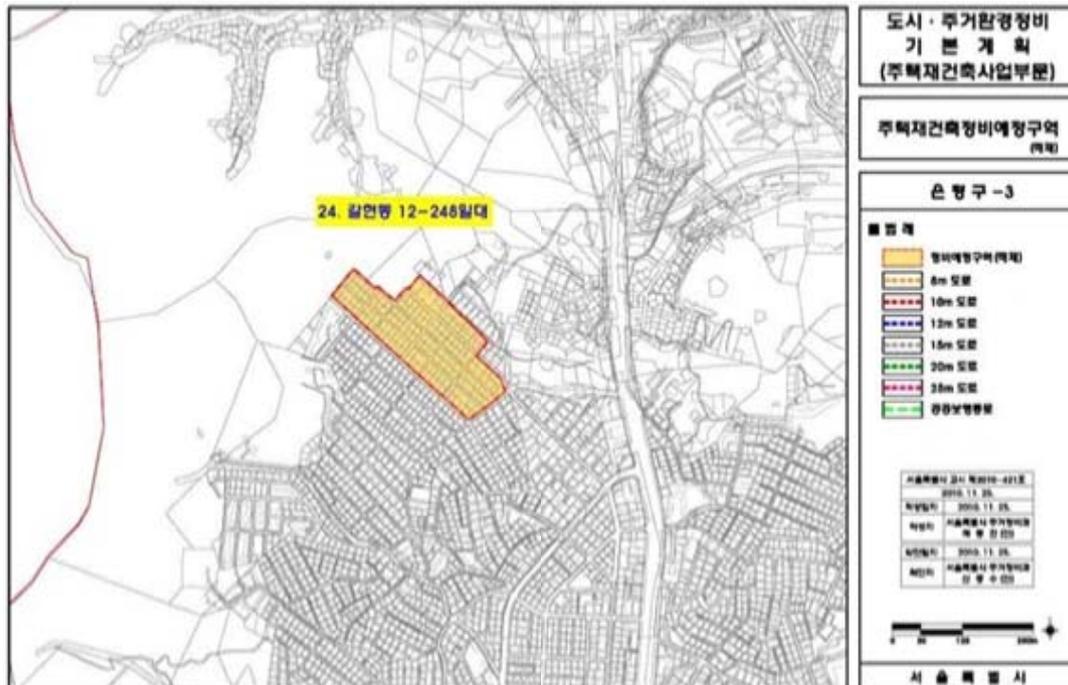
3. 시민의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3) 및 은평구 건축과(02-351-753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도면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2호(2015.10.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고시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인 「장지동길(대로3-65-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77호(2016.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장지동길(대로3-65-2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신설 : 연장 272m, 폭 25~29m(4차로)

라. 사업시행자 지정(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031-786-6433) 또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장지동 839-7	도	1,254.8	1,254.8	서울특별시					
2	장지동 851	공	64,956.9	2,140.0	서울특별시					
3	장지동 851	공	64,956.9	1,971	서울특별시					지하 사용
4	장지동 신25-1	임	31	31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5	장지동 신24-10	임	125	41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6	장지동 신24-6	도	285	153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7	장지동 신24-1	도	5,592	1,205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8	장지동 신24-12	도	1,128	421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9	장지동 신28-8	임	993	79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10	장지동 신28-7	도	204	97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11	장지동 신28-5	도	372	8	국토해양부					지하 사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및 제2014-422호(2014.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등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1,043,843.2	-	1,043,843.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 : 마천2구역 해제에 다른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존치관리구역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 기준연도: 2009년
 - 목표연도: (기정)2019년 → (변경)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043,843.2	-	1,043,843.2	100.00		
촉진 지구	주거 용지	소 계	674,851.4	증) 16,441.8	691,293.2	66.23	
		공동주택 (연도형주거)	404,314.6 (20,564)	감) 43,104.0 (증) 7,400.0)	361,210.6 (27,964.0)	34.60 2.68	
		준주거	8,024.0	증) 1,675.0	9,699.0	0.93	마천2구역 환원
		종교용지	11,225.9	감) 3,951.0	7,274.9	0.70	
		택시차고지	3,060.0	-	3,060.0	0.29	덕왕기업, 명신운수
		대 지	198.0	감) 198.0	-	-	
		존 치	248,028.9	증) 62,019.8	310,048.7	29.71	마천2구역 환원
	정비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68,991.8	감) 16,441.8	352,550.0	33.77	
		도 로	211,575.2	증) 3,019.2	214,594.4	20.56	
		공 원	49,762.7	감) 2,153.0	47,609.7	4.56	
		녹 지	24,032.7	감) 12,292.0	11,740.7	1.12	
		광 장	3,513.8	감) 878.0	2,635.8	0.25	
		하 천	26,471.9	증) 1,588.0	28,059.9	2.69	성내천
		학 교	22,914.4	감) 466.0	22,448.4	2.15	마천초교, 남천초교
		문화·체육시설	2,744.0	감) 2,744.0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6,129.3	-	16,129.3	1.55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공지	9,805.9	감) 2,516.0	7,289.9	0.70	미래공공공지 (5,639.9㎡) 포함
		주차장	2,041.9	-	2,041.9	0.20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45,757인 / 12,685호)

○ 총괄현황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72	감)687	12,685	50,368	감)4,611	45,757	2.69인 적용
사업 구역	소 계	11,200	감)1,430	9,770	32,794	감)6,513	26,281
	60㎡이하	5,474	감)704	4,770	14,780	감)1,949	12,831
	60~85㎡이하	4,792	감)494	4,298	15,492	감)3,930	11,562
	85㎡초과	934	감)232	702	2,522	감)634	1,888
존치지역	2,172	증) 743	2,915	17,574	증) 1,902	19,476	2.56인 적용

○ 구역별 현황

구 분	현황 (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8,885	7,671	1,769	2,915	12,355	7,908	1,862	2,915	12,685		
재정비 촉진 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77	368	-	1,945	1,577	368	-	1,945
		2지구	809	972	227	-	1,19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185	-	-	185	
	마천1	1,381	2,205	480	-	2,685	2,205	480	-	2,685	
	마천3	1,698	1,887	480	-	2,367	1,887	480	-	2,367	
	마천4	573	845	214	-	1,059	1,082	307	-	1,389	
존치관리구역	1036	-	-	-	-	-	-	-	-	-	
지구편입 (거여새마을, 마천성당)	1,136	-	-	2,915	2,915	-	-	2,915	2,915		
마천2구역	743	-	-	-	-	-	-	-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914.4	-	22,914.4	
마천초등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남천초등학교	마천동 67일대	11,993.4	-	11,993.4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679.2	감)5,260	23,419.2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254.3	-	3,2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 치안센터,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128-18일대	4,386.0	-	4,3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천2동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 주민 자치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567-2일대	5,701.0	-	5,701.0	• 청소년활동시설 및 여성취업센터, 아동보육 등 여성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마천동 183-70	2,744.0	감)2,744	-	• 마천2구역해제에 따른 계획 삭제
공공공지	거여동 198-17 (거여2구역)	1,467.0	-	1,467.0	•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41-4 (거여2구역)	5,639.9	-	5,639.9	• 공공공지 → 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공공공지	마천동 182-6일대 (마천2구역)	275.0	감)275	-	• 마천2구역해제에 따른 계획 삭제
공공공지	마천동 182-6일대 (마천2구역)	390.0	감)390	-	• 마천2구역해제에 따른 계획 삭제
공공공지	마천동 182-6일대 (마천2구역)	575.0	감)575	-	• 마천2구역해제에 따른 계획 삭제
공공공지	마천동 156-312일대 (마천1구역)	183.0	-	183.0	•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마천동 323-206 (마천4구역)	1,276.0	감)1,276	-	•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계획 삭제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 공원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762.7	감) 2,153.0	47,609.7	9개소	
근린공원	소 계	38,015.0	감)3,654	34,361.0	3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	10,569.0	
	나무그늘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7,404.0	감)3,654	13,750	
	솔향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0	-	10,042.0	
어린이 공원	소 계	10,608.0	-	10,608.0	4개소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058.0	-	7,058.0	현황공원
	용마공원	마천동 45	1,500.0	-	1,500.0	현황공원
	개미공원	거여동 29	1,500.0	-	1,500.0	현황공원
	모슬어린이공원	거여동 28-7	550.0	-	550.0	현황공원
소공원	소 계	1,139.7	증)1,501.0	2,640.7	2개소	
	①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②	마천동 327-7일대	-	증)1,501.0	1,501.0	

○ 녹지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032.7	감)12,292	11,740.7	10개소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0	-	3,236.0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0	-	651.0	
경관녹지	마천동 187-7일대	3,358.0	감)3,358	-	2구역환원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2,596.0	-	2,596.0	
경관녹지	마천동 286-1일대	2,964.0	감)2,964	-	
경관녹지	마천동 325-17일대	2,261.0	-	2,261.0	
경관녹지	마천동 329-55일대	430.0	감)430	-	4구역 계획변경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452.0	-	452.0	
경관녹지	마천동 376-13일대	-	증)2,108	2,108.0	4구역 계획변경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	436.7	
연결녹지	마천동 183-99일대	5,779.0	감)5,779	-	2구역환원
연결녹지	마천동 323-11일대	1,869.0	감)1,869	-	4구역 계획변경

5) 교통계획 : 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IV장, 교통성검토)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V장, 경관성검토)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1	C	마천동	194-1	17.2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구역 취소
기정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구역 취소
기정	마천4	C	마천동	323	5.3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마천4	C	마천동	323	6.1ha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주1)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3단계 : 2012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촉진지구	-	1,043,843.2	-	1,043,843.2	100.0	-	-		
촉진구역	소 계		529,086.8	증)7,255	536,341.8	51.3	-	5개소	
	거여2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453.7	-	98,453.7	9.4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850.1	-	61,850.1	5.9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	9,757.0	0.9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71,798.0	-	171,798.0	16.5	주택재개발	취소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	133,830.0	12.8	주택재개발	취소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53,398.0	증)7,255	60,653.0	5.8	주택재개발	-
존치구역	소 계		514,756.4	감)7,255	507,501.4	48.7	-	-	
	존치시설		-	-	118,739.4	11.4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163,480.0	15.7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23,282.0	-	123,282.0	11.8	-	-
	마천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307-48일대)	91,983.0	감)7,255	84,728.0 (12,485.0)	8.1 (1.2)	-	변경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	17,272.0	1.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 가)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나)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 다)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라)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 마)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3,398	증) 7,255	60,653	100.0	
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57	-	657	1.1
	2종(7층)일반주거지역	1,625	증) 9,347	10,972	18.1
	2종일반주거지역	51,116	감) 46,277	4,839	8.0
	3종일반주거지역	-	증) 44,185	44,185	72.8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m)		
거여 2구역	1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5.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1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40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36.4이하	22이하/28이하	106이하	존치정비구역 (구역취소)	
마천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62.1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존치정비구역	
마천 4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54.2이하	19이하/28이하	106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300.0이하	30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구분	면적 (㎡)			비율(%)	
	기정	증감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1,043,843.2	-	1,043,843.2	100.00	
기반 시설	소 계	368,991.8	감) 16,441.8	352,550.0	33.77
	도 로	211,575.2	증) 3,019.2	214,594.4	20.56
	공 원	49,762.7	감) 2,153.0	47,609.7	4.56
	녹 지	24,032.7	감) 12,292.0	11,740.7	1.12
	광 장	3,513.8	감) 878.0	2,635.8	0.25
	하 천	26,471.9	증) 1,588.0	28,059.9	2.69
	학 교	22,914.4	감) 466.0	22,448.4	2.15
	문화·체육시설	2,744.0	감) 2,744.0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6,129.3	-	16,129.3	1.55
	공공공지	9,805.9	감) 2,516.0	7,289.9	0.70
	주차장	2,041.9	-	2,041.9	0.20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소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1	마천3	마천4
재정비촉진사업 구역(㎡)①	526,584.8	160,303.8	171,798	133,830	60,653
평균 분담률(%)②	11.59				
계획기반시설(㎡)③	164,943.3	46,992.3	56,107	46,677	15,167
도로	84,429.9	23,666.9	36,294	14,436	10,033
공원	43,211.7	11,708.7	9,881	20,121	1,501
녹지	8,849.7	436.7	2,134	4,171	2,108
광장	2,635.8	2,123.8	512	-	-
학교	2,104	-	2,104	-	-
공공공지(미래 공공공지 포함)	7,289.9 (5,639.9)	7,106.9 (5,639.9)	183	-	-
공공시설	13,561.3	1,949.3	4,386	5,701	1,525
문화체육시설	-	-	-	-	-
하천	2,861.0	-	613	2,248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42,728.5	13,037.5	16,098	10,521	3,072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61,185.6	16,308.6	20,352	19,518	5,007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⑥	-	-	-	-	-
순분담면적(㎡)B=③-④-⑤-⑥	61,029.2	17,646.2	19,657	16,638	7,088
순분담비율(%)	11.59	11.0	11.4	12.4	11.69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임대주택건설					장기전세(shift) 건설												
	소 계	40㎡ 이하	40~50㎡	50~60㎡	소 계	40㎡ 이하	40~50㎡	50~60㎡	소 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 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 계	40㎡ 이하	40~50㎡	50~60㎡
거여2	474	238	180	56	63	29	27	7	-	-	-	-	-	58	26	25	7	595 (18%)	293 (50%)	232 (40%)	70 (10%)	-
마천1	451	224	181	46	19	9	8	2	-	-	-	-	-	10	4	4	2	480 (18%)	237 (50%)	193 (40%)	50 (10%)	-
마천3	351	174	141	36	82	39	34	9	-	-	-	-	-	47	22	20	5	480 (20%)	235 (50%)	195 (40%)	50 (10%)	-
마천4	158	70	74	14	-	-	-	-	132	26	61	9	36	17	8	7	2	307 (22%)	104 (34%)	142 (46%)	25 (8%)	36 (12%)
합 계	1,434	746	616	202	164	117	109	68	82	26	39	17	43	132	100	96	66	1,862	909	802	245	46

주)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촉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심의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서울시)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1단계	2008	2010. 12이후	2014. 6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마천2구역 해제)
기정	2단계	2010	2012. 12이후	2016. 6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변경	2단계	2010	2012. 12이후	2016. 6	마천1구역	
변경	2단계	2010	2021년 경	2024년 경	마천3구역	
기정	3단계	2012	2018. 12이후	2021. 6	마천4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기타계획)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 변경없음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53,398	증) 7,255	60,653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98	증) 7,255	60,653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2,673	증) 2,538	15,167	27.4	-
	도 로	5,574	증) 4,459	10,033	16.4	도시계획시설
	공 원	2,572	감) 1,073	1,501	2.6	도시계획시설
	녹 지	1,941	증) 211	2,108	3.6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1,525	-	1,525	2.5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1,061	감) 1,061	-	-	도시계획시설
택지(획지)	소 계	40,725	증) 4,761	45,486	74.9	-
	6-1	39,153	증) 4,761	44,185	72.8	공동주택
	6-2	271	감) 271	-	-	종교시설
	6-3	1,301	-	1,301	2.1	택시차고지

※ 종교시설 택지 편입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3,398	증) 7,255	60,653	100.0
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57	-	657	1.1
	2종(7층)일반주거지역	1,625	증) 9,347	10,972	18.1
	2종일반주거지역	51,116	감) 46,277	4,839	8.0
	3종일반주거지역	-	증) 44,185	44,185	72.8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0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변경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6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3	27	보조 간선도로	500	마천동 산71-23	거여동 586	일반도로		서고719호 (84.12.3)	
기정	중로	1	221	20	보조 간선도로	485	거여동 308-35	마천동 267-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97	마천동 329-34	마천동 287-7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420	마천동 330-44	마천동 287-7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8	마천동 325-2	마천동 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30	마천동 311-156	마천동 311-15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	5	특수도로	46	마천동 329-8	마천동 329-39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도로폐지
폐지	소로	3	51	5	국지도로	287	마천동 306-2	마천동 287-2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 ()안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325-12일대	5,000	감) 5,000	-		위치 변경

□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⑦	녹지	경관녹지	거여동 329-55일대	430	감) 430	-		
폐지	③	녹지	연결녹지	마천동 323-11일대	1,869	감) 1,869	-		
신설	⑨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09-55일대	-	증) 2,108	2,108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7,404 (2,572)	감) 3,654 (2,572)	13,750	서고98호 (11.4.21)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마천동 323-219일대	-	증) 1,501	1,501	-	-

※ ()안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⑥	공공공지	-	마천동 323-206일대	1,276 (1,061)	감) 1,276	-	-	-

※ ()안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 청사	-	마천동 211-45일대	2,788.0 (1,525)	-	2,788.0 (1,525)	송고31호 (94.6.28)	

※ ()안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마천4재정비 촉진구역	60,653	-	-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261	-	-	261	-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마천4 재정비 촉진구역	53,398	6-1	39,153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99,526	공동주택	30 이하	254.2 이하	19층 이하	28층 이하
			6-2	271	송파구 마천동 326-1번지 일대	542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6-3	1,301	송파구 마천동 323-216번지 일대	2,602	택시차고지	-	-	-	-
변경	마천4 재정비 촉진구역	60,653	6-1	44,185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132,530	공동주택	30 이하	300.00 이하	30층 이하	33층 이하
			6-3	1,301	송파구 마천동 331-66번지 일대	2,602	택시차고지	60 이하	200 이하	-	-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호수 : 1,389호 (임대 1,082호, 장기전세 307호) - 전용면적 60㎡이하 : 704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654호 - 전용면적 85㎡초과 : 31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마천동길변 : 10m •인성복지관길변, 성내천대체도로변, 이면도로변 및 성내천변 : 6m •존치시설변 : 3m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조정기준」 적용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17	주택재개발조합	-	-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 고
마천4 재정비 촉진구역	44,185	-	40㎡이하	104세대	
			40~50㎡이하	142세대	
			50~60㎡이하	25세대	
			60~85㎡이하	36세대	
			소계	307세대(22.1%)	

21) 존치지역의 관리계획

○ 존치관리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의해 건축 가능하도록 관리하되, 재건축 또는 사업구역 포함 개발 시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 추진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나)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 건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307-48일대	27,610	감) 15,125	12,48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96.7.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2,485 (감 15,125)	마천2재정비 촉진구역 해제고시에 따라 마천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환원)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12,485	-	12,485	100.0	
	준주거지역	12,485	-	12,485	100.0	

(3)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99	12	국지도로	64	마천동 307-4	마천동 307-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마천로 57길
신설	소로	3	174	6	국지도로	25	마천동 309-31	마천동 307-40	일반도로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면적(㎡)	비고
간선변(마천로)	2,000	• 적용예외 - 해당기준을 기 초과하는 단위 필지
이면부	1,000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 (지정)	• 기 공동개발된 일단의 필지 • 부정형 필지와 연결지역 동일소유자 필지	
공동개발 (권장)	• 부정형 필지와 인접 필지 • 계획적 공동개발을 통해 지구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 별도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	

(다) 가구 및 획계획 결정(안)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변경	A	1,397	307-9	168	168	
변경			307-18	168	168	
변경			307-19	172	172	
변경			307-20	180	180	
변경			307-21	311	311	
변경			307-22	199	199	
변경			307-23	199	199	
변경			307	191	191	
변경	B	1,291	307-12	191	191	
변경			307-13	249	249	
변경			307-14	165	170	공동개발(권장)
변경			307-55	5		
변경			307-15	160	160	
변경			307-16	165	165	
변경			307-17	165	165	
변경			307-11	450	450	
변경	C	1,711	307-31	167	167	
변경			307-32	167	167	
변경			307-33	167	167	
변경			307-3	170	170	
변경			307-52	190	190	
변경			307-35	200	200	
변경			307-36	200	200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변경	D	1,791	307-6	176	905	공동개발(지정)	
변경			306-1	729			
변경			306-3	132			132
변경			306-14	197			197
변경			307-53	223			223
변경			307-30	170			170
변경			307-27	164			164
변경			307-47	170			170
변경	307-48	170	170				
변경	307-51	174	174				
변경	308-52	198	198				
변경	308-1	277	277				
변경	307-50	238	238				
변경	307-49	239	239				
변경	307-41	198	198				
변경	F	1,873	309-31	106	316	공동개발(권장)	
변경			307-44	199			
변경			309-39	113			
변경			307-45	203			
변경			309-33	174			174
변경			309-34	165			165
변경			309-56	290			290
변경			309-57	279			279
변경			307-46	170			170
변경			307-40	174			174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전 총	비고
불허 용도	전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구역(50m), 상대구역(200m) 모두 포함 • 절대구역 : 설치불가업종, 상대구역은 설치제한업종(학교보건법) • 상대구역 : 유흥(단란주점), 호텔,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소극장 	-

구 분		전 층	비 고
불허 용도	간선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및 공동주택 • 제조업 • 수리업 • 정신병원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장례식장 	-
	이면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 • 공장 • 장례식장 	-
권장 용도	간선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
	이면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

(나) 건축물의 밀도

구 분		변 경			건폐율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변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60%	
	이면부	250%이하	3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주1)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주2) 준주거지역 이면부 각 필지별 용적률 계획은 도면 참조

주3)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 건축물의 높이

구 분		변 경	비 고
최고 높이	간선변	40m이하	
	이면부	25m이하	

라) 건축선·배치·형태

구 분		변 경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변	2m	마천로
	이면부	1m	

(6) 기타사항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변 경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 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내부도로의 기능 확대 • 이면부 8m 도로 및 연결구간 : 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공간 및 녹지조성 	
	쌈지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변 교차가가부 필지에 위치 지정 및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유도 • 최소폭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면적 기준 : 최소25㎡, 폭원4m이상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변 경	비 고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단, 간선도로와 집산기능수행 도로가 연결되는 일부구간에 한하여 차량진출입허용 	
	공동주차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권장) 미이행에 따른 이면도로 차량출입불가 필지에 한하여 공동주차출입구 설정 	

(7)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 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A)

구 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완화기준	적용계수(× a)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4	• 전체연면적의 20%이상시
	공동개발(권장)		• 기준용적률	×0.08	-
	쌈지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0.2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6	-
친환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 각 항목내용 준수시 인센티브량의 20%	-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B)

구분	항목	세분	완화기준	적용계수(× α)	비고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전층	• 기준용적률×(권장용도연면적/주차장제외연면적)	×0.35	•전체연면적의 20%이상시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 기준용적률	×0.15	-
	쌈지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0.6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1.3	-
친환경	환경친화적 건축물		• 각 항목내용 준수시 인센티브량의 20%	-	-

2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원	1,043,843.2	-	1,043,843.2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3,843.2	-	1,043,843.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207.0	-	128,207.00	12.3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08,194.0	증) 69,729.0	277,923.00	25.7
	제2종일반주거지역	455,883.6	감) 111,677.0	344,206.60	33.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6,213.6	증) 44,185	260,398.60	24.9
	준주거지역	35,345.0	감) 2,237	33,108.00	3.4

※ 변경사항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만이며, 촌치정비구역 및 촌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변경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마천 2구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제2종 60,382㎡ → 제2종(7층) 60,382㎡	•마천2구역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계획 용도지역 환원
마천 4구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제2종 7,110㎡ → 제2종(7층) 7,110㎡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2016.11.08) 의견(주변지역 용도 지역 통일할 것) 반영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 44,185㎡ → 제3종 44,185㎡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2,237㎡ → 제2종(7층) 2,237㎡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2016.11.08) 의견(주변지역 용도 지역 통일할 것) 반영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②	미관지구 (거마로)	일반미관 지구	거여동~ 마천동	42,120 (7,428)	1,755 (464)	양측12m	서고449호 (2007.12.6)	

주) 면적 및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를 의미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여동 37번지 일원	17,272	-	17,272	
변경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27,610	감)15,125	12,48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마천동	면적: 감)15,125	•마천2 준치관리구역내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이하 여백 >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3	30	주간선 도로	9,581 (144)	광 1-23	광 1-29	일반도로		건고331호 (81.8.29)	거마로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795 (298)	마천동 202-18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남북 연결도로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0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변경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6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3	27	보조 간선도로	500	마천동 산71-23	거여동 586	일반도로		서고719호 (84.12.3)	위례 신도시
기정	대로	3	4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232-200	일반도로			마천 국민임대
기정	대로	3	5	24~27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마천동길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503 (488)	마천동 159-201	마천동 128-25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마천 시장길
기정	중로	1	247	18	집산도로	112	거여동 222-1	거여동 산71-2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683 (641)	거여동 31-17	거여동 산71-23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오금로
기정	중로	1	221	20	보조 간선도로	485	거여동 308-35	마천동 267-19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인성 복지관길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73	마천동 134-1	마천동 141-1	일반도로		서고294호 (08.8.28)	
변경	중로	3	99	12	국지도로	64	마천동 307-4	마천동 307-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1	3	10-14	국지도로	182	마천동 115-32	마천동 125-27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15	마천동 184-58	마천동 184-59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2-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7	마천동 141-7	마천동 80-10	일반도로		서고294호 (08.8.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97	마천동 329-34	마천동 287-7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420	마천동 330-44	마천동 287-7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8	마천동 325-2	마천동 3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9	국지도로	85 (54)	마천동 576-2	마천동 74-14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6	마천동 199-23	마천동 198-1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224	8	국지도로	133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320	마천동 200-32	마천동 162-9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262	마천동 202-2	마천동 212-18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193	마천동 329-33	마천동 283-75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45	마천동 329-26	마천동 329-19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241	마천동 87-25	마천동 146-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30	마천동 311-156	마천동 311-15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2	-	8~17	국지도로	75	마천동 51	마천동 45-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	8~17	국지도로	55	마천동 51	마천동 45-4	일반도로			연장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64	거여동 35	거여동 35-18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89	마천동 121-1	마천동 87-3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500	거여동 258-7	거여동 3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4	마천동 75-5	마천동 277-2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26	마천동 100-1	마천동 158-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2	19	8	국지도로	332	마천동 307-4	마천동 128-8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2	30	8	국지도로	141	마천동 307-4	마천동 306-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연장변경 (2구역)
변경	소로	2	43	8	국지도로	230	마천동 307-4	마천동 183-9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99	8	국지도로	200	거여동 31-10	거여동 3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420	거여동 565	거여동 32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32	거여동 33-7	거여동 33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61	마천동 42-4	마천동 42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321	마천동 72-6	마천동 51-6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61	마천동 74-14	마천동 155-8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290	마천동 158-3	마천동 50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3	8	국지도로	155	마천동 49	마천동 49-10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4	8	국지도로	170	마천동 47-7	마천동 48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91	마천동 44-8	마천동 43-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17	8	국지도로	306	마천동 154-1	마천동 49-18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26	8	국지도로	364	거여동 37-6	거여동 36-13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27	8	국지도로	37	거여동 36-6	거여동 36-7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	9~10	국지도로	33	마천동 119-3	마천동 1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68	거여동 570	거여동 56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3	거여동 251-43	거여동 254-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9	7	국지도로	253	마천동 111-5	마천동 126-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30	7	국지도로	351	마천동 122-42	마천동 141-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121	마천동 77-1	마천동 80-10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39	7	국지도로	129	마천동 180-5	마천동 178-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3	40	7	국지도로	39	마천동 184-41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연장변경 (2구역)
변경	소로	3	46	4	국지도로	65	마천동 304-2	마천동 304-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3	47	7	국지도로	75	마천동 183-99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3	48	6	국지도로	157	마천동 200-32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3	49	6	국지도로	165	마천동 183-99	마천동 315-1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연장변경 (2구역)
변경	소로	3	50	6	국지도로	138	마천동 309-53	마천동 300-6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변경	소로	3	52	3	국지도로	24	마천동 304-3	마천동 304-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30	마천동 311-156	마천동 311-15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173	6	국지도로	137	거여동 30-14	거여동 29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36	마천동 90-3	마천동 4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70	마천동 44	마천동 4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3	국지도로	15	마천동 44-13	마천동 44-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19	마천동 42-4	마천동 4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5	국지도로	107	마천동 123-18	마천동 11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7	국지도로	108	마천동 84-10	마천동 88-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12	마천동 124-16	마천동 95-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7	국지도로	424	마천동 126-1	마천동 7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3	마천동 82-14	마천동 8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61	거여동 566	거여동 56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54	거여동 567	거여동 567-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28	거여동 251-70	거여동 568-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38	거여동 251-2	거여동 569-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43	거여동 30-3	거여동 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58	거여동 30-13	거여동 30-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35	거여동 545-4	거여동 545-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98	거여동 546-7	거여동 546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74	거여동 547-5	거여동 54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5	국지도로	119	거여동 547-7	거여동 3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4	국지도로	128	거여동 550-24	거여동 55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30	거여동 549-13	거여동 5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31	거여동 548-14	거여동 5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3	국지도로	48	거여동 548-33	거여동 258-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35	거여동 551-13	거여동 544-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22	거여동 551-3	거여동 55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7	거여동 551-7	거여동 55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	3	국지도로	9	거여동 551-11	거여동 55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74	6	국지도로	25	마천동 309-31	마천동 307-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4	-	4	국지도로	74	거여동 251-19	거여동 산57-14	일반도로		서고26호 (93.8.10)	
폐지	중로	1	222	20	보조 간선도로	341	마천동 184-1	마천동 311-5	일반도로			마천역길
폐지	소로	1	4	11	국지도로	15	마천동 184-58	마천동 184-5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	5	특수도로	336	마천동 200-32	마천동 288-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6	5	특수도로	46	마천동 329-8	마천동 329-39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51	5	국지도로	287	마천동 306-2	마천동 287-2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축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대로3-2	•도로 선형 변경 •종점 변경 : 마천동 323-200 → 마천동 323-206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배치를 위한 도로선형 변경
중로1-222	•도로 폐지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계획도로 폐지
중로3-99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1-4	•도로 폐지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계획도로 폐지
소로2-5	•도로 연장 변경(297m→354m) •기점 변경 : 마천동 329-34 → 마천동 330-44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배치를 위한 도로선형 변경
소로2-19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2-30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2-43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3	•보행자도로 폐지	•성내천변 복개를 위해 계획되었던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3-6	•보행자도로 폐지	•성내천변 복개를 위해 계획되었던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3-40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46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47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48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50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51	•도로 폐지	•마천4구역 편입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로 폐지
소로3-52	•도로 환원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지정에 따른 현황도로 환원
소로3-174	•도로 신설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신설
중로2-	•도로 연장 변경(75m→55m)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도로 도로연장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325-12일대	5,000	감) 5,000	-		위치변경
기정	-	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여동 33-3	2,041.9	-	2,041.9	송고48호 (00.7.14)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위치변경	•대로3-2 선형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변경에 따른 계획삭제

(다)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226	L=52,300 (745)	-	L=52,300 (745)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정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5호선 정차장 (마천정차장)	마천동 183일대	4,316	-	4,316	서고226호 (93.7.24)	마천역
기정	①	철도	지하철5호선 (환기구)	마천동 307-11	193	-	193	서고226호 (93.7.24)	
기정	②	철도	지하철5호선 (환기구)	마천동 211-58	205	-	205	서고226호 (93.7.24)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	1,321.3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802.5	-	802.5	서고294호 (08.8.28)	
기정	③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마천동 127-8일대	512.0	-	512.0	서고98호 (11.4.21)	
폐지	④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마천동 308-1일대	878.0	감)878.0	-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교통광장	•면적 : 감 878㎡	•마천2구역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교통광장 계획 폐지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	-	10,569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7,404 (2,572)	감)3,654 (2,572)	13,750	서고98호 (11.4.21)	나무그늘 근린공원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	-	10,042	서고98호 (11.4.21)	솔향 근린공원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058	-	7,058	서고98호 (11.4.21)	두레 어린이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서고294호 (08.8.28)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마천동 327-7일대	-	증)1,501	1,501	-	-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마천동 45	1,500	-	1,500	건고364호 (81.9.26)	용마공원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거여동 29	1,500	-	1,500	건고364호 (81.9.26)	개미공원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거여동 28-7	550	-	550	송고19호 (04.4.6)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근린공원	•면적 : 감 3,654㎡	•대로 3-2 선형변경에 따른 마천4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②	소공원	•면적 : 증 1,501㎡	•대로 3-2 선형변경에 따른 마천4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0	-	3,236.0	서고98호 (11.4.21)	-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0	-	651.0	-	-
폐지	③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87-7일대	3,358.0	감) 3,358	-	-	-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2,596.0	-	2,596.0	서고98호 (11.4.21)	-
폐지	⑤	녹지	경관녹지	거여동 286-1일대	2,964.0	감) 2,964	-	-	-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25-17일대	2,261.0	-	2,261.0	서고98호 (11.4.21)	-
폐지	⑦	녹지	경관녹지	거여동 329-55일대	430.0	감) 430	-	-	-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452.0	-	452.0	서고98호 (11.4.21)	-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	436.7	서고259호 (11.9.8)	-
신설	⑨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76-13일대	-	증) 2,108	2,108.0	-	-
폐지	②	녹지	연결녹지	마천동 183-99일대	5,779.0	감) 5,779	-	-	-
폐지	③	녹지	연결녹지	마천동 323-11일대	1,869.0	감) 1,869	-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연결녹지	•면적 : 감 5,779㎡	•마천2구역 축진구역 해제에 따른 연결녹지 계획 폐지
③	연결녹지	•면적 : 감 1,869㎡	•성내천변 연결녹지 계획 폐지
③	경관녹지	•면적 : 감 3,358㎡	•마천2구역 축진구역 해제에 따른 성내천변 경관녹지 계획 폐지
⑤	경관녹지	•면적 : 감 2,964㎡	•기반시설(도로)확보를 위한 경관녹지 계획 폐지
⑦	경관녹지	•면적 : 감 430㎡	•기반시설(도로)확보를 위한 경관녹지 계획 폐지
⑨	경관녹지	•면적 : 증 2,108㎡	•중로1-221(폭원20m)도로 계획에 따른 마천2구역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경관녹지 신설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	1,467.0	서고294호 (08.8.28)	-
기정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9.9	-	5,639.9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공지
폐지	③	공공공지	-	마천동 182-6일대	275.0	감) 275.0	-	-	-
폐지	④	공공공지	-	마천동 181-5일대	390.0	감) 390.0	-	-	-
폐지	⑤	공공공지	-	마천동 307-38일대	575.0	감) 575.0	-	-	-
폐지	⑥	공공공지	-	마천동 323-206일대	1,276.0	감) 1,276.0	-	-	미래공공공지 폐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공지	•면적 : 감 275㎡	•마천2구역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계획 폐지
④	공공공지	•면적 : 감 390㎡	•마천2구역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계획 폐지
⑤	공공공지	•면적 : 감 575㎡	•마천2구역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계획 폐지
⑥	공공공지	•면적 : 감 1,276㎡	•대로3-2 선형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주차장계획으로 인한 폐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가) 시장 : 변경없음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마천시장	정기 시장	마천동 140-3 일대	7,169	-	7,169	서고319호 (76.11.26)	
기정	②	강동 종합시장	정기 시장	마천동 181-2 일대	4,084	-	4,084	서고45호 (80.2.13)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시설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마천초교	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서고206호 (76.8.27)	
기정	②	남천초교	학교	마천동 67일대	11,993.4	-	11,993.4	서고50호 (82.2.3)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건축제한완화	비 고
①	30	120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②	30	120	4	높이(4→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공공청사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254.3	-	3,254.3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정	②	공공 청사	-	마천동 128-18일대	4,386.0	-	4,386.0	서고98호 (11.4.21)	마천2동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기정	③	공공 청사	-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송고31호 (94.6.28)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기정),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기정	④	공공 청사	-	마천동 567-2일대	5,701.0	-	5,701.0	송고31호 (94.6.28)	청소년센터, 여성취업센터,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문화·체육시설	-	마천동 183-70일대	2,744	감)2,744	-	-	마천2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체육시설	•면적 : 감 2,744㎡	•마천2구역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계획 폐지

(5) 방재시설

(가) 하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성내천	마천동 200	오금동 171	-	2,387 (1,173)	22~47.5 (22)	-	서고236호 (89.5.18)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 227-37	마천동 200-32	-	-	-	-	서고457호 (89.10.14)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 330-7	마천동 277-23	-	90	10	-	서고457호 (89.10.14)	
기정	②	하천	성내천	마천동 277-49	마천동 202-18	-	934	12~22	-	서고98호 (11.4.21)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임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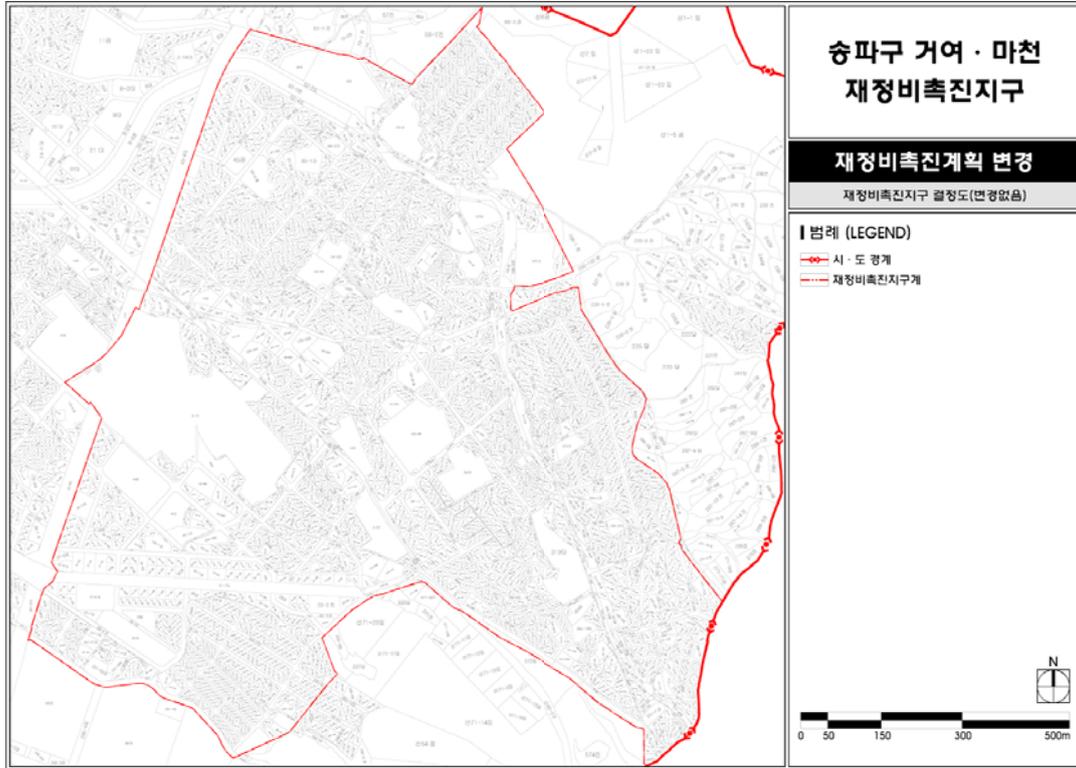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송파구 주거재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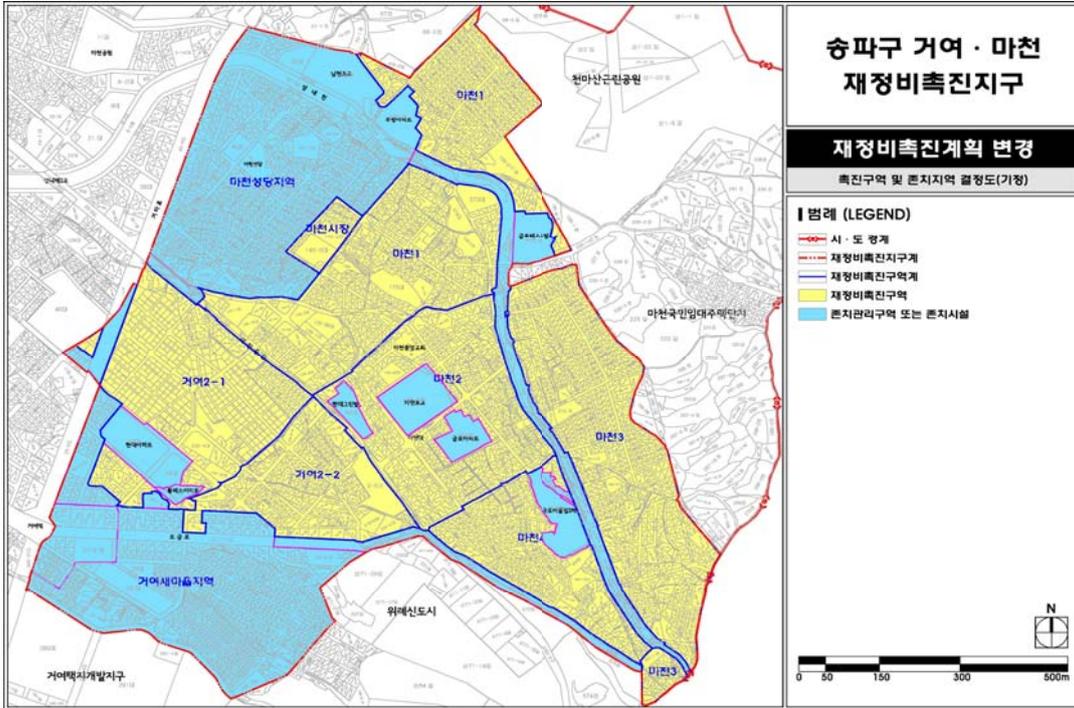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송파구 주거재생과(☎ 02-2147-289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마천1 : '14.03.13, 마천3 : '13.06.13)된 구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진행(송파구)중이므로, 본 고시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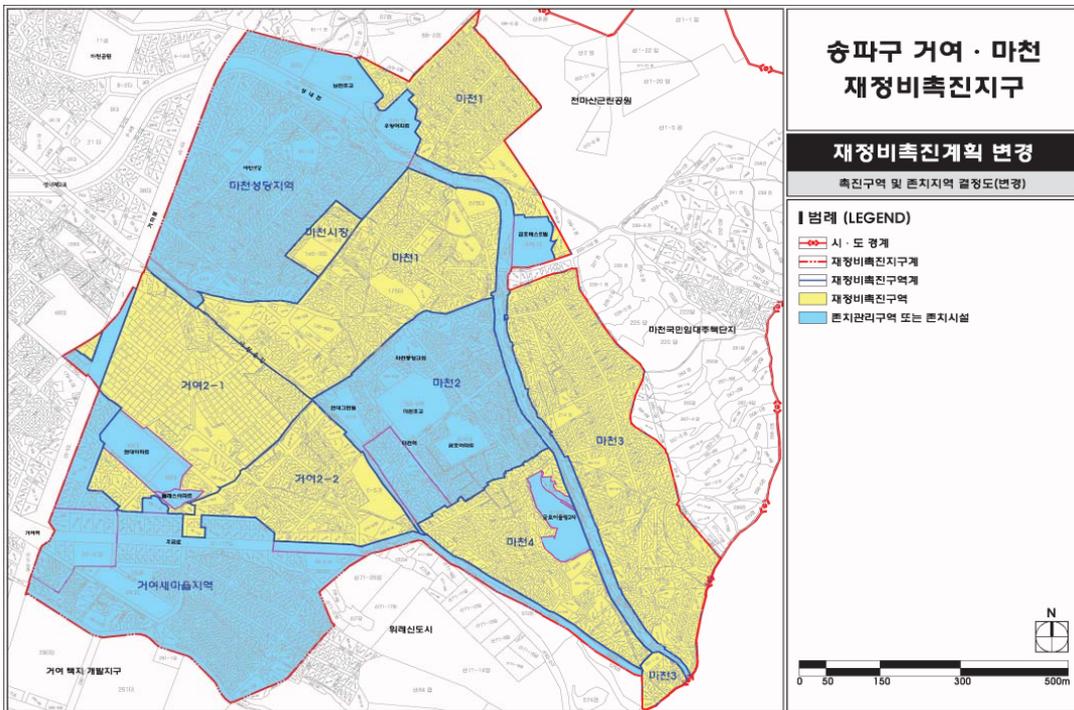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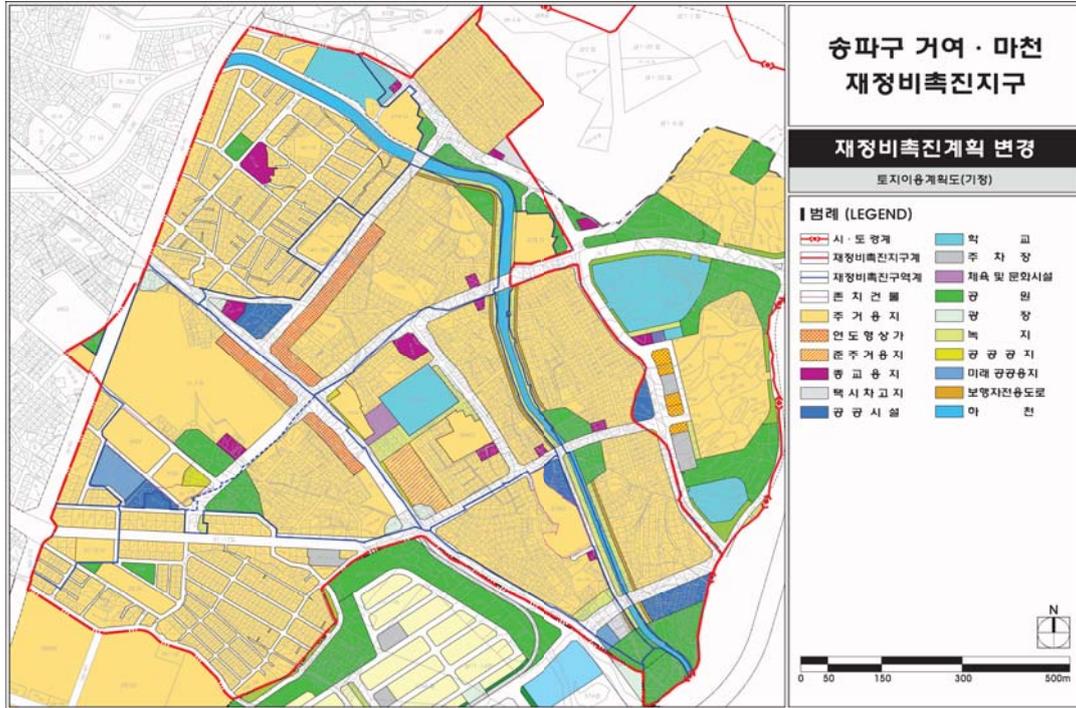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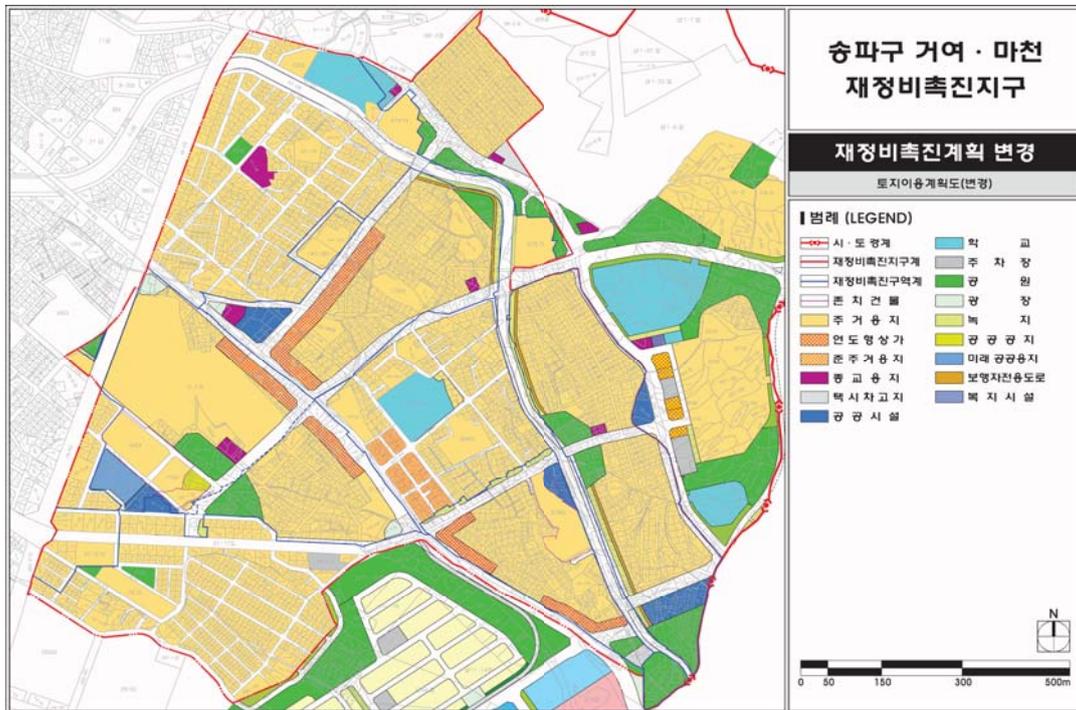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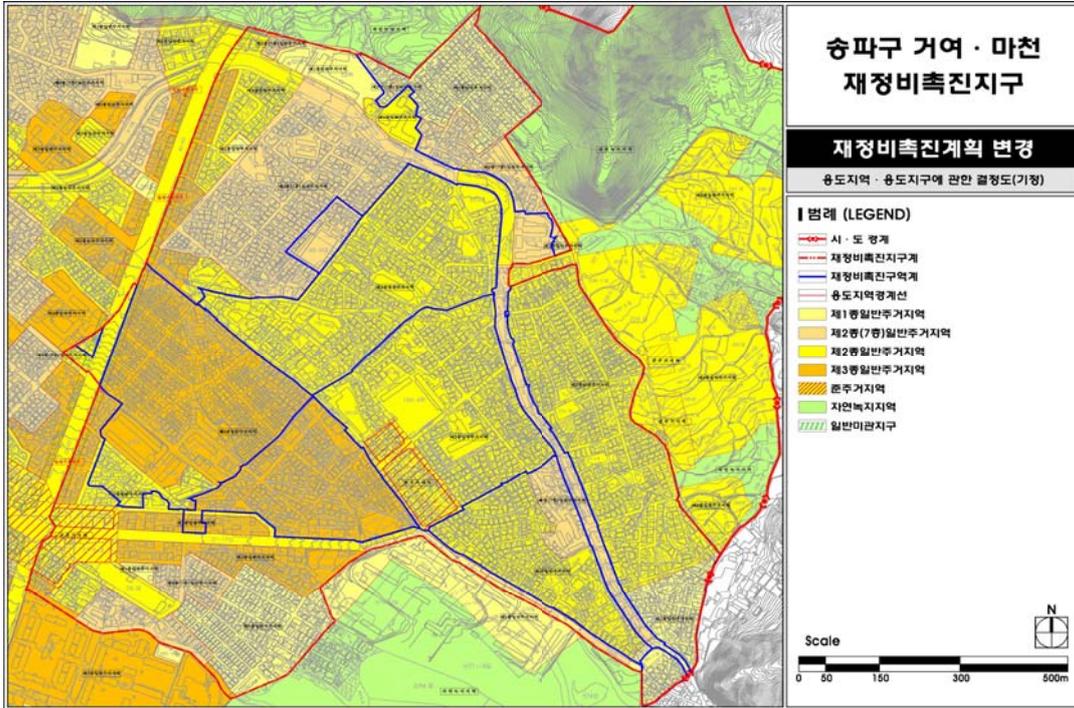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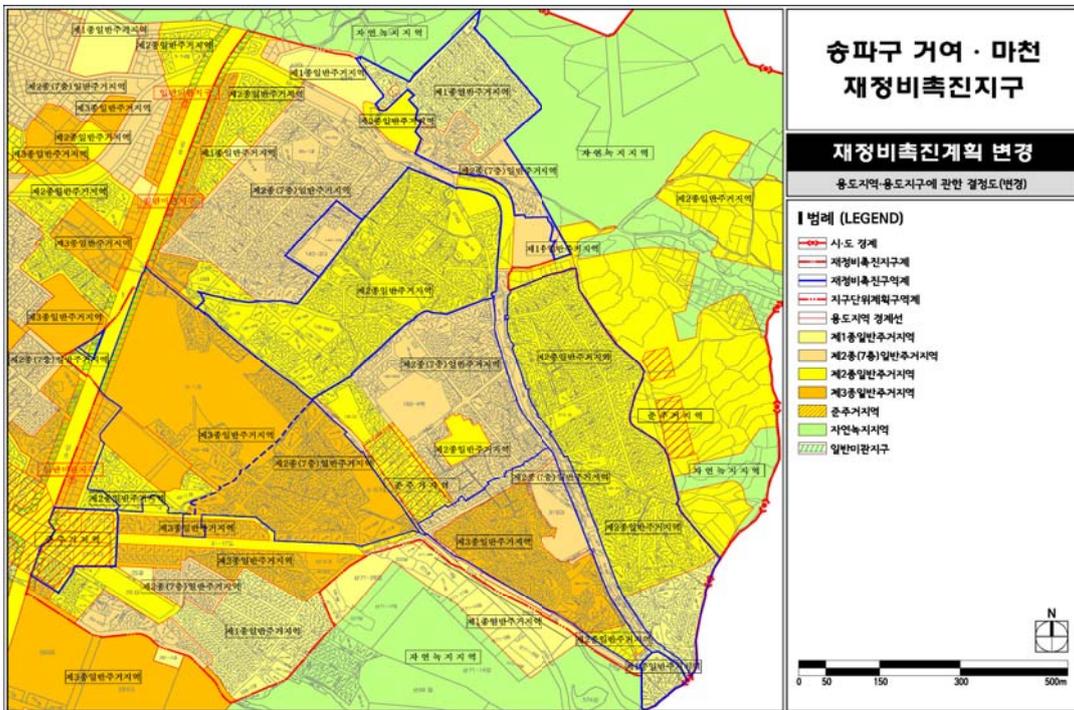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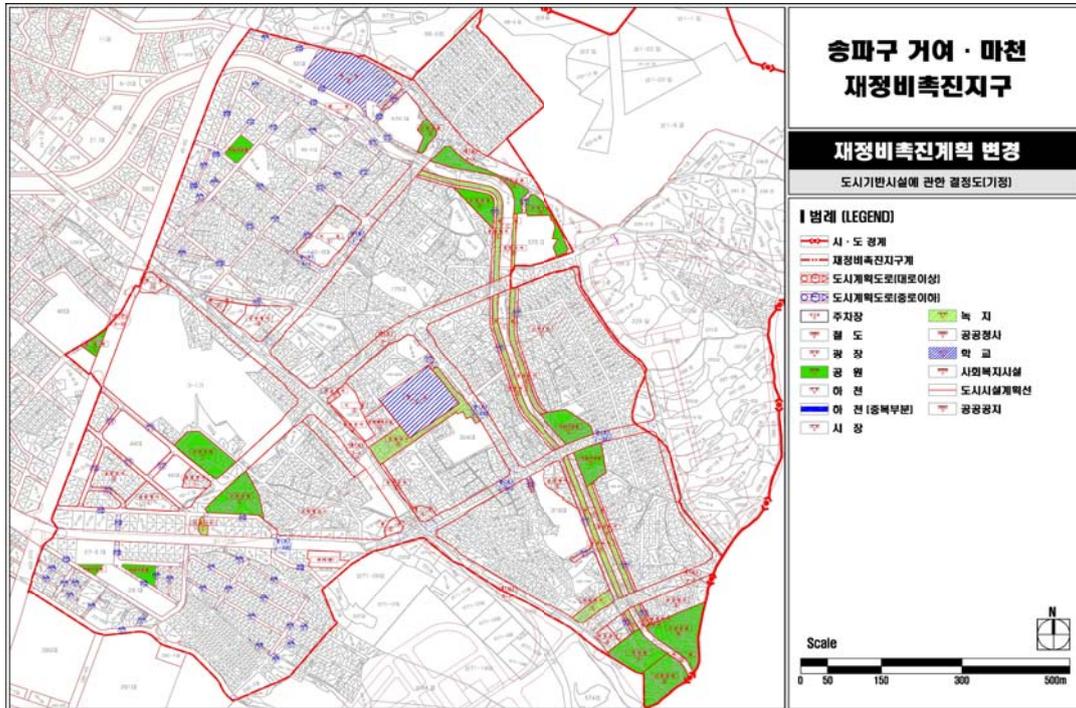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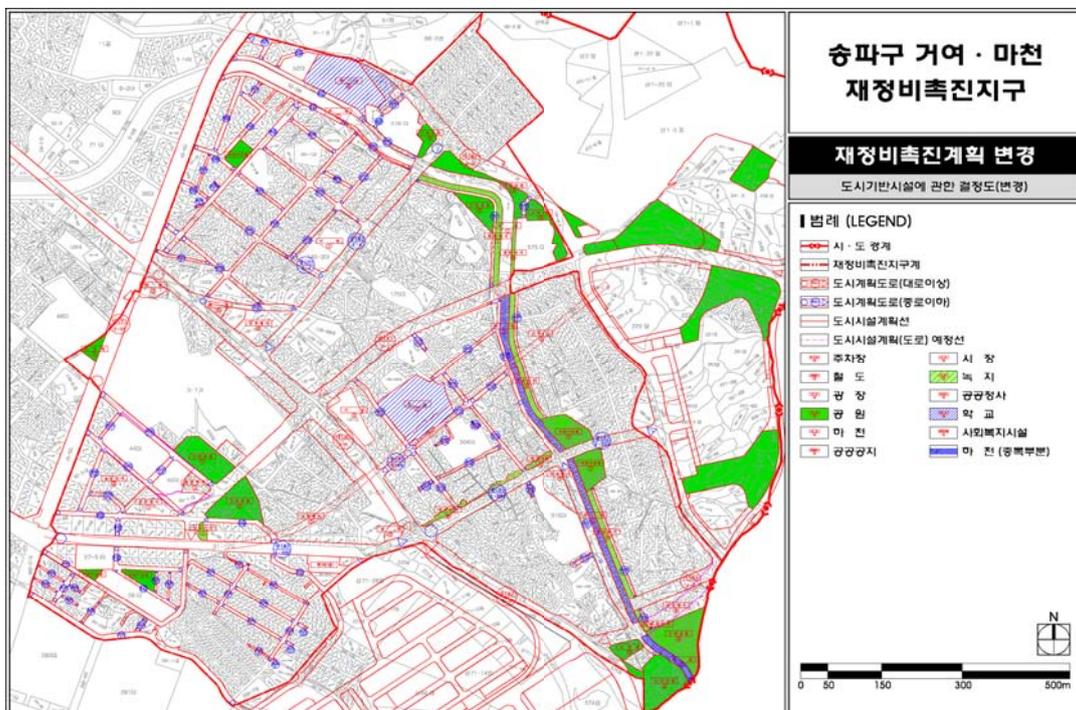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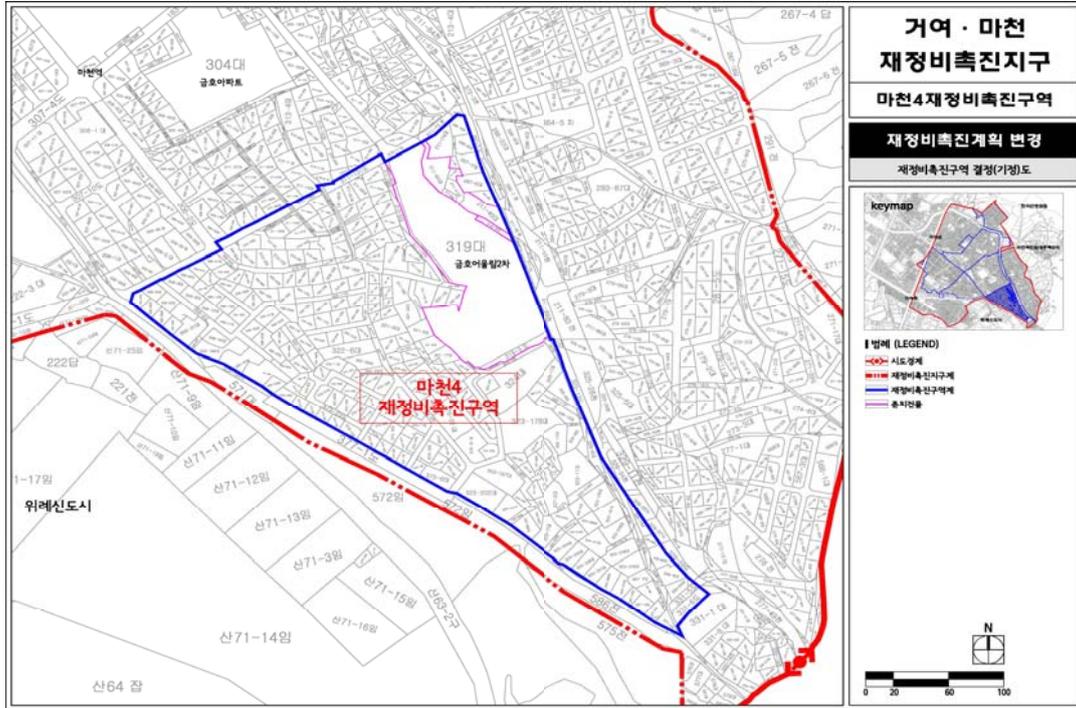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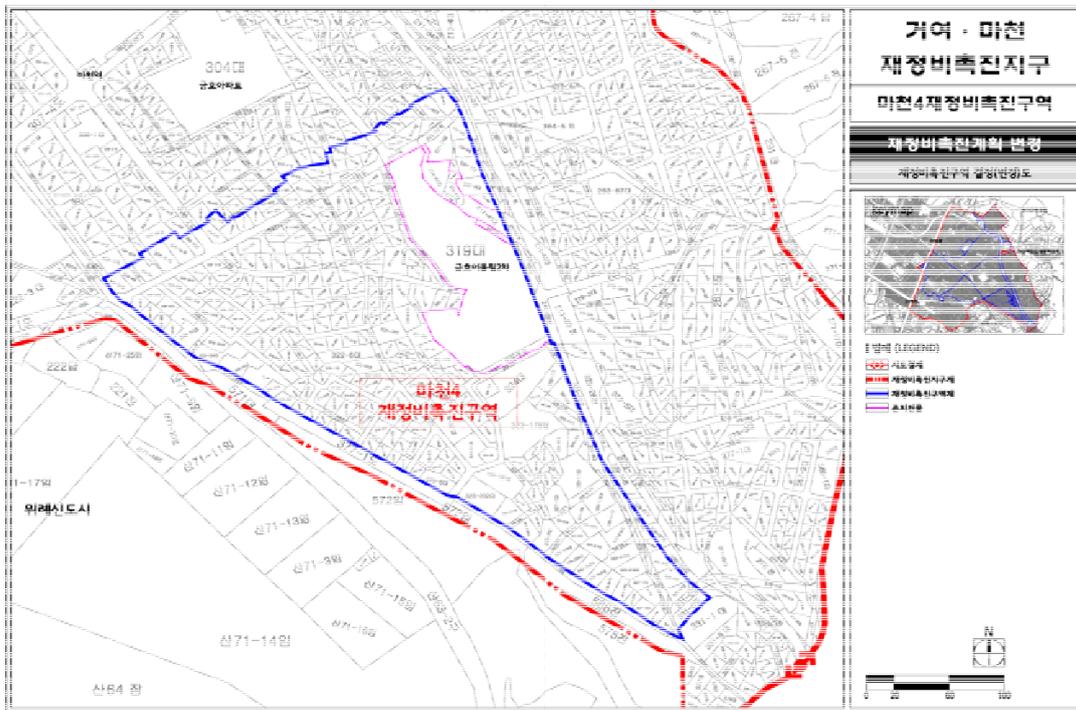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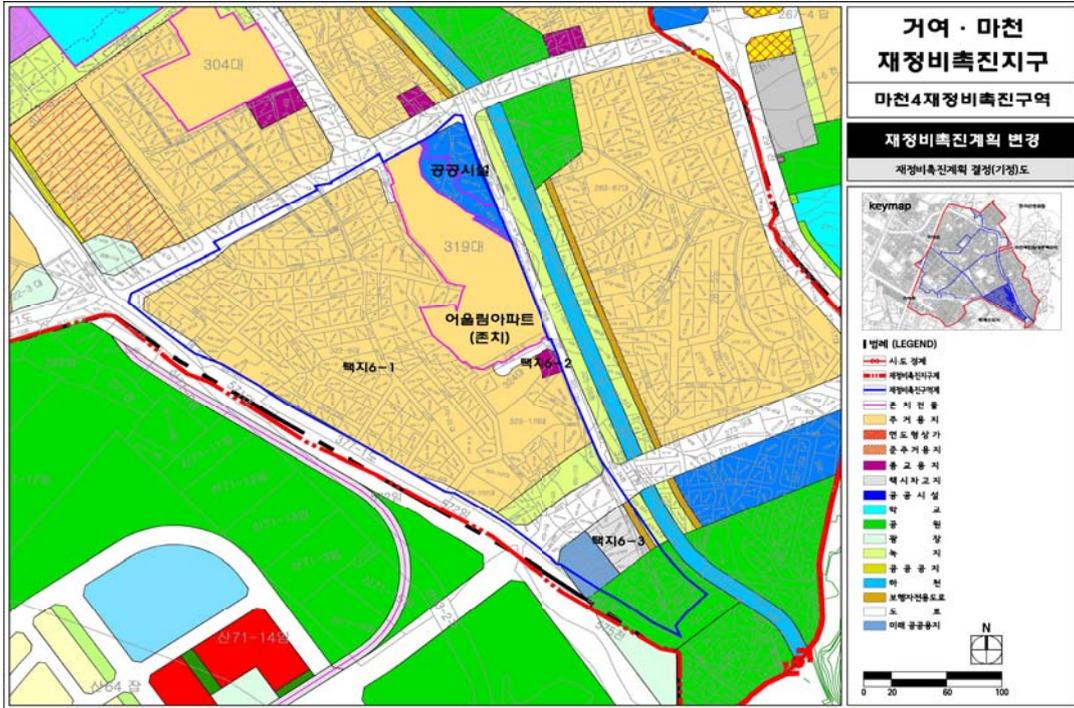
□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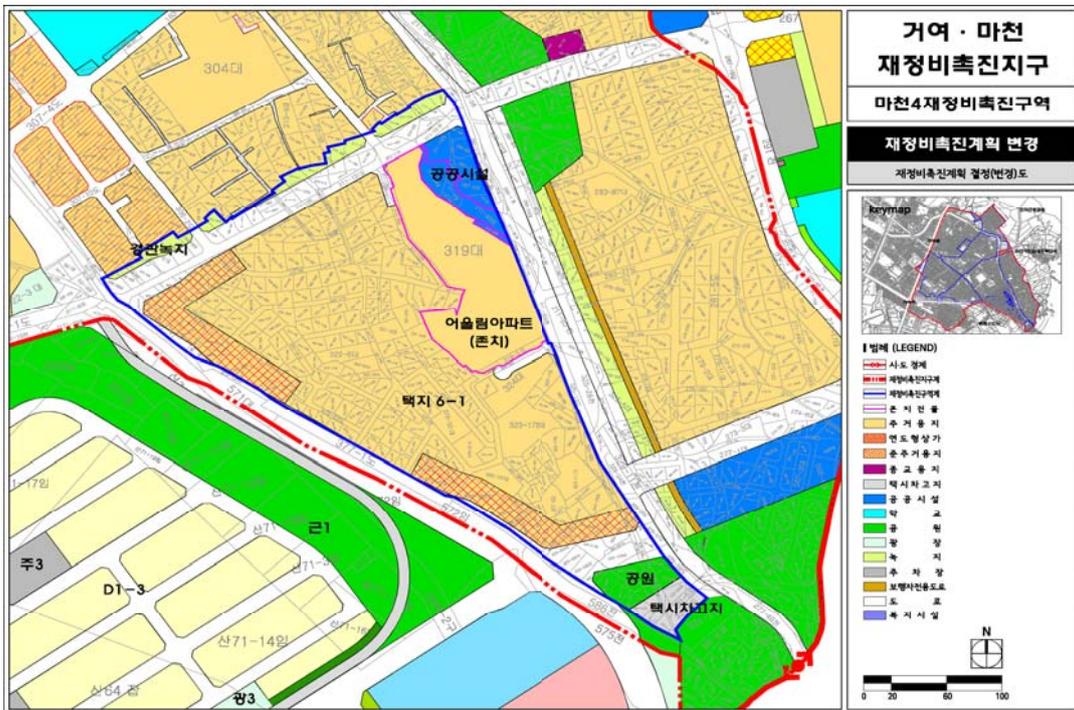
□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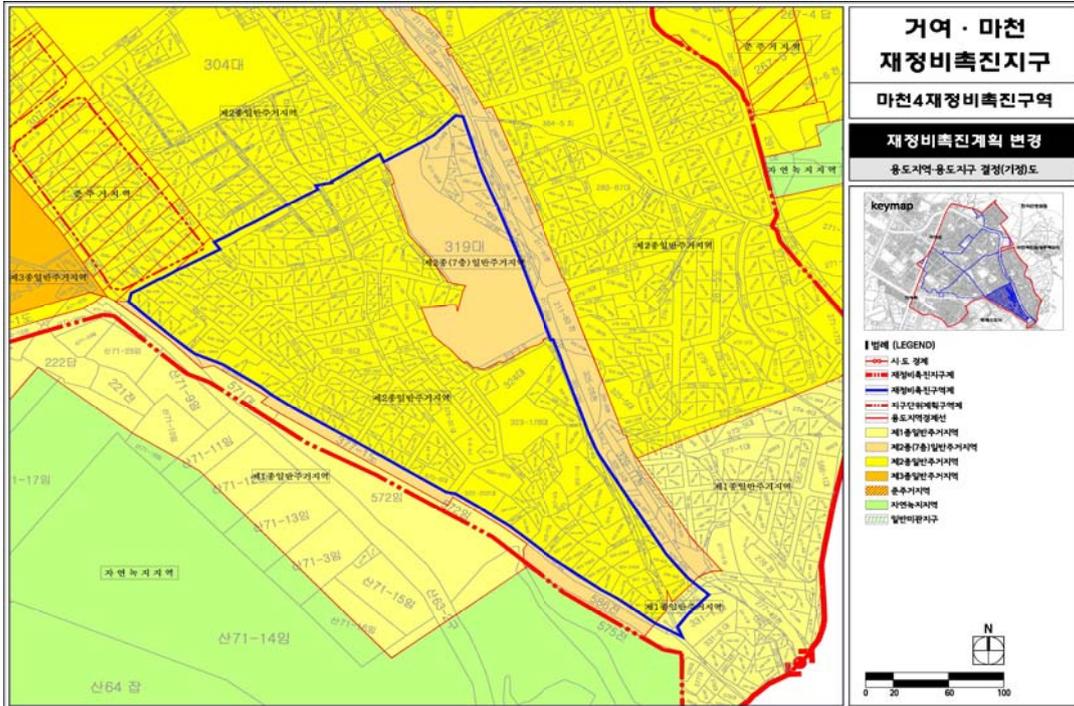
□ 마천4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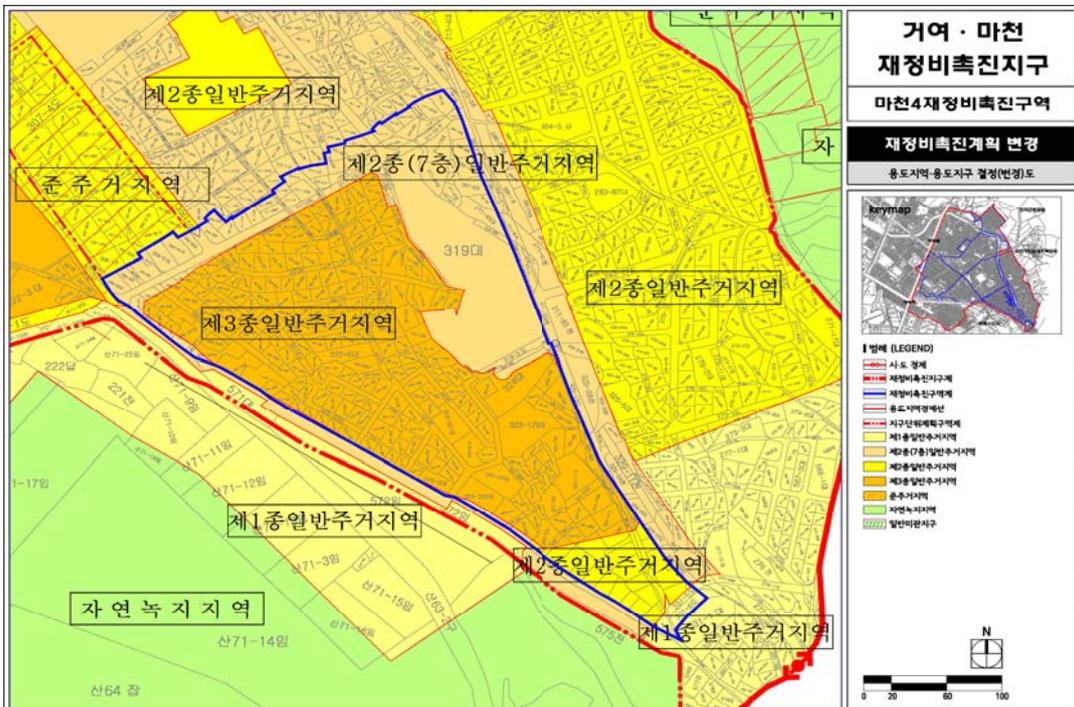
□ 마천4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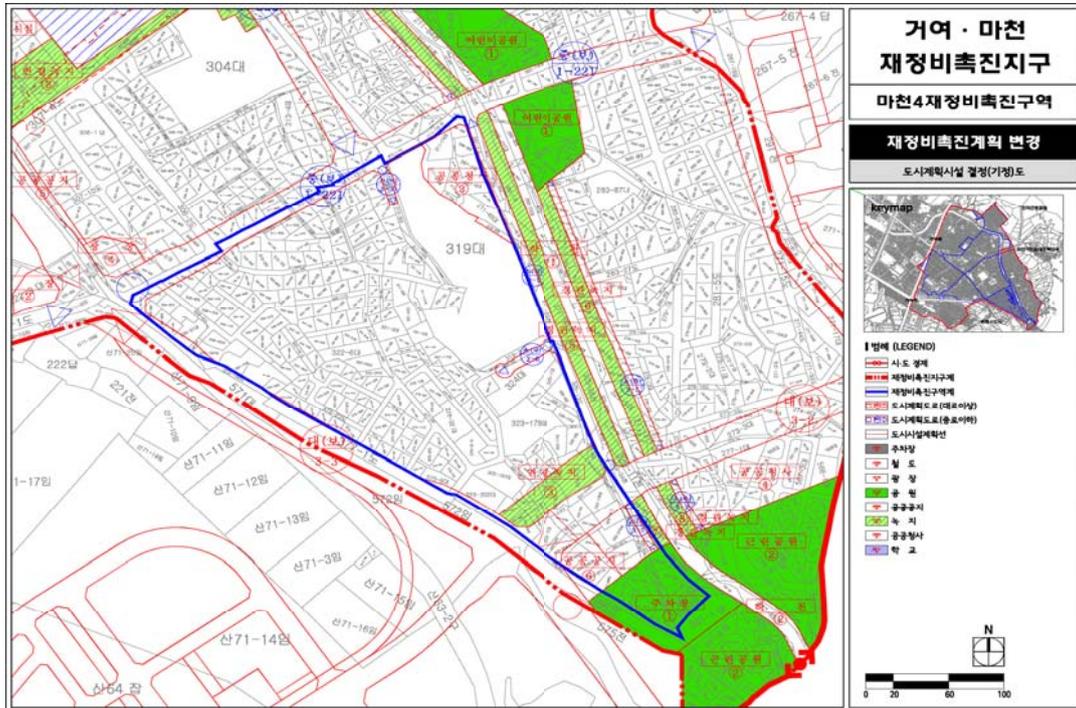
□ 마천4구역 용도지역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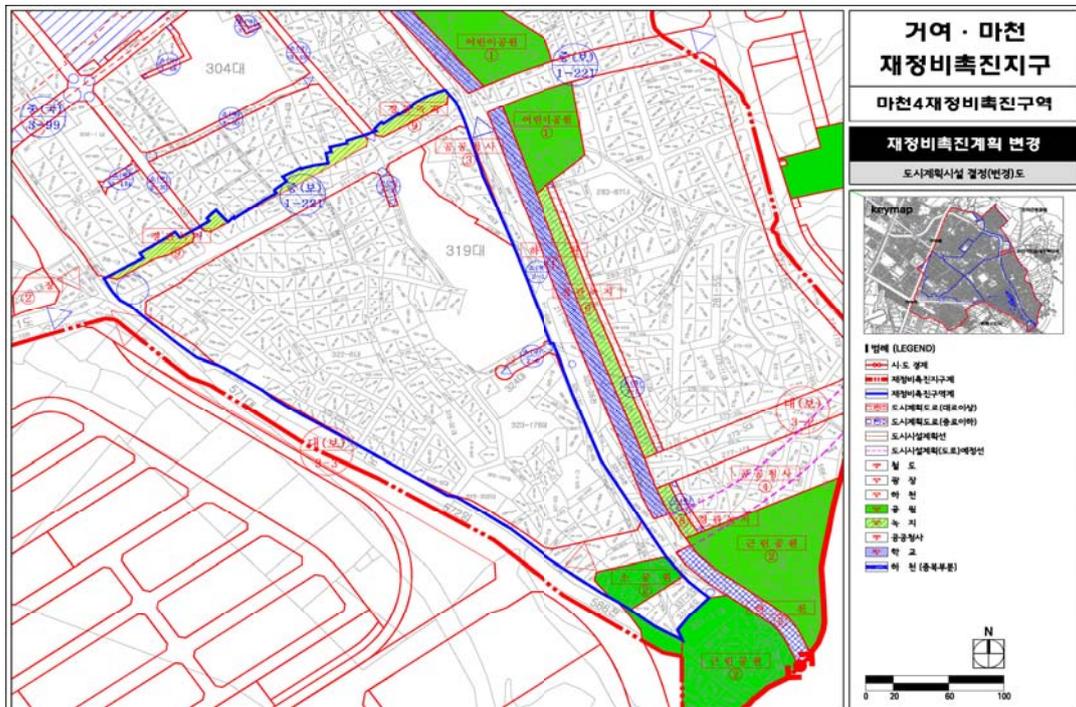
□ 마천4구역 용도지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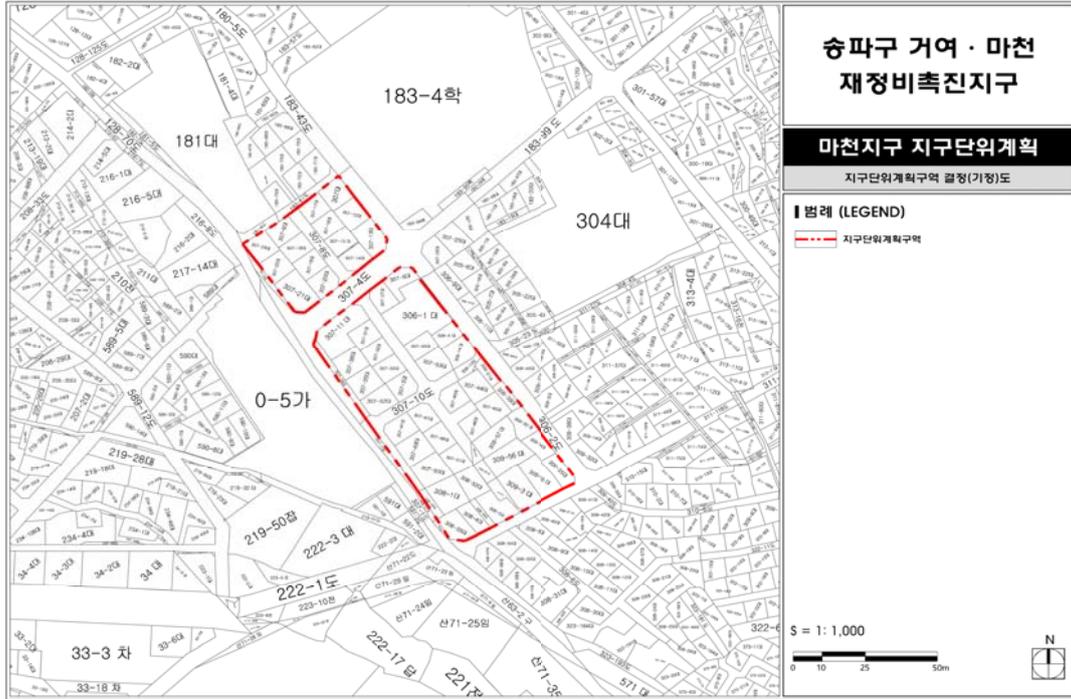
□ 마천4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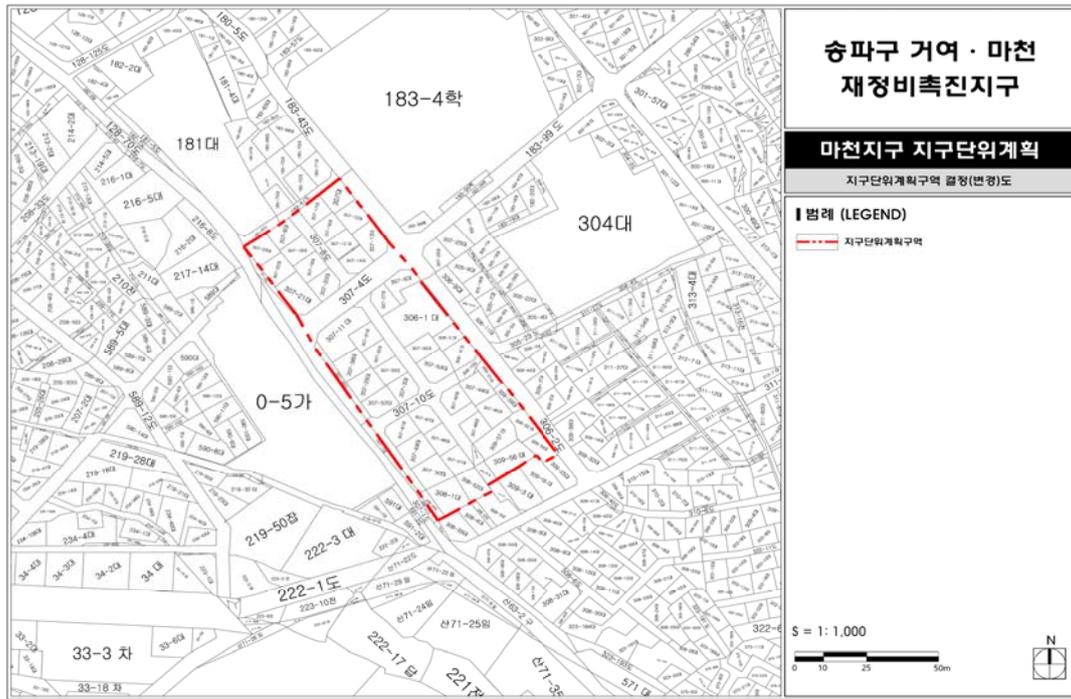
□ 마천4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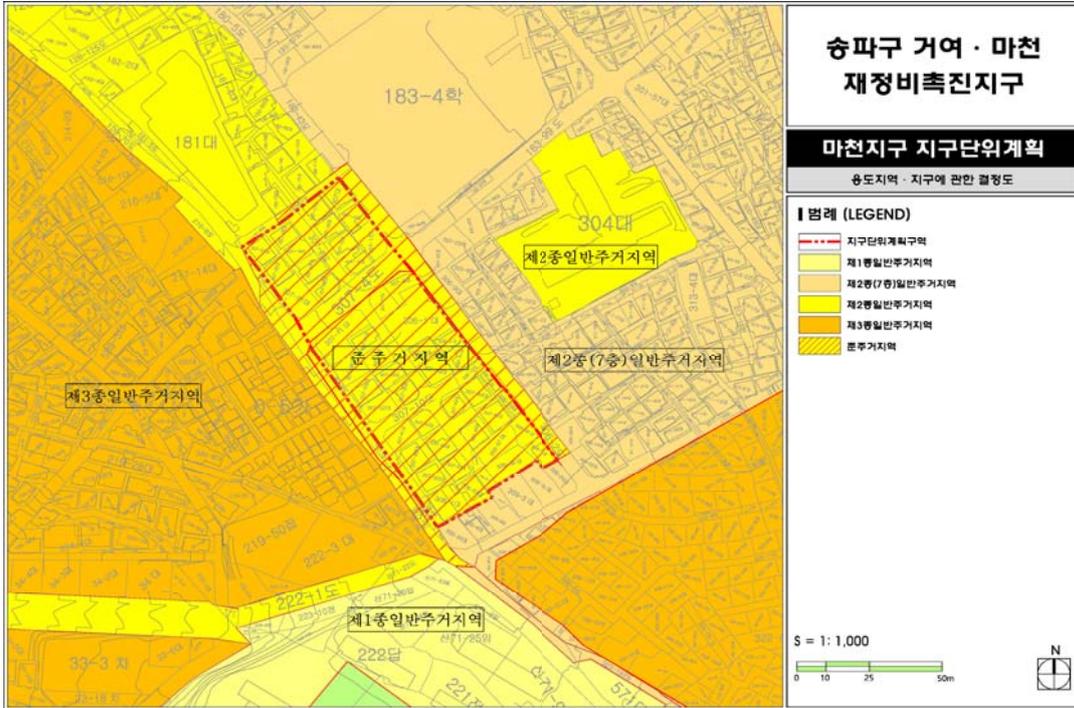
□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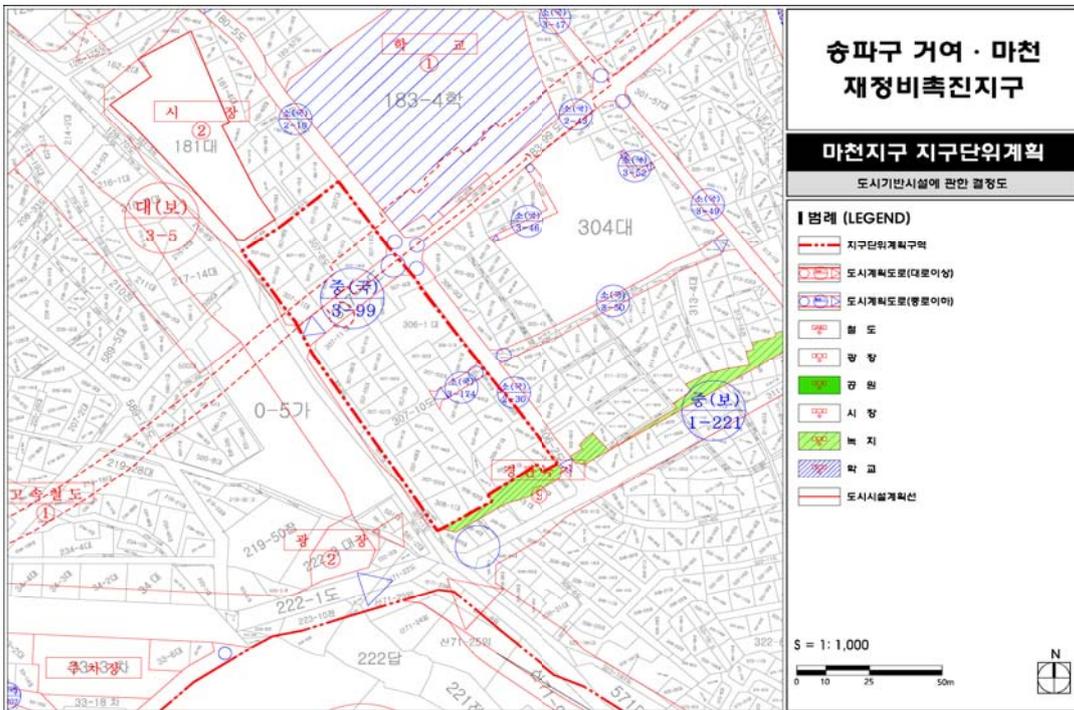
□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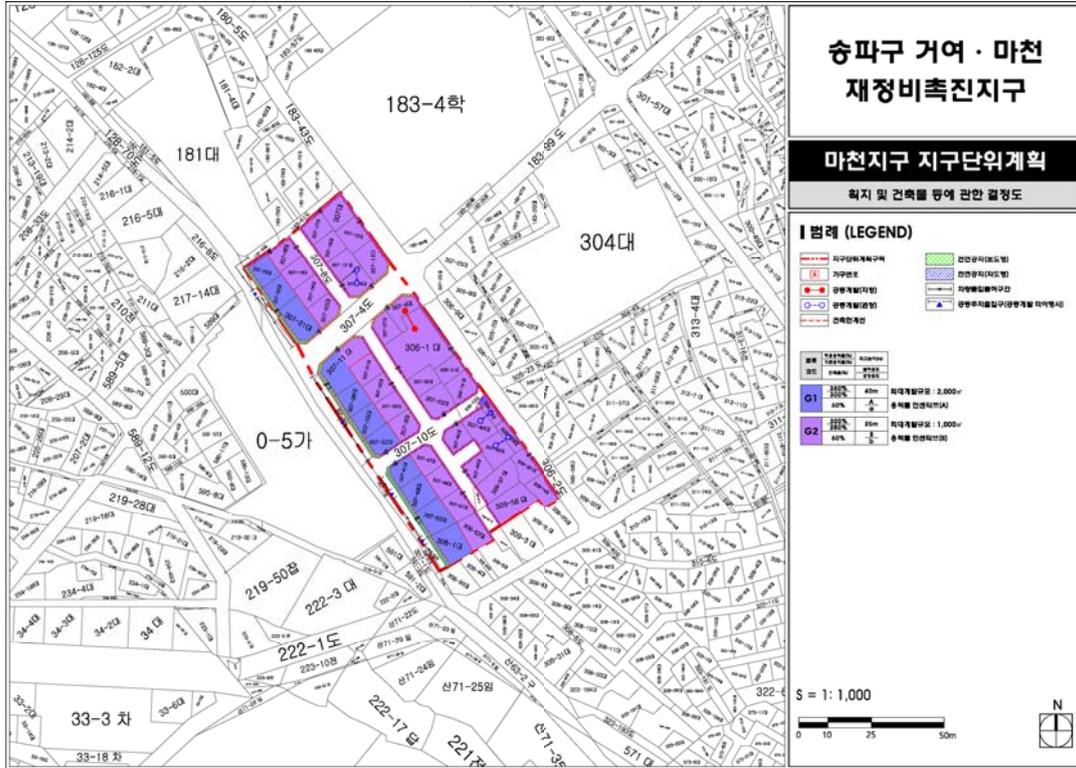
□ 마천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마천지구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마천지구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6.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370,844㎡	최초지정일 : 2009.9.10 (서고 2009-345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년도 : 2018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 방식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70,844.0	-	370,844.0	
촉진 지구	소 계			147,935.4	증) 16.5	147,951.9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1,819.2	-	1,819.2	
		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	1,938.3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5.0	-	7,025.0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51일대	41,586.0	증) 16.5	41,602.5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706.5	-	51,706.5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494일대	27,623.4	-	27,623.4	
	주 택 재개발	전농12 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존치 지구	소 계			222,908.6	감) 16.5	222,892.1	
	존치관리구역			222,908.6	감) 16.5	222,892.1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청량리1~3, 용두1, 전농, 전농12구역은 변경없음.

6.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620-51일대	41,586.0	증) 16.5	41,602.5	-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도로변 구역경계 일부조정 (41,586.0㎡→41,602.5㎡)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조정 및 효율적인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도로변 구역경계 일부조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586.0	증) 16.5	41,602.5	100.0	지적분할 반영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주거지역	소계	1,509.7	-	1,509.7	3.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75.9	-	475.9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3.8	-	1,033.8	2.5	
상업지역	소계	40,076.3	증) 16.5	40,092.8	96.4	
	일반상업지역	40,076.3	증) 16.5	40,092.8	96.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전농동 620-60대 일원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지적분할 결과반영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일반상업 : 40,076.3㎡→40,092.8㎡	· 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도로변 구역계 일부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대문~청량리동80-1	100,800	4,200	양측12	-	-
기정	답십리길	일반 미관지구	전농동621-2~ 답십리2-146	63,000	2,100	양측15	-	-

(2)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청량리동176일대	26,995(57.4)	-	-
기정	-	방화지구	동대문~청량리간	84,720(3,452.8)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586.0	증) 16.5	41,602.5	100.0	-	
획 지	소 계	26,330.2	-	26,330.2	63.3	-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복합용지	26,330.2	-	26,330.2	63.3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5,255.8	증) 16.5	15,272.3	36.7	-
	도 로	9,857.5	증) 16.5	9,874.0	23.7	-
	공 원	3,522.0	-	3,522.0	8.5	가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광 장	495.0	-	495.0	1.2	-
	녹 지	842.7	-	842.7	2.0	경관녹지
	보행자전용도로	538.6	-	538.6	1.3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전농동 620-60대 일원	· 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도로변 구역경계 일부조정 (41,586.0㎡→41,602.5㎡)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조정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도로변 구역경계 일부조정(증)16.5㎡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1	35~38	주 간선	1,980 (229)	신설동 101-7	청량리 11호광장 청량리동74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1	3~34	보조 간선	276	전농동 625-3	전농동 588-4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30	25~47	보조 간선	2,100 (262)	오스카 극장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6)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도로	-	서고 제359호 ('96.12.31)	-
기정	중로	2	380	12~15	집산 도로	303	전농동 622-8	전농동 620-67	일반 도로	-	-	도로폭원 일부조정
변경	중로	2	380	12~15	집산 도로	303	전농동 622-8	전농동 620-6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특수 도로	90	전농동 620-88	전농동 620-51	보행자 전용 도로	-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금회 구역계 조정에 따라 중로2-380호선 중 일부 제척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촉진계획 공사시 사업시행자(청량리4구역)부담으로 정비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380	중로 2-380	· 구역내 일부 폭원변경 · B=12~15m	· 효율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남측 성바오로병원 이면부 도로폭원 일부 변경

(2)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 원	가로공원	전농동 620-51일원	2,343.1	-	2,343.1	-	-
기정	㉡	공 원	소공원	용두동 7일원	497.2	-	497.2	서고제336호 ('10.9.30)	-
기정	㉢	공 원	어린이 공원	용두동 9-11일원	1,581.5 (681.7)	-	1,581.5 (681.7)	서고제359호 ('96.12.31)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3)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전농동 623-4일원	842.7	-	842.7	-	

(4)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광 장	일반광장	전농동 588-1일원	24,360.7 (495.0)	-	24,360.7 (495.0)	서고 제1093호 ('66.11.26)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5) 지하도로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도로	지하 도로	전농동 620-69일원	5.7~22.0	36.3	304.5	-	304.5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4번출구)
기정	㉧	도로	지하 도로	청량리동 819일원	6.1~15.8	52.3	685.8	-	685.8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5번출구)

■ 입체적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도로	지하 도로	전농동 620-69일원	5.9	7.5	44.25	-	44.25	-	지하1층 (H=4.23m)
기정	②	도로	지하 도로	청량리동 819도일원	15.0	3.1~8.2	84.45	-	84.45	-	지하1층 (H=4.5m)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청량리4재 정비 촉진구역	41,586.0	-	26,330.2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	132	-	-	-	132	
변경		41,602.5	-	26,330.2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	132	-	-	-	132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층수 (지상/지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41,586.0	택지	26,330.2	전농동 620-47 일원	378,433.8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60 이하	990 이하	200m이하
변경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41,602.5	택지	26,330.2	전농동 620-47 일원	378,433.8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60 이하	990 이하	200m이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로2-1호선변 : 3m ▷ 중로2-380호선변 : 3m ▷ 대상지북측 민자역사 연결지역 : 5m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계획

■ 공공시설부담률(%) = $\{15,272.3 - 5,291.7 - 4,819.0\} / 41,602.5 \times 100 = 12.41\%$

구분	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촉진구역 총면적 (㎡)	순부담률 (%)
기정	15,255.8	5,245.1	4,819.0	41,586.0	12.48
변경	15,272.3	5,291.7	4,819.0	41,602.5	12.41

(4) 용적률계획

■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	용적률 적용기준 (%)	비 고
계	26,330.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7.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일반상업지역	26,082.5	800	

※ 기준용적률 : $(247.7 \text{㎡} \times 200\% + 26,082.5 \text{㎡} \times 800\%) / 26,330.2 \text{㎡} = 794.4\%$

■ 상한용적률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794.4\% \times (1 + 1.3 \times 0.197) = 996.8\%$ ※ α 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15,272.3 - (5,291.7 + 4,819.0)\} / 26,330.2 = 0.196$ 상한용적률 = 99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아.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 변경없음

주택연면적 비율	65%이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문화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여의 50%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기여 잔여분은 문화시설로 공급 ▷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 26,330.2㎡ × 32.5% = 8,557.3㎡이상 ○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기준 : 8,557.3㎡ × 50% = 4,278.6㎡이상 ▷ 계획 : 4,388.6㎡ [전용면적 60㎡이하 64세대(100%)] ○ 문화시설 공급계획 : 건축연면적 1,709.4㎡ (토지 + 건축물)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 건설비율(장기전세주택 포함 전체 세대수 1,43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252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20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이하		85㎡초과	합계
	60㎡이하	60~85㎡		
세대수 (장기전세주택)	64(64)	1,252(-)	120(-)	1,436(64)
비율	4.4%	87.2%	8.4%	100.0%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전면에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 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 녹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 실시 · 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차.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상업지역 밀집지로 자연적인 지형 및 식재, 식물상이 빈약하여 보호수 또는 양호한 수목이 전무한 상태이나 사업시행시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구역내 나대지 지역에 이식 후 재식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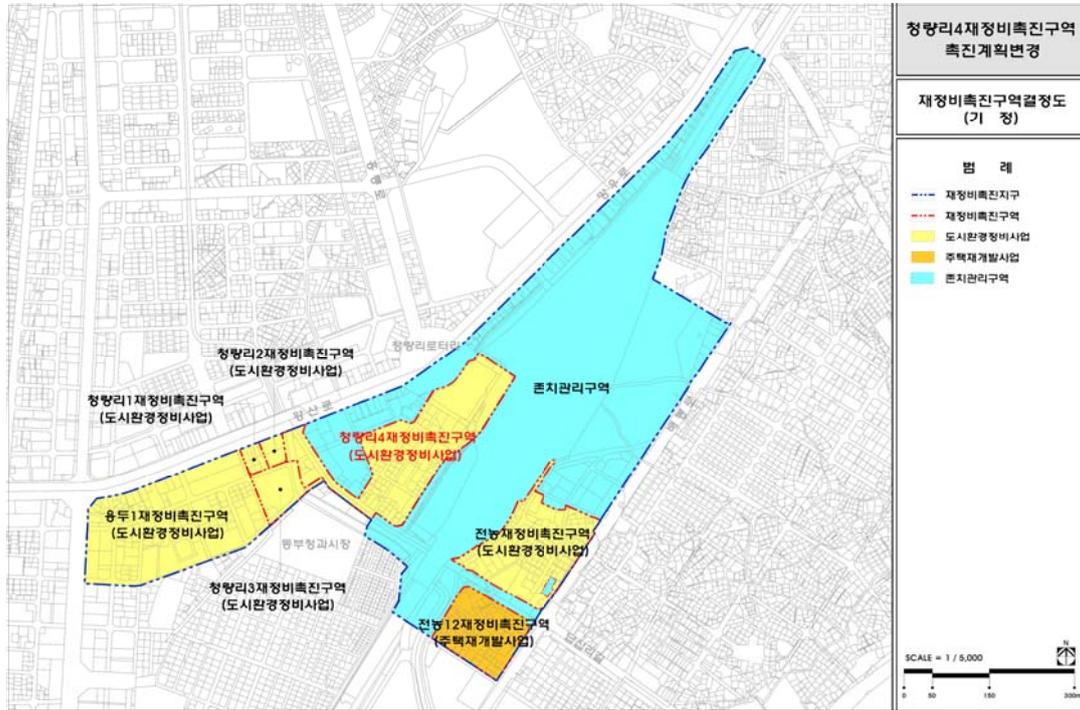
카.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후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1,304세대 증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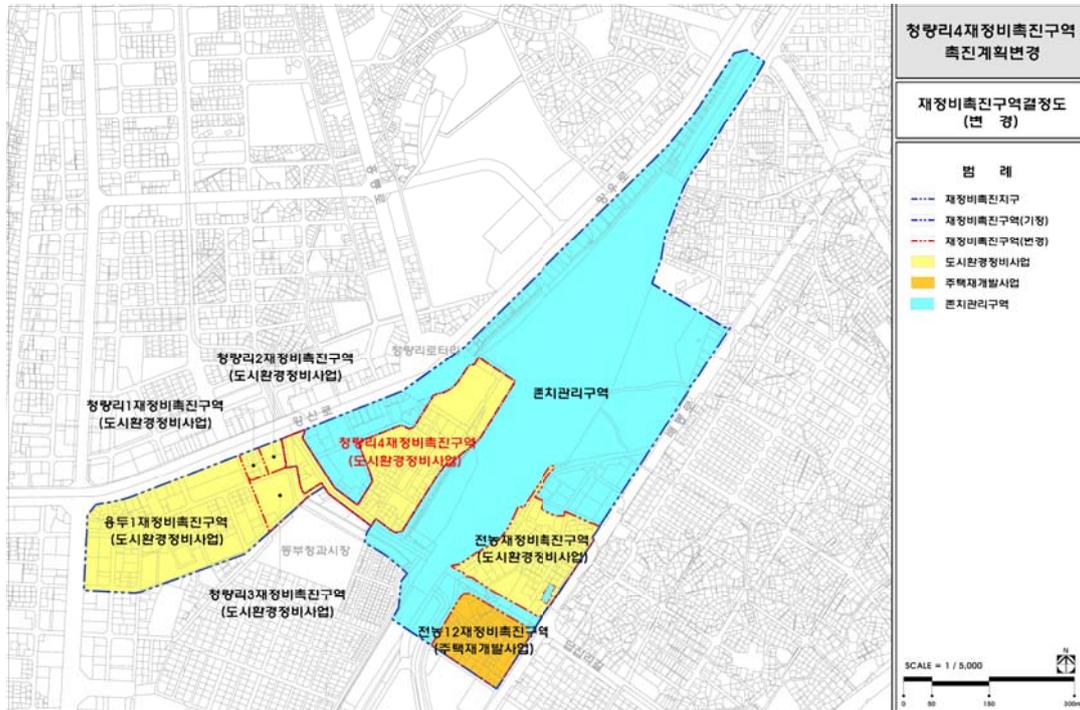
※ 증가예상 세대수 = 계획세대수(1,436세대) - 기존세대수(132세대) = 증)1,304세대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4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6)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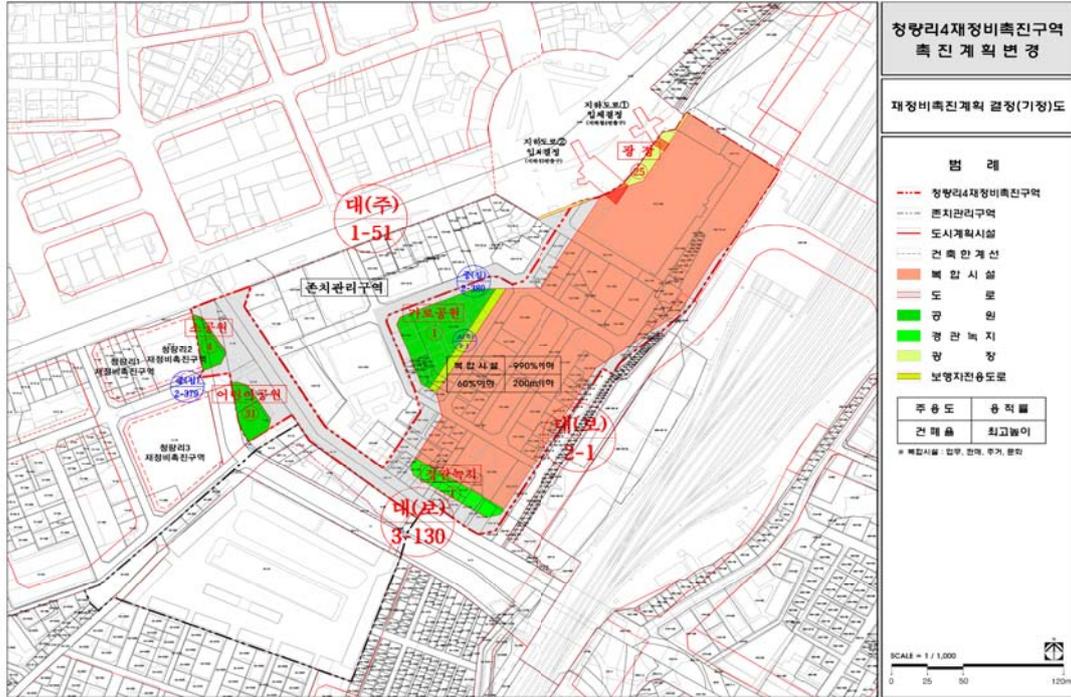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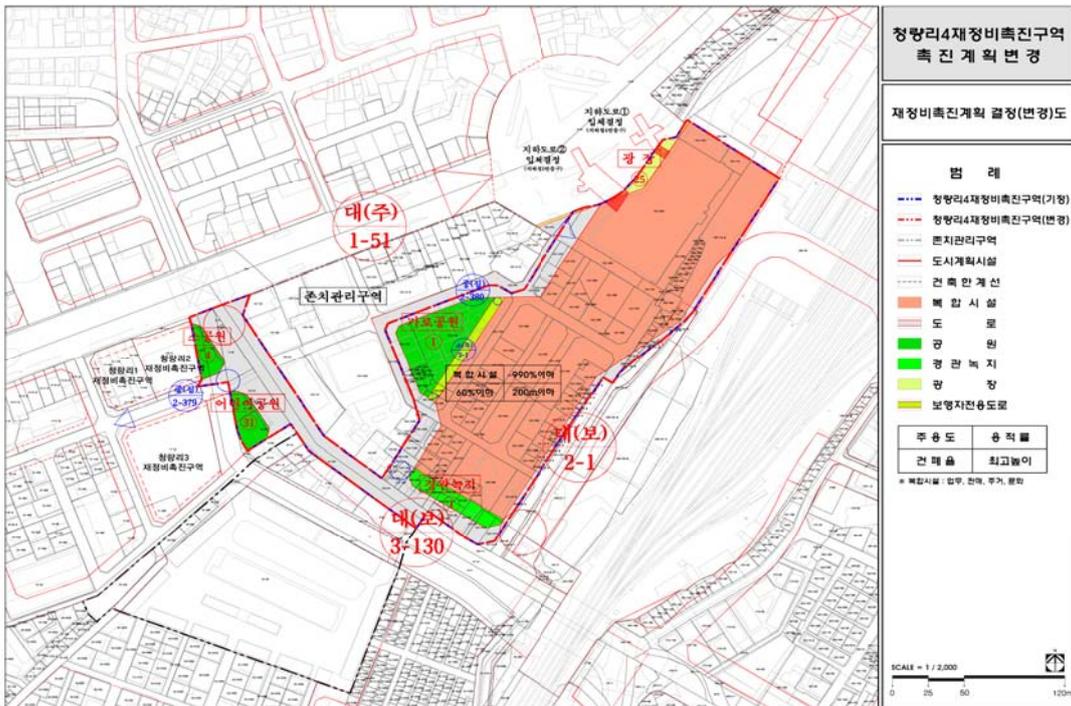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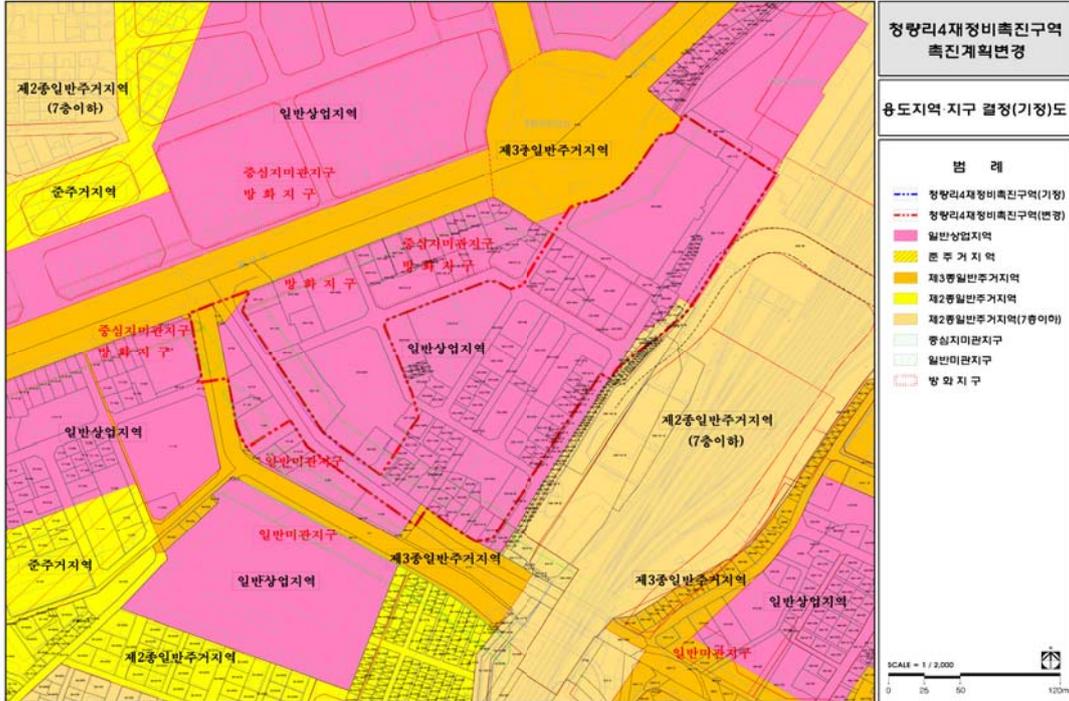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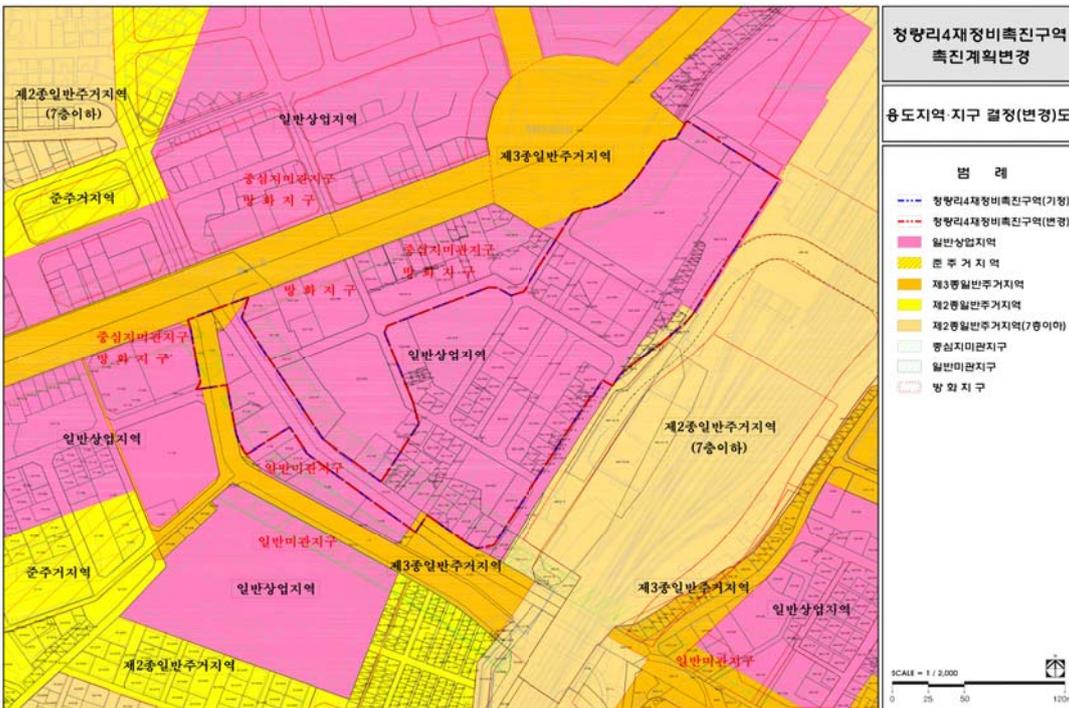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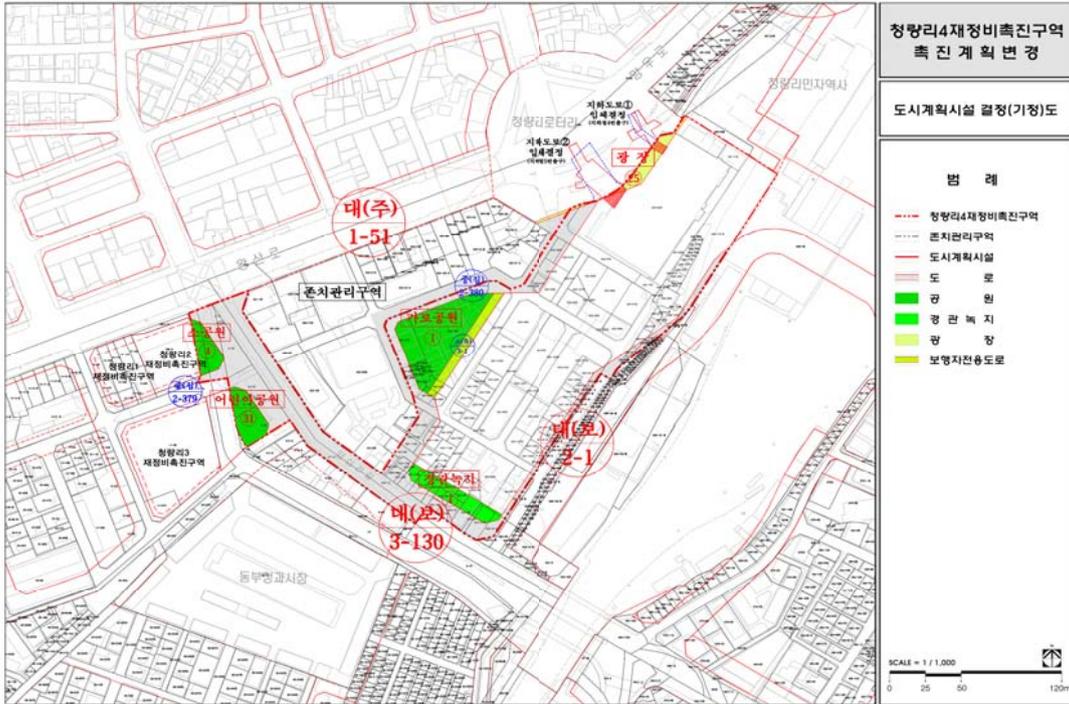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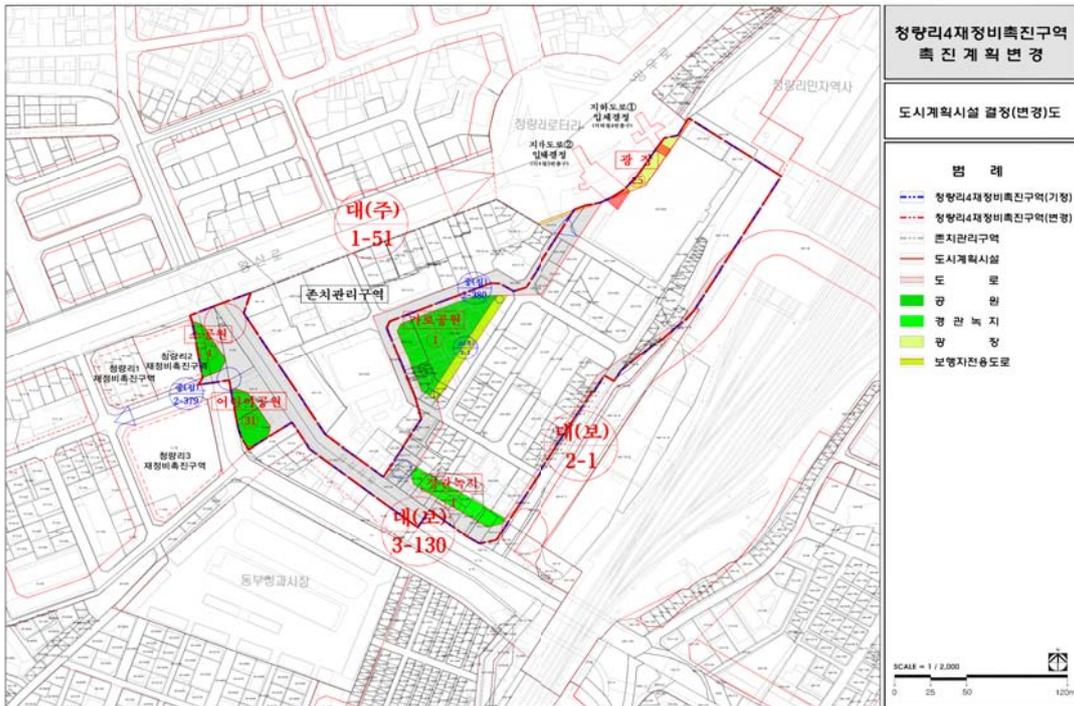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8호(2013.7.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70호(2013.12.31.), 제2015-130호(2015.05.14.) 및 제2015-193호(2015.7.2.), 제2015-345호(2015.11.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된 ‘만리2 주택재개발구역의 도로(소로3-000호)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 면적 및 소유권 변동, 사업기간 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아현동 87-6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2) 명 칭 : 만리2주택재개발구역 외 도로(소로3-000호) 신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소로3-000호 : 폭 6.0m, 연장 129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정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8번지 5층 503호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년 1월31일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년 7월31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연번	변경구분	동명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당초	중구 만리동2가	37-22	도	2,312.9	4.9	김은아 외 9인	중구 손기정로 14길 28	2312.9분의0.208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설정		
	변경	중구 만리동2가	37-31	도	4.9	4.9	서울특별시							
2	당초	중구 만리동2가	42	수	714.4	347.7	서울특별시							
	변경	중구 만리동2가	42-4	수	347.7	347.7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구분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3	당초	중구 만리동2가	218-105	수	2,916.9	216.6	서울특별시						
	변경	중구 만리동2가	218-124	수	216.6	216.6	서울특별시						
4	당초	마포구 아현동	87-6	수	518.0	102.9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없음"											
5	당초	마포구 아현동	87-7	수	6,768.0	273.6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없음"											
6	당초	마포구 아현동	87-48	대	57.0	2.5	여평선	마포구 마포대로24길 25					
	변경	마포구 아현동	87-62	대	2.0	2.0	만리2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3-8 5층 503호 (경주김씨중앙 종친회건물)					

- 사용할 토지 또는 시설물(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37-22

2) 사용면적 : 43.06㎡

3) 사 유 : 도로 및 시설물(구조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재개발 부지 내 옹벽 및 도로부지의 무상사용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 도로(소로 3-000호) 폭 6.0m, 연장 129m

구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당초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아현동87-6번지	948.2㎡	○	
변경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아현동87-6번지	947.7㎡	○	면적감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4호(2016.06.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1호(2016.09.0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동북권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사유 및 내용
 - 가. 정정사유 : 토지조서, 물건조서 상 토지소유자(공유자) 일부 누락 및 오기사항 정정
 - 나. 정정내용 : 토지소유자(공유자) 추가 반영 및 오기사항 정정
 - 붙임
 - (수용)토지조서(정정) : (도봉동 5-33 토지소유자(공유자) 추가. 이외의 사항 변경없음)
 - 물건조서(정정) : (연번4 소재지지번 도봉동 5-2를 도봉동 5-32로 정정, 연번9 소재지지번 도봉동 5-33 토지소유자(공유자) 추가. 이외의 사항 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지형도면(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 나. 사업 시행지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변경없음)
 - 1) 면적 : 49,830㎡
 - 2) 내용 : 토지 및 지장물(물건) 보상 후 테니스장 설치 등 공원조성
 - 라.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도봉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17.12.31.
 -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02-2133-8440),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3)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토지조서(정정)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12	도봉동 5-33	답	464	464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5-4분할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변경	12	도봉동 5-33	답	464	464	강북구 수유동 176-67	송임규				5-4분할
						강북구 수유동 176-67	송임규				

물건조서 (정정)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기정	4	도봉동 5-2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외파이프)	191.3㎡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비닐하우스(외파이프)	95.2㎡																				
				임축판넬	18.75㎡																				
			공작물	화장실(이동식)	1개소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창고(블록조)	9㎡																				
				그늘막(목재)	9㎡																				
			수목	자가수도	8개소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지두	10~15년/3.0m/7cm																				
				복숭아	10~15년/3.0m/7cm																				
				블루베리	5~10년/1.5m/2.5cm																				
				꽃사과	5~10년/3.0m/10cm																				
				앵두	10~15년/2.5m/5cm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외파이프)	191.3㎡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비닐하우스(외파이프)	95.2㎡																							
	임축판넬	18.75㎡																							
	화장실(이동식)	1개소																							
	창고(블록조)	9㎡																							
	그늘막(목재)	9㎡																							
공작물	자가수도	8개소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변경	4	도봉동 5-32	수목	자두	10~15년/3.0m/7cm	35주	도봉구 도봉신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복숭아	10~15년/3.0m/7cm	4주						
				블루베리	5~10년/1.5m/2.5cm	20주						
				꽃사과	5~10년/3.0m/10cm	6주						
				앵두	10~15년/2.5m/5cm	13주						
				대추	5~10년/4m/7cm	3주						
기정	9	도봉동 5-33	수목	자두	5~10년/3.5m/5cm	3주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사과	5~10년/3.0m/5cm	4주						
				배	5~10년/4.0m/7cm	5주						
				대추	5~10년/4m/7cm	3주						
변경	9	도봉동 5-33	수목	자두	5~10년/3.5m/5cm	3주	강북구 수유동 176-67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송임규				
				사과	5~10년/3.0m/5cm	4주						
				배	5~10년/4.0m/7cm	5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9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가) 구역명칭 : 오류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오류시장정비구역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원	4,894	-

3.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가) 성 명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 김승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3길 8, 302호 (오류동, 대서프라자)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94	-	4,894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95	-	895	18.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999	-	3,999	81.7	

(2)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오류인터체인지 ~ 오류동	48,000 (468)	2,000 (39)	양측 12	서고 제164호 (1982.4.22)	

※ ()는 정비구역내 해당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1,192 (51)	오류동 81-17	개봉동 61-11 남측	일반 도로	-	서고 제3호 (1969.1.18)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272 (88)	오류동 37-9	오류동 14-45	일반 도로	-	서고 제3호 (1969.1.18)	
신설	소로	3	A	4	국지 도로	(21)	오류동 25-12	오류동 25-27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B	4	국지 도로	(40)	오류동 25-42	오류동 38-11	일반 도로	-	-	

※ ()는 정비구역내 해당 사항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B = 4m : L = 2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인접필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노선 신설
-	소로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B = 4m : L = 4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인접필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노선 신설

(2)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시 장	-	오류동 25-10번지 일대	4,750	감) 2,818	1,932	서고 제86호 (1976.4.20)	오류 시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1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대	3,22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획지2	구로구 오류동 38-30번지 일대	688	보류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물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배치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획지1	획지2	
용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판매시설	보류지	188세대
건물 면적	건축면적	2,253.00㎡	-
	연면적	36,871.55㎡	-
	매장면적	4,930.00㎡	-
건폐율	69.97%	50%이하	
용적률	758.71%	250%이하	
층수(높이)	65.8m(21층) 이하	-	
매장면적	4,930㎡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로 및 북측도로변 : 3m - 동측도로변 : 5m ●벽면한계선(저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로변 : 7m(2층이하) 	-	

나)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나. 조건사항

- 사업시행전 구역내 획지2부지에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마련할 것
- 구청장은 입점상인보호대책 수요조사시 미응답자에 대하여 입점상인보호대책 안내 및 재입점 가능여부 등을 확인후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것
- 부지내 설치하는 쌈지공원은 경인로 및 서측4미터 도로에서 상시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오류시장은 건축물이 대부분 40년 이상된 노후 시장 및 재난안전등급 D급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기능이 쇠퇴하여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임
- 이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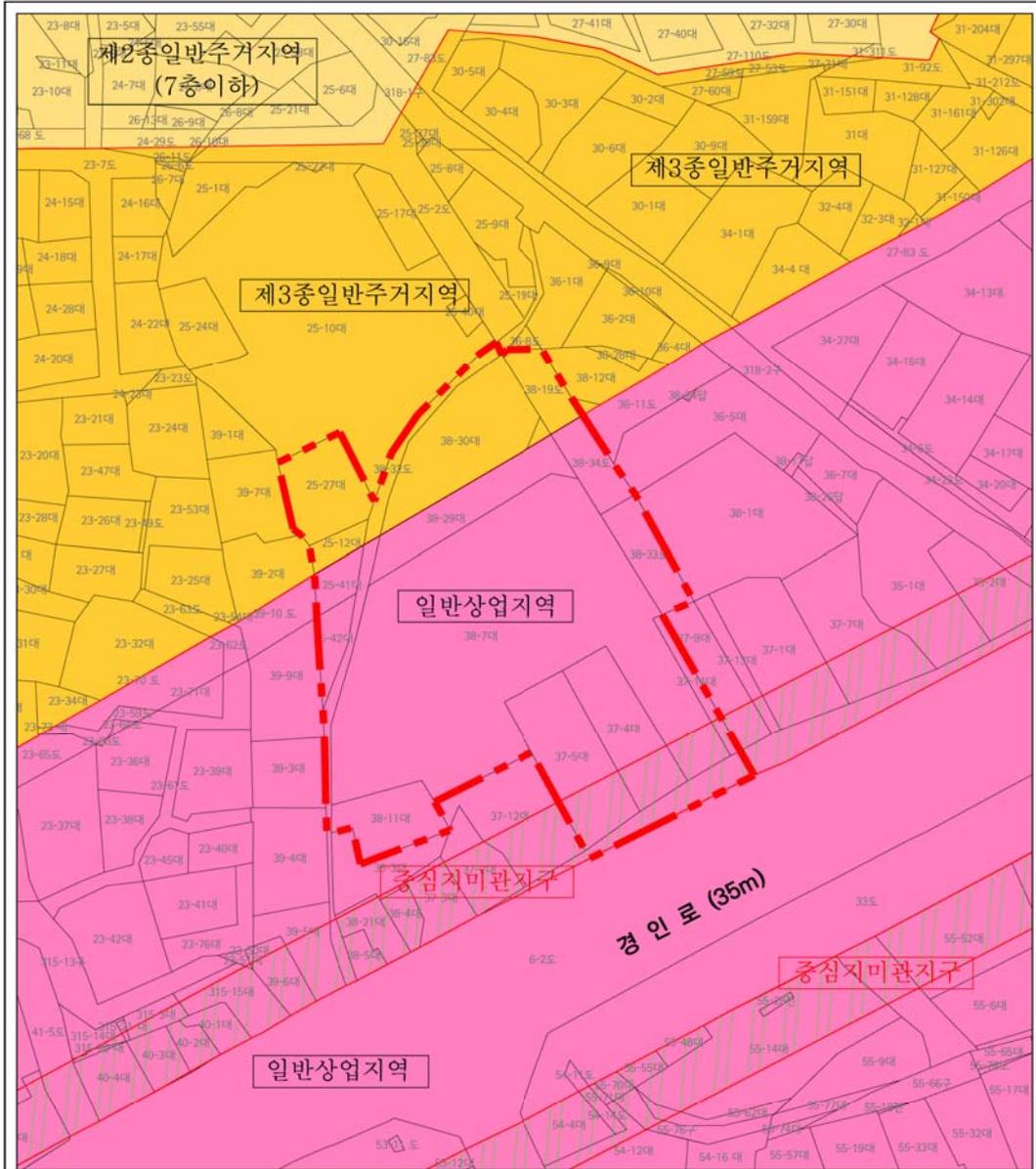
라. 관계서류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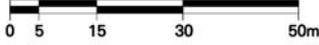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5)와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5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된 관계 도면(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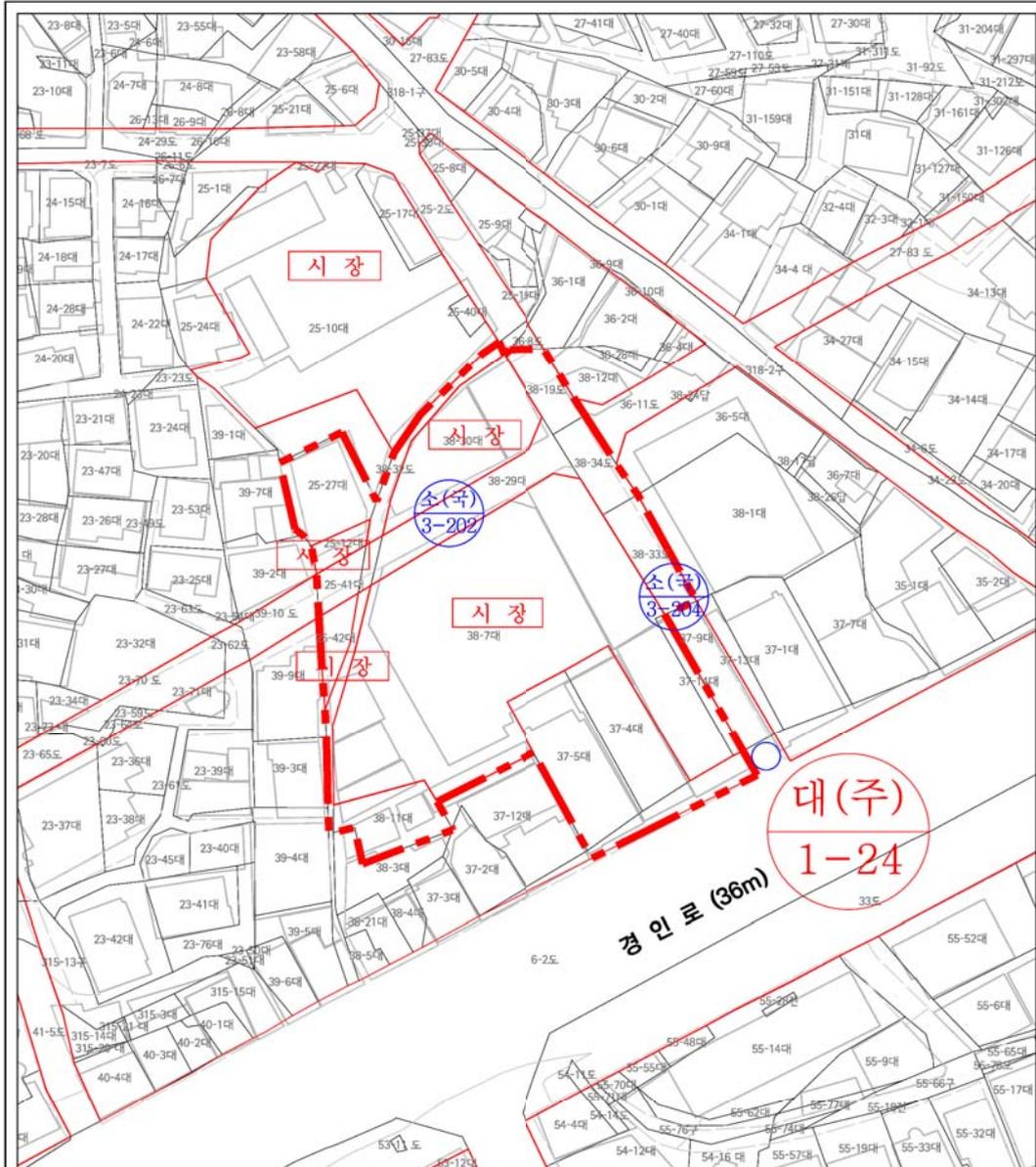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류시장정비사업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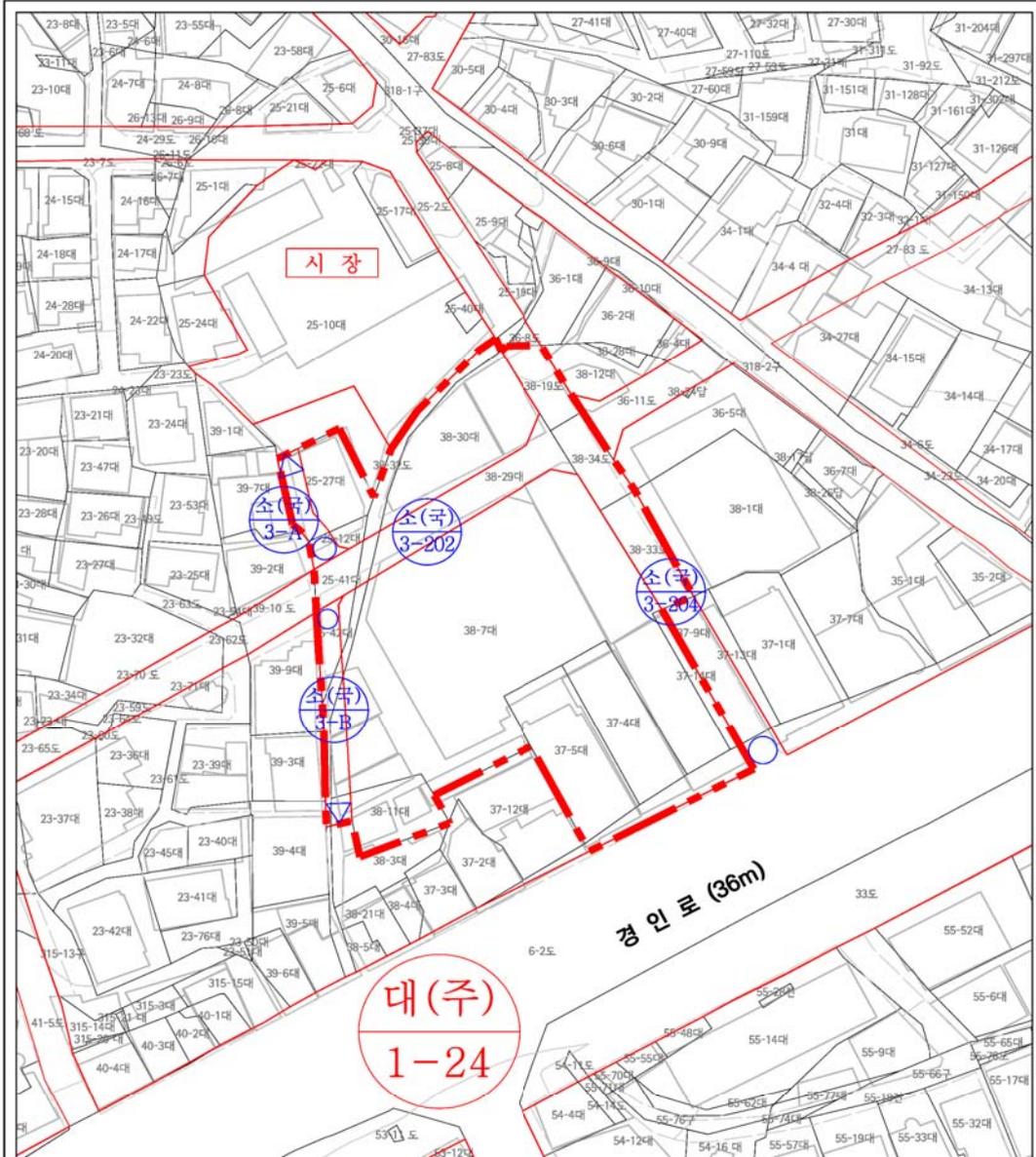
<p>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p> <p>- 오류동 38-7번지 일대 -</p> <p>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적선 	<p>N</p> 
		

[오류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p>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p> <p>- 오류동 38-7번지 일대 -</p> <p>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p>	<p>범례</p> <p>--- 시장정비구역</p> <p>○(대) 도로(대로이상)</p> <p>○(중) 도로(중로이하)</p> <p>□ 시장</p> <p>□ 지적선</p>	<p>N</p> <p>0 5 15 30 50m</p>

[오류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 오류동 38-7번지 일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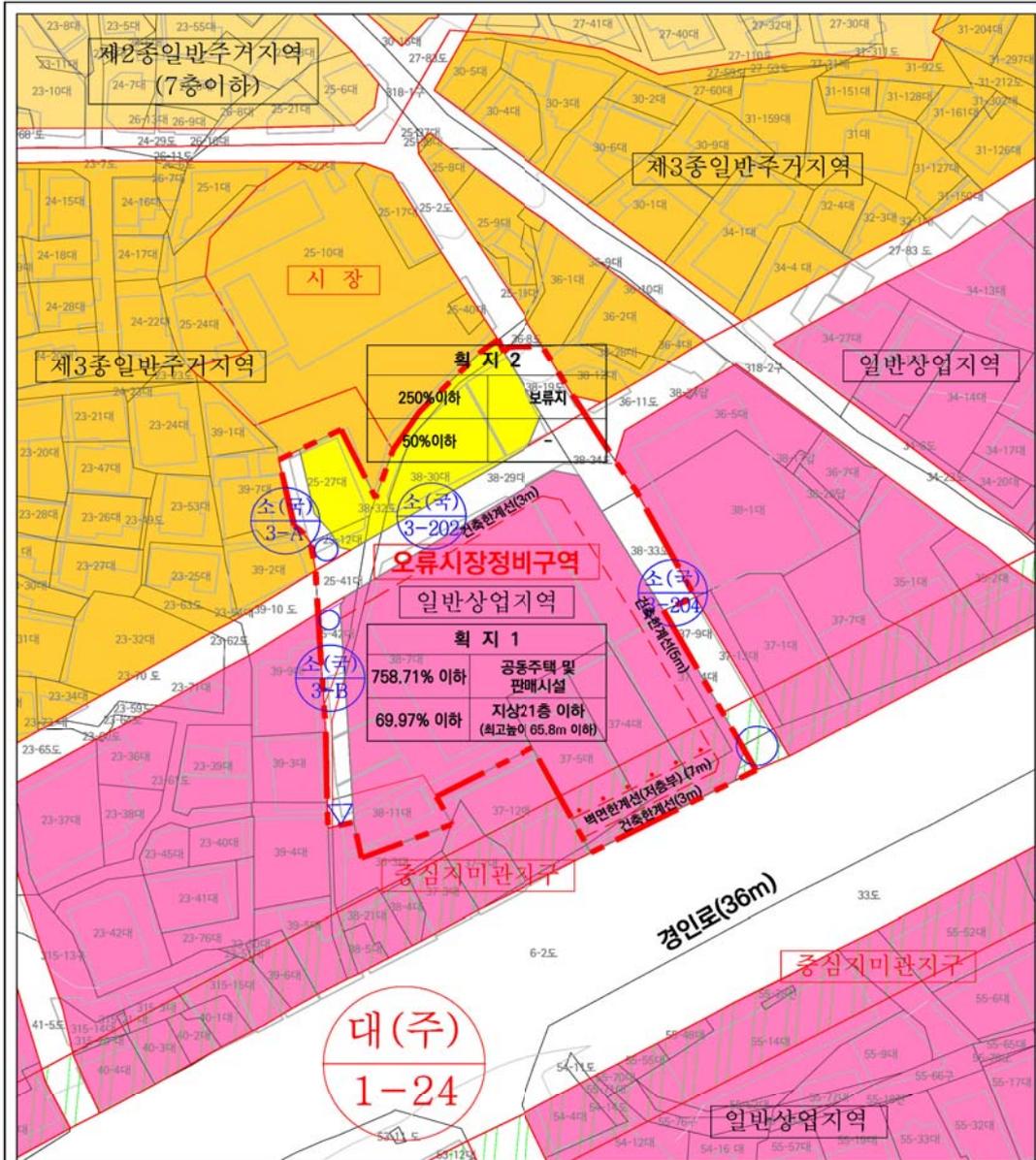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 례

- 시장정비구역
- 도로(대로이상)
- 도로(중로이하)
- 시장 시장
- 지적선 지적선



[오류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p>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p> <p>- 오류동 38-7번지 일대 -</p> <p>사업추진계획 결정도</p>	<p>범례</p>							
	<p>--- 시장정비구역</p> <p>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p> <p>제3종일반주거지역</p> <p>일반상업지역</p> <p>중심지미관지구</p> <p>획자선</p>	<p>도 로(대로이상)</p> <p>도 로(중로이하)</p> <p>시 장</p> <p>보류지</p> <p>지적선</p>	<p>--- 건축한계선</p> <p>--- 벽면한계선(저층부)</p> <table border="1"> <tr> <td>획지번호</td> <td></td> </tr> <tr> <td>용적률</td> <td>주용도</td> </tr> <tr> <td>건폐율</td> <td>층수(층이)</td> </tr> </table> <p>0 5 15 30 50m</p>	획지번호		용적률	주용도	건폐율
획지번호								
용적률	주용도							
건폐율	층수(층이)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95호

2017년도 제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7. 2. 9.(목) 14:00 ~ 16:3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4건 5작품 (조각 3점, 회화 2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2작품, 부결 3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중랑구 화랑대 e편한세상	조각	Flower Horse	○		
2	도봉구 투웨니퍼스트 1단지	조각	오색향연		○	건축물과의 부조화 안전성 결여
3	도봉구 투웨니퍼스트 2단지	조각	숲속의 노래	○		
4-1	강서구 홈앤쇼핑	회화	빛의정원101		○	- 재심사유 보충 불충분 공공미술의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작품으로 설치요망
4-2		회화	우주의 형상		○	공공미술의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작품으로 설치요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2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7개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3월 17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 취소)1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1363	(주)리콘글로벌	조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도화동541, 일신빌딩) 701, 702호	2016-02-11
2	2309	주식회사 비즈유니콘로지스	김00	은평구진흥로188,4층(녹번동)	2016-02-18
3	2438	(주)엠아이티익스프레스	심00	강서구 금남화로24가길 19 상일빌딩 2층 (방화동)	2016-03-12
4	3919	국제해운항공(주)	전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32-1 2층 (공항동 부영빌딩)	2016-01-16
5	3964	한솔종합물류(주)	하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105동 606호 (신공덕동, 마포펜트하우스)	2016-01-24
6	4130	(주)피앤엘해운항공	박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1104호-10호실(가산동, 엘리시아)	2016-03-25
7	4260	(주)한국화물운송	심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28 (삼성동) 3001호	2016-01-1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28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6*2, *0*호(신읍동)	일시 : 2016-12-02 03:58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39m 초과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0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111467	㈜디알씨넷 엄준우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1, 4층(북가좌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 상실)	영업정지3개월
2	202064	㈜이신 박성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14, 5층(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1개월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8의13

3. 청문실시

- 일시 : 2017. 3. 9.(목) 10:00 ~12:00
- 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 청문주재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방송통신주사 김선진

4. 공고기간 : 2017. 3. 9.

5.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 ☎(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37호

설계공모(지명초청)공고

용역명	남대문시장 교통섬 광장 조성 및 지하보도 활용방안 설계용역
용역개요 및 용역범위	○ 교통 섬 광 장 : 중구 남대문로4가 3-6 일대(면적 약 2,500㎡) ○ 남대문지하보도 : 송례문 오거리 하부 (연장 193m, 면적 887㎡) ※기존 도면(실측) 자료 요청시 제공 가능
예정공사비	1,980백만원(부가세 포함) - 발주처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용역예산	55,144 천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50,144천원, 설계보상비 5,000천원) -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설계경기 목적	남대문시장 교통섬 광장 조성 및 지하보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공모방식	지명초청공모(서울형 공공건축가 대상)
응모자격	1) 서울시에서 지명된 공공건축가로서 건축사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 방식)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2)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법령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외국건축사 등록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대표자로 지명현상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당선 시 공동수행약정서, 주계약자(국내 건축사)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동수입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응모신청	2017. 2. 21(화) ~ 22(수).09:00~18:00 / 장소 : 서울시청 11층 공공재생과

현장설명	2017. 2. 27(월) 10:00 / 장소 : 서울시청 11층 공공재생과 및 남대문시장 앞 ※ 현장설명 참석은 의무사항 아님
질의(답변)	질의 : 2017.2.28.(화) ~ 3.2(목) 18:00까지(이메일만 접수 marisan21@seoul.go.kr/제출후 유선 확인) 답변 : 2017.3.3.(금) (참가자 전원에게 이메일 통보)
등록서류	1) 현상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협정서 각 1부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한다.) 4)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외국 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획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작품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공개
공모안접수	○ 작품 제출 : 2017년 3월 31일(금) 09:00 ~ 18:00/장소: 시청 11층 공공재생과 (당선작 발표일 : 2017년 4월 5일(수) ※ 예정일이며 변경될 수 있음)
입상작품 및 보상	○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 우수작 및 가작 : 응모작품수에 따라 설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기 타	○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 : 나라장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입찰공고) 게시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지침서 참조 ○ 당선자는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공공재생과 ○ 전화 : (02) 2133-8648, 전송 : (02) 2133-0855

2017. 2. 2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오해용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86	일시: 2016-07-24 10:38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김원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2-19	일시: 2016-10-06 14:25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10.4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공병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35번길 16	일시: 2016-12-05 09:54 장소: 개화교 내용: 제한 축하중 1.2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김양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6	일시: 2016-12-06 04:45 장소: 행주대교 북단 내용: 제한 높이 0.48m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3. 31.
이흥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가길 14	일시: 2016-12-07 13:58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7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임흥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0길 8	일시: 2016-12-22 10:47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4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원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로106번길	일시: 2016-07-07 06:42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76t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영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가길	일시: 2016-10-11 18:21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태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대소길	일시: 2016-10-14 19:54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창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23번길	일시: 2016-10-20 15:58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기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9번길	일시: 2016-10-21 15:57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5. 납부기한: 2017. 3. 31.
-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 훈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1길 *-* (덕산면)	일시: 2016.12.29. 15:55 장소: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 레미안아파트앞 증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9톤(4.9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1.26. 납기일: 2017.03.31.
최지훈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 **호 (중산동)	일시: 2017.01.03. 15:30 장소: 서대문구 북아현동 신천로 굴레방다리사거리앞, 충정교32톤 내용: 총중량 36.45톤(4.45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적발횟수 2회) 처분일: 2017.01.26. 납기일: 2017.03.31.
박정석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9길 ***	일시: 2017.01.04. 10:47 장소: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사거리 은평지문교앞 내용: 축하중 11.4톤(1.4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1.26. 납기일: 2017.03.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양동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 (조리읍)	일시: 2016.10.24. 11:00 장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서측 증산교 32톤 내용: 총중량 36.9톤(4.9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11.28. 납기일: 2017.01.31.
강신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 *동 *층 ***호 (고강동, 거창빌라)	일시: 2016.11.02. 11:19 장소: 은평구 응암동 북가좌오거리앞 내용: 축하중 11.15톤(1.1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11.28. 납기일: 2017.01.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5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인해 동법 제83조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되었음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7.2.23.(목) ~ 2016.3.8 (수), 14일간

2.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쥬알에이건설 (김진남)	건축 공사업 01-3522	서울시 서초구 언남11길 7-29, 402호(준일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	영업정지5개월 (2017.2.27.~7.26.)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2	운현종합건설 (주)(김도형)	건축 공사업 01-348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길 35, 205호(서흥빌딩)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5개월 (2017.3.20.~8.19.)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3. 공고내용

- 1)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 위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되었음을 통지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정지 처분일자

① 알에이건설 : 2017.2.6.

② 운현종합건설 : 2017.2.13.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52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7.3.1~2018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일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7.3.1~2018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일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량	천원/㎡	598	415
난 지	천원/㎡	720	476
탄 천	천원/㎡	963	737
서 남	천원/㎡	681	45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54호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1. 특구의 명칭 : 양재 R&CD 특구
2. 특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4동 일대
3. 특구의 면적 : 약 3,780,000㎡ (※ 토지조서 작성 후 면적산출 계획)
4. 특구지정의 필요성
 - 가. 서울과 수도권, 대·중소 기업간, 기술과 사업의 연계 등 양재지구는 입지적으로 거점 (Hub) 역할의 최적 장소로서 양재·우면·개포 지역의 지리적·공간적 잠재력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관리 필요
 - 나. 양재지구는 4개의 특성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집적지, R&D 연계 핵심지, 대규모 저이용 가용지 등 지역적 잠재력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화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 양재지구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장점과 효과 등 순기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원 및 사업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잠재적 자원들의 상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라. 규제특례 및 특화사업을 통한 연구공간 확보 및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R&CD 혁신거점으로서의 활성화 도모
5. 특화사업 내용
 - 가. R&CD 특화공원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시민의 숲 R&CD 특화 공원조성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거리 예술존 운영
 - 나. 중소기업 R&CD 역량강화 및 인프라 조성 사업
 -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특화가로 조성
 -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 양재 R&C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 다. 대기업 R&CD 역량강화 및 혁신허브 조성 사업
 - R&CD 기업 혁신허브 조성
 - LG전자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사업
 - kt GIGAtopia 전략거점 조성
- 라. R&CD 연구공간 확보 및 R&CD 캠퍼스 조성 사업
 -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 양재 R&CD캠퍼스 조성
 -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 마. 지속적 혁신역량 제고
 - 양재포럼 운영
 - 양재R&CD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
 -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6. 특화사업자
 - 가.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가능
-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추천서 발급절차 간소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 나.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필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및 거리에술존 운영)
 - 다.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구이미지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 라.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 마.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 바.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시공원점용(특화사업 중 양재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거리에술존 운영, R&CD연계 시민의 숲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특화사업 중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 8. 재원조달방법
 - 가. 총사업비 : 475,269백만원
 - 나. 조달방법 : 시비 33,794백만원, 구비 43,975백만원, 민자 397,500백만원
- 9.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가. 단기 대응방안
 - Y밸리를 통한 양재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론화
 - 자율적 주민협정기반의 상생협약 & MOU 체결 유도
 - 양재 R&D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포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조례 제정·시행
 - 나. 중장기 대응방안
 - 특화거리 지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범지구 운영
 - 공공의 주도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시설(앵커시설)의 지속적 확보·보급
 -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중소기업 R&D지원 시설 활용
 - 다.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10.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6.(21일)
- 11. 특구계획(안) 열람, 의견제출 및 특화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02-2133-5213)
 - 서 초 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 강 남 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
 -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장소
 -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서초구 또는 강남구)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3. 2. ~ 2017. 3. 16.(15일)
- 12. 공청회 개최 공고
 -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양재 R&CD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기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7. 3. 16.(목) 15:00 ~ 17:00
 - 다. 공청회 개최장소 : 양재2동 주민센터 4층 강당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 (양재동) (☎ 02-2155-7902)
 - 라.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
 - ※ 기타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57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 [물리적 요건]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 ①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지역
- ②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 최근 30년간 인구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인구 감소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지역
- ③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시 5%이상 감소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총사업체 감소 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개 범위 이내의 10만㎡ 미만인 곳
[물리적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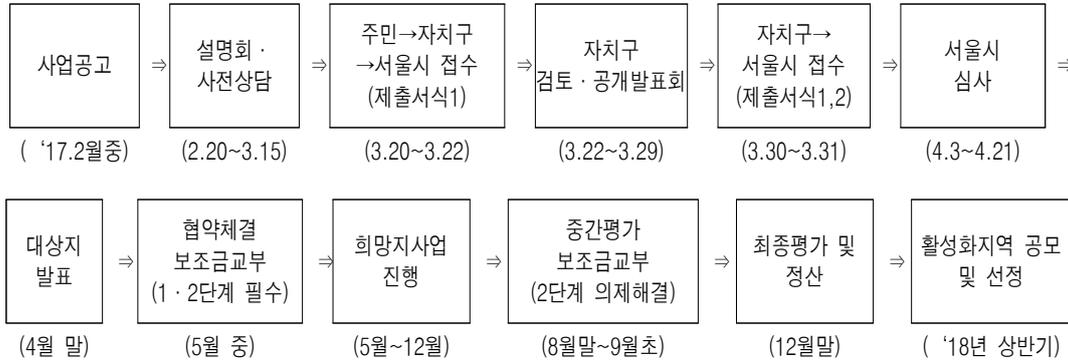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4. 사업추진절차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3. 22.(수),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하드 (<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직인없이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2017. 3. 21(화) 18:00 까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1583 또는 02-2133-7183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일괄 접수 (2017. 3. 22(수) 18:00 까지)
 -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30.(목) ~ 3. 31.(금),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사본15부
 - 제출서식2)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자치구) 사본15부(한글파일, PDF파일)
 -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공개발표회(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디스크 (<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제출서식1)은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제출한 원본내용과 동일해야 함. 내용변경시 감점요인
 - ※ 제출서식1)과 제출서식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참고)
 -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2017. 3. 31(금) 18:00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83)
 -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 선정발표 : 2017. 4월말 (예정)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지원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사업실행계획서(제출서식 3), 이행보증보험, 보조금통장사본 등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지원단체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월별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제출서식 12) 서울시(센터)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제출, 주민모

- 임 회의록(제출서식 13) 매월 말일 제출
 - 사업중간평가 시 중간보고서(제출서식 4) '17.8.31(예정)까지 제출
 - ※ 중간평가에 따라 1·2단계 필수사업 예산규모 및 내용 조정 가능
 -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제출서식 5) 및 정산보고서(제출서식 9) '17.12.22(예정)까지 제출
8. 사전 상담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전 상담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이 직접 현장설명회 및 찾아가는 사전 상담 진행
 - ※ 상담신청은 '17. 3.10일까지이며 방문 및 내방 상담은 3.15일까지 가능
 - 사전 상담 신청은 사전 상담 신청서(제출서식 11)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으로 송부
 - ※ 이메일 : hjshin10@seoul.go.kr 전화) 2133-1587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및 지원단체 실무자, 상근/비상근 활동가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주민모임 교육 : '17. 4. 29.(토) 10:00~14:00
 - 자치구 및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 '17. 4. 24.(월) 14:00~17:00
 - 지원단체 및 활동가 교육 : '17. 4. 25.(화)~28.(금), 10:00~18:00
 - 전체 워크숍 : '17. 4.29.(토) 14:00~18:00
 -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2133-7183)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2133-1583, 1587)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제출서식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희망지사업 예산편성 기준

1. 희망지사업 예산집행 근거

○ 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희망지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2.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사업실행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단체(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조금 분할교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월별 분할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한다.

○ 사업종료일

-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협약서 사업기간 표기),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업종료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변경, 활동가 변경, 각 사업별 예산비목의 5%를 초과하는 예산변경시에는 문서(공문)를 통해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사업별 예산비목의 5% 미만 변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단체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이자잔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지원단체)가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활동비(상근·반상근 활동가 활동비, 전문가인건비, 단순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강사비, 회의 및 자문비 등) 지급방법
 - 활동비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

3. 희망지사업(1·2단계 필수사업) 사업별 집행한도액

구 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비 고
상근/반상근 활동가 활동수당	3,800만원 이내	2,600만원 이내	상근 1인 이상 필수
내부전문가(지원단체) 인건비	800만원 이내	600만원 이내	
주민사랑방 등 모임공간 임대 및 운영 (시설공사비, 공간임대비, 비품임차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1,700만원 이내	1,500만원 이내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소모성물품구입비, 식비, 다과비 등)	300만원 이내 ※월40만원 범위	200만원 이내 ※월25만원 범위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사업실행비)	1,0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홍보인쇄비, 외부전문가 인건비, 감사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3,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계	1억원 이내	7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4. 희망지사업 비목별 사업비 편성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이행보증 보험료, 정산보고서 제작비용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격려금 등)
- 사업과 무관한 주민모임, 지원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등)
- 사업자로 선정된 주민모임 구성원, 지원단체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보조금통장 계좌이체 수수료는 지출 가능

○ 희망지사업 사업비목

비목	편성항목
활동비	(1) 상근활동가 활동비 (2) 전문가 인건비 (3) 단순 활동비
사업운영비	(1) 회의참석 및 자문비 (인건비성 경비) (2) 강사비 (인건비성 경비) (3) 원고비 (인건비성 경비) (4)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5) 현장거점 공과금 (6)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7) (단기) 임차료 (8) 식비 (9) 다과비 (10) (소모성) 물품구입비 (11) 조사답례물품제작비 (12) 숙박비 (13) 홍보인쇄비 (14)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15) 기타
시설비	(1) 시설공사비 (2) 물품취득비

- ※ 사업비 비목,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센터)와 협의
- ※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참가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편성.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지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선정 이후 비목-편성항목을 확정하여 사업계획서상 예산계획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수정

○ 비목별 사업비 편성 세부기준

<활동비>

- 상근활동가 활동비

- 활동거점에 상근(반상근)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 활동 경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학술용역 인건비>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상근활동가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가 인건비
 - 사업추진을 위해 내부/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 등)를 편성할 수 있다.
 - 지원단체 직원의 경우 상근활동가 활동비를 받지 않는 전문가에 대해서만 전문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가 인건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단순 활동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 희망지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주민모임, 지원단체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상근활동가의 경우 단순 활동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운영비>

- 회의참석 및 자문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 사업관련 회의, 자문시 외부/내부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주민모임, 지원단체, 상근활동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지원단체 소속 활동가를 제외한 지원단체 담당자의 경우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사비에 한해 회의참석 및 자문비로 편성 가능)

- 강사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비지급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지급 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특별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기본1시간) 300,000(초과시간)
특별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기본1시간) 200,000(초과시간)
일반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기본1시간) 120,000(초과시간)
일반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기본1시간) 100,000(초과시간)
일반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기본1시간) 50,000(초과시간)

- 원고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주민모임, 지원단체, 활동가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장거점 공간의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신규 현장거점 임차가 어려울 경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다.

- 현장거점 공과금
 - 현장거점의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등 공과금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공과금 편성이 가능하다.

-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 현장거점의 사무용품, 냉난방 장비 등 현장 활동거점의 비품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천막 등), 차량(답사)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
 -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식비 지출 불가하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편성한다.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식대로 편성한다.

- 다과비
 -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다과비용으로 편성한다.
 - 다과비는 1인 당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경우 1인당 1천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사업의 참여 인원 등을 계획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지원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 조사답례물품제작비
 - 지역조사 및 인터뷰 답례물품 구입 및 제작비용으로 편성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답례물품 제공은 불가하며, 사업실행계획서의 설문조사, 인터뷰 대상과 답례물품 제공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
-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주민모임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 홍보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임을 명시)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센터와 협의후에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하는(별도 보조금통장 개설) 비용으로 편성한다.
-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 입장료 등을 편성한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시설비 편성이 가능하다.
 - 시설공사비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 물품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서

울시(센터) 사전 승인을 통해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활 동 비	상근(반상근)활동 가활동비	활동거점에 상근(반상근)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 활동 경비	1인 상한액 월 250만원(상근기 준) *업무내용, 시간 등 감안하 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준용하여 지급	활동기록부(서명)-첨부1,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전문가인건비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 (사업기 획 및 운영, 보조금시스템 운 영관리 등)	*업무내용, 시간 등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준용 하여 지급	
	단순 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미 만, 월 60시간 미만 지급가능	
사 료 비 연 비	회의참석 및 자문비	사업관련 회의, 자문시 외부 전문가 초빙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초과시 15만원	회의참석확인서(서명)-첨부3, 회의록-첨부4,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사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비지급기 준 참고	강의확인서(서명)-첨부5,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강의증빙자료(교안),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 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신규원고만 인정(강의자료는 강사비에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작성 확 인서(서명)-첨부6, 이력서, 원 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현장거점 공간(사랑방) 임차료	월 100만원 이내 ※협약체결시 승인한 경우 증감 가능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방문자 방명록-첨부11
	현장거점 공과금	활동거점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공과금	실비정산	공과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단기) 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회의실 등 임차료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 구성원 개인소유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불가)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차량, 회의실 임차의 경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식비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선진 사례답사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설명회 등 운영시 집행 불가)	1인 : 7천원 이내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 체크카드영수증
	다과비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선진 사례답사에 필요한 활동 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1인 : 3천원 이내 (실비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설명회 등 운영시 음료만 제공가능하며 1인 1천원 이내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 체크카드영수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	실비 정산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단일 품목 30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견적서)
	조사 답례물품 제작비	지역조사 및 인터뷰 답례물품 구입 및 제작비용	개당 3천원 이내 (실비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은품 제공 불가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숙박비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및	1인 1실 4만원 이내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추진주체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숙박비용		자명단(서명)-첨부10,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홍보 인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구입비용 ※홍보물에 서울시 후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사업] 임을 명시	실비 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홍보결과물도안, 홍보물 설치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 5부 별도제출)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신규사업의 운영비	사업별 100만원 이내	주민제안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준용), 보조금통장 사본	
	기타	보험료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참여자 여행보험가입 비용	실비정산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입장료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지역 명소 등 입장비용	실비정산	참석자명단(서명)-첨부10, 체크카드영수증
시설비	시설공사비	주민 활동공간(사랑방) 조성 공사비	최대 500만원 이내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공사설계도안, 공사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물품에 한함(도서, 집수리 공구 등)	실비정산 ※서울시에서 사전승인한 항목만 해당함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물품관리대장-첨부9,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공통]

1.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합니다. 내용 작성 시 글자의 크기는 본문의 크기는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 표 안의 내용은 10포인트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1] 희망지사업 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붙임 1]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주민모임/지원단체)

1. 주민모임과 지원단체(활동가 포함)가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모임과 지원단체(활동가 포함)의 역할분담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모임이 작성하는 페이지
- 지원단체(활동가 포함)가 작성하는 페이지
- ■ 주민모임/지원단체(활동가 포함) 함께 작성하는 페이지

- ※ ●■ 표시는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 주민모임이 작성하는 페이지(●)의 경우 주민모임이 자필로 작성하고, 지원단체가 한글파일 문서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업내용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파란색 사선의 예시내용(예시내용)은 삭제하고 각 사업의 계획내용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3. 사업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빨간색 내용(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로 작성 분량 등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붙임 2] 주민모임 소개서

1. 주민모임 준비단계, 주민모임 구성완료 등 주민모임 조직화 정도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계인 경우 주민모임명, 임원진 구성이 안 된 경우를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모임 명단은 서명을 제외한 내용은 한글파일에서 워드로 작성해도 되며,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지원단체 소개서 [붙임 4] 활동가 활동계획서

1. 희망지사업 참가자 명단 및 활동계획서는 현장거점(마을사랑방)에서 활동하는 상근/반상근 활동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2] 희망지사업 신청서(자치구)

1. 자치구에 접수된 희망지사업 신청서(주민모임/지원단체)를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요약 작성합니다.

[붙임 1] 희망지사업 사업검토의견서(자치구)

1. 사업유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별로 작성하며 신청서별로 각각 주의사항(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유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이 접수된 경우 공개발표회 등을 거쳐 평가결과를 요약하고 사업별 종합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희망지사업 사업검토의견서(OO동)

1. 자치구에 접수된 희망지사업 신청서(주민모임/지원단체)를 검토 후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지역 행정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보내 사업검토의견서를 받습니다.

2. 사업유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별로 작성하며 신청서별로 각각 주의사항(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희망지사업 사업지원계획서(자치구)

1. 사업유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별로 자치구 관련부서의 지원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내용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파란색 사선의 예시내용(예시내용)은 삭제하고 각 사업의 계획내용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붙임 4] 희망지사업 현장검토의견서(자치구)

1. 사업유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별로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검토의견을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지 범위검토서(자치구)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유형으로 접수된 사업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구감소, 2)산업이탈 항목은 행정동 단위로 작성하고, 3)건축물노후화는 사업대상지를 범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3] 희망지사업 사업실행계획서(1·2단계 필수사업)

1. 희망지사업에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희망지사업 신청서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되 사업비 금액 등 변경된 내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주민모임과 지원단체(활동가 포함)가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모임과 지원단체(활동가 포함)의 역할분담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모임이 작성하는 페이지
- 지원단체(활동가 포함)가 작성하는 페이지
- ■ 주민모임/지원단체(활동가 포함) 함께 작성하는 페이지

- ※ ●■ 표시는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 주민모임이 작성하는 페이지(●)의 경우 주민모임이 자필로 작성하고, 지원단체가 한글파일 문서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월별 사업비 지출(교부신청) 계획은 월별 사업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며 8개월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월별 지출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모임 소개서 [붙임 2] 지원단체 소개서
[붙임 4] 활동가 활동계획서

1. 사업신청서 제출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제출합니다.

[붙임 3] 활동가 이력서

1. 사업계획상 활동가(상근, 반상근)로 근무하는 활동가 모두 작성합니다.

[제출서식 4] 희망지사업 사업중간보고서(1·2단계 필수사업)

1. 희망지사업 중간평가시(2017년 8월말 예정)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희망지사업 진행하면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록하며 각 세부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변경내역의 경우 희망지사업 협약체결 시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과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을 통한 기대사항 달성 정도는 협약체결 시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변화한 요인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계 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2017~2018년 사업에 대한 의향 여부 등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비 정산결과는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한 정산보고서를 요약하여 사업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모임 소개서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시 주민모임 소개서와 비교하여 희망지사업 기간 중에 변화한 주민모임의 특징 및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활동결과보고서 [붙임 3] 회의록

1. 사업추진과정에서 활동의 주요내용과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 주민역량강화활동 중간보고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제출서식 5] 희망지사업 사업결과보고서(1·2단계 필수사업)

1. 희망지사업 최종평가시(2017년 12월말 예정)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희망지사업 진행하면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록하며 각 세부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변경내역의 경우 희망지사업 협약체결 시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중간보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과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활동을 통한 기대사항 달성 정도는 협약체결 시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변화한 요인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연계 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2018년 사업에 대한 의향 여부 등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사업비 정산결과는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한 정산보고서를 요약하여 사업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모임 소개서

-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시 주민모임 소개서와 비교하여 희망지사업 기간 중에 변화한 주민모임의 특징 및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활동결과보고서 [붙임 3] 회의록

- 1. 사업추진과정에서 활동의 주요내용과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 주민역량강화활동 최종보고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공모지침 다운로드》

- 인터넷 주소 : <http://webdisk.eseoul.go.kr>
- 게스트ID : rsw522 / PW : aenok95

《문의 및 상담》

- 공모신청 문의 : 서울시 주거재생과(☎2133-7183),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2133-1583)
- 사전상담 문의
 - ※ 사전 상담 신청은 별첨 사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으로 송부
 - ※ 이메일 : hjshin10@seoul.go.kr (☎2133-1587)
 - ※ 상담신청은 '17. 3.10일까지이며 방문 및 내방 상담은 3.15일까지 가능합니다.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17-1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노원구고시 제2016-124호(2017. 1. 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7-22호(2017. 1. 12)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된 노원구 상계동 1011-20 외 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20, 1011-25
-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567㎡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주차장 약 26면(일반형 및 경형주차면)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토 지 조 서

■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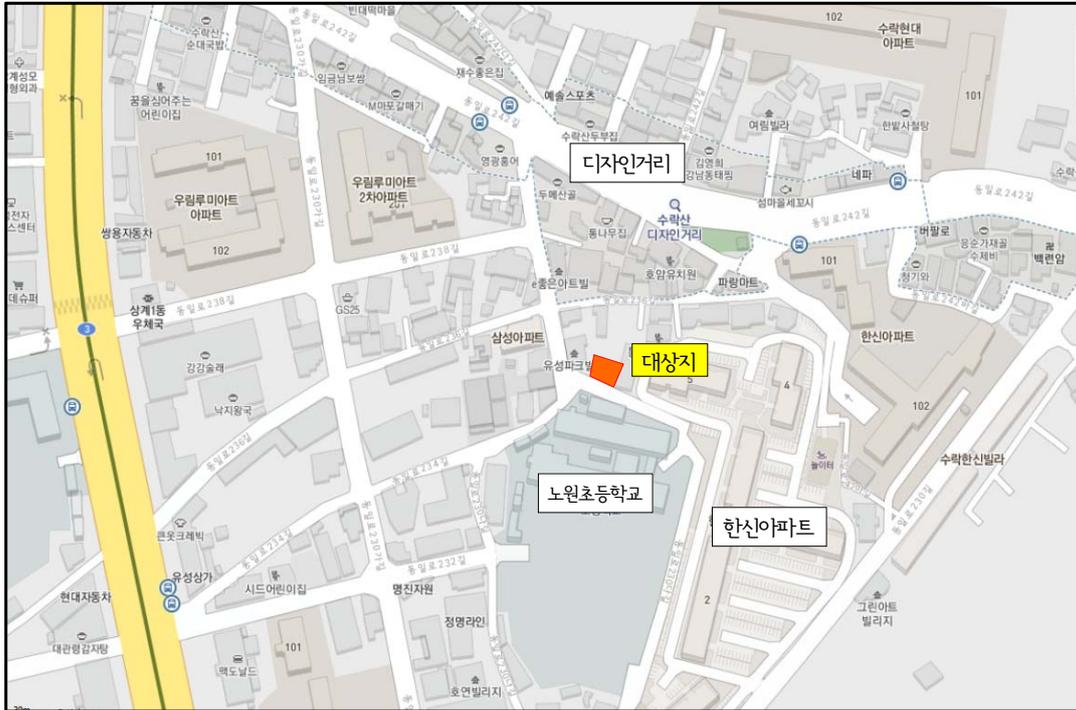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011-20	대	124	김진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5***동 13**호 (이의동, 자연&힐스테이트아파트)	-	-	-	
				김진순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30길 88 *동 3**호(상계동, 수락한신빌라)	-	-	-	지분 443분의 283.5
2	상계동 1011-25	대	443	김진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5***동 13**호 (이의동, 자연&힐스테이트아파트)	-	-	-	지분 443분의 159.5
				계					

물 건 조 서

■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부속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011-25	세멘 벽돌조 철골지붕	단층	195.84	김명천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80 1**동 5**호 (상계동, 수락한신아파트)	-	-	-	
계					195.84		-	-	-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마포구고시 제2017-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건설부 고시 제229호(1983.07.06.)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91호(2016.12.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마포구 신수동 1-1 일대 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서강대학교 경제관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 면적(시설결정 면적) : 158,88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금회 변경)

- 성 명
 - 기 정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대표 김정택
 - 변 경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대표 박문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금회 변경)

- 기 정 : 2015. 11. 26 ~ 2017. 02. 28
- 변 경 : 2015. 11. 26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 지 조 서 : 변경없음 >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신수동 1-1	학	63,935	63,55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	신수동 1-4	도	249	249	서울특별시					
3	신수동 81-162	도	58	58	국 (기획재정부)					
4	신수동 81-163	도	3	3	국 (기획재정부)	신수동 1번지				
5	신수동 81-28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6	신수동 81-29	학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7	신수동 81-52	도	60	6	국 (기획재정부)	신수동 1번지				
8	신수동 81-60	도	7	5	국 (국토해양부)					
9	신수동 81-80	도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0	신수동 82-39	도	22	22	서울특별시					
11	신수동 82-11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2	신수동 82-13	전	23	2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3	신수동 82-15	대	106	1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4	신수동 82-18	도	306	306	서울특별시					
15	신수동 82-22	도	57	57	서울특별시					
16	신수동 82-23	대	79	7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7	신수동 82-24	대	76	7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8	신수동 82-28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19	신수동 82-42	도	20	20	서울특별시					
20	신수동 82-31	도	131	131	서울특별시					
이하 계속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1	신수동 83-3	도	37	37	서울특별시					
22	신수동 산1-1	임	17,554	33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3	대흥동 22-60	학	64,989	64,77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4	대흥동 22-178	임	1,917	1,9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5	대흥동 40-3	잡	400	388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6	대흥동 40-5	임	526	5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7	대흥동 40-6	임	366	30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8	대흥동 42-2	대	69	6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29	대흥동 43-6	잡	2,255	2,255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0	대흥동 43-7	잡	1,071	1,07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1	대흥동 43-30	대	17	17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2	대흥동 43-32	대	36	3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3	대흥동 64-1	대	110	11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4	대흥동 65-2	대	73	7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5	대흥동 65-3	대	216	21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6	대흥동 69-2	대	131	13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7	대흥동 69-5	임	389	389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8	대흥동 72	대	26	26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39	대흥동 90-29	도	62	62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40	대흥동 산1-30	임	37,590	21,290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신수동 1번지				
합계			193,125	158,883						

◆ 구로구고시 제2017-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3.1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58호(2016.4.21)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7-169호(2017.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512~685-20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1) 전 체 : 도로개설 폭10m, 연장85m
- 2) 금 회 : 도로개설 면적1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분할예정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구로동 685-452	대	188	4.5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변경	“	“	188	110.5	“	“				
2	당초	“	“	188	0.5	박원희	구로구 구로동 685-500				
	변경	“	“	188	10.5	박진흙	“				

◆ 구로구고시 제2017-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5-62호(2015.4.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되어, 구로구공고 제2017-175호(2017.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변경 및 토지조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27-3 ~ 427-16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10m, 연장4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성 명 ㄱ(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ㄴ(변경) : (주)유당
 - 주 소 ㄱ(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ㄴ(변경)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258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주)유당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 용	비고 (분할예정 지번)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신도림동 427-16	대	93	70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5
	변경	신도림동 427-55	대	70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스 타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뫼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16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 용	비고 (분할예정 지번)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당초	신도림동 427-17	대	28	28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변경	"	"	"	"	"	"	-	-	-	
3	당초	신도림동 427-11	대	112	66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4
	변경	신도림동 427-54	"	66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스 타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뫼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11
4	당초	신도림동 427-10	대	62	62	정인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9-50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구로지점)	근저당	
	변경	"	"	"	"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	-	-	
5	당초	신도림동 427-36	도	59	59	국 (기획재정부)					
	변경	"	"	"	"	"					
6	당초	신도림동 427-3	대	141	109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2
	변경	신도림동 427-52	"	109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스 타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뫼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3
7	당초	신도림동 427-2	대	96	6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0
	변경	신도림동 427-50	"	6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스 타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뫼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2
8	당초	신도림동 427-34	도	7	1	국 (기획재정부)					신도림동 427-56
	변경	신도림동 427-56	"	1	"	"					신도림동 427-34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주)유당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도림 동 427-10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58	근린생활 시설	정인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9-505				
			"	"	"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54	근린생활 시설						
			"	"	"						
		건물 (2층)	연와조	54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	"	"						
	건물 (3층)	연와조	54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	건물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13	주택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	"	"						
		옥탑 샷시	판넬	15							
"			"	"							
지층 환기구		철근콘크리트조	1	환기구							
		"	"	"							

◆ 구로구고시 제2017-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성공회대학교)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84호(1983.12.2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1호(2015.06.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우리구 향동 1-1 도시계획시설(학교: 성공회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향동 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2) 명 칭
 - 지정 : 성공회대학교 교사 증축공사
 - 변경 : 성공회대학교 교사(행복기숙사) 증축공사

다. 사업의 내용

- 1) 사업면적 <변경없음>
 - 30,778㎡
- 2) 건축물의 규모

구역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관리구역	24,497	40 이하	142 이하	해발고도 45~71m 이하
외부활동구역	3,907	-	-	-
녹지보존구역	2,374	-	-	-
합 계	30,778			

3)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성공회대학교	7,290.25	증)793.66	8,083.91	36,434.51	증)6,021.84	42,456.35	

4) 건축물의 조서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새천년관	2,365.93	2,365.93	13,478.79	13,478.79	9,071.01	9,071.01	지하2층 지상7층	지하2층 지상7층	
2	학교	1,023.19	1,023.19	2,061.67	2,061.67	1,818.69	1,818.69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3	월당관	281.25	281.25	1,406.25	1,406.25	1,125.00	1,125.00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	학생회관	349.00	349.00	1,364.13	1,364.13	1,364.13	1,364.13	지상5층	지상5층	
5	승연관	546.56	546.56	2,732.53	2,732.53	2,186.24	2,186.24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6	이천환기념관	800.63	711.58	4,419.77	4,257.79	3,255.20	3,200.50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건축허가변 경사항반영
7	신학관	633.74	726.04	4,741.41	4,724.28	3,442.43	3,393.34	지하2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6층	건축허가변 경사항반영
8	성베드로학교 사	918.79	918.79	5,402.82	5,402.82	4,859.23	4,859.23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9	민주사회 교육원	238.93	-	608.96	-	608.96	-	지상3층	-	금회 멸실
10	구두인관	132.23	132.23	218.18	218.18	218.18	218.18	지상2층	지상2층	
11	행복기숙사	-	1,029.34	-	6,809.91	-	5,799.72	-	지하1층 지상10층	금회 신축
합 계		7,290.25	8,083.91	36,434.51	42,456.35	27,949.07	33,036.04			
증·감		증) 793.66		증) 6,021.84		증) 5,086.9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기 정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이사장 최기준
- 변 경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이사장 김근상

1) 주 소

- 기 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1-1
- 변 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향동 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결정면적(㎡)	토지소유자
1	구로구 향동	1-1	학교용지	30,778	30,778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17-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154호('17.02.02)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1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변경사유(내용) : 물건추가

아.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에 관계서류 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없음)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도림동 187-17	당초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경 없음				
2	도림동 187-108	당초	대	3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변경					변경 없음				
3	도림동 187-109	당초	대	46	46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19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변경	대	46	4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	도림동 187-110	당초	대	2	2	나문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6-25				
		변경	대	2	2	성명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1-10				
5	도림동 187-107	당초	대	47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6	도림동 187-66	당초	대	43	43	조창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변경	대	43	4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7	도림동 200-29	당초	대	60	60	정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2차 201-1202				
		변경	대	60	6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8	도림동 200-30	당초	대	19	19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5-8	압류	국 (기획재정부)		
		변경	대	19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9	도림동 200-34	당초	대	87	87	김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변경						변경 없음			
10	도림동 200-36	물건추가	대	91	91	이선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6 탑마을 114-503				
						이승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60 105동 204호				
						이석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507-906				
						이성호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8동 1602호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성명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증류및내용			비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도림동 187-19	당초	주택 (1층)	무조	55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변경	당초	1식
		변경	보일러실	2식	1식										
						당초	주택 (1층)	무조	72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변경	대문	1식											
당초	주택 (1층)				무조									72	영등포구
		변경	대문	1식											
						당초	주택 (1층)	무조	85	박동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1203동 1902호(논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무허가		
변경	변경 없음														
			당초	주택 (1층)	무조									13	황미남
변경	변경 없음														
						당초	주택 (1층)	무조							
변경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의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5	도림동 200-13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김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5				
		변경				변경 없음					
6	도림동 200-14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 (방배동, 삼환나따르빌)				
		변경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7	도림동 200-15	당초	주택 (1층)	목조	62	서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7 쌍용아파트 112-2301				
		변경	주택 (1층)	목조	6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8	도림동 200-16	당초	주택 (1층)	목조	19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번경	상고	1식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화장실	1식		
9	도림동 200-18	물건추가	주택 (1층)	목조	39	이호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19, 206동 1003호(백석동, 백송마을)	세입자	진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8 101호	무허가											
								세입자	조항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8 102호												
								세입자	김영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8 103호												
10	도림동 200-20	물건추가	주택 (1층)	목조	59	김진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2-204	세입자	김종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무허가											
								세입자	장선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세입자	이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세입자	최병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주택 (1층)	세멘조	23	이상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시당우성아파트 205-305	세입자	최병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무허가											
								대문														

■ 위 치 도



◆ 강남구고시 제2017-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4호(2009.7.2.)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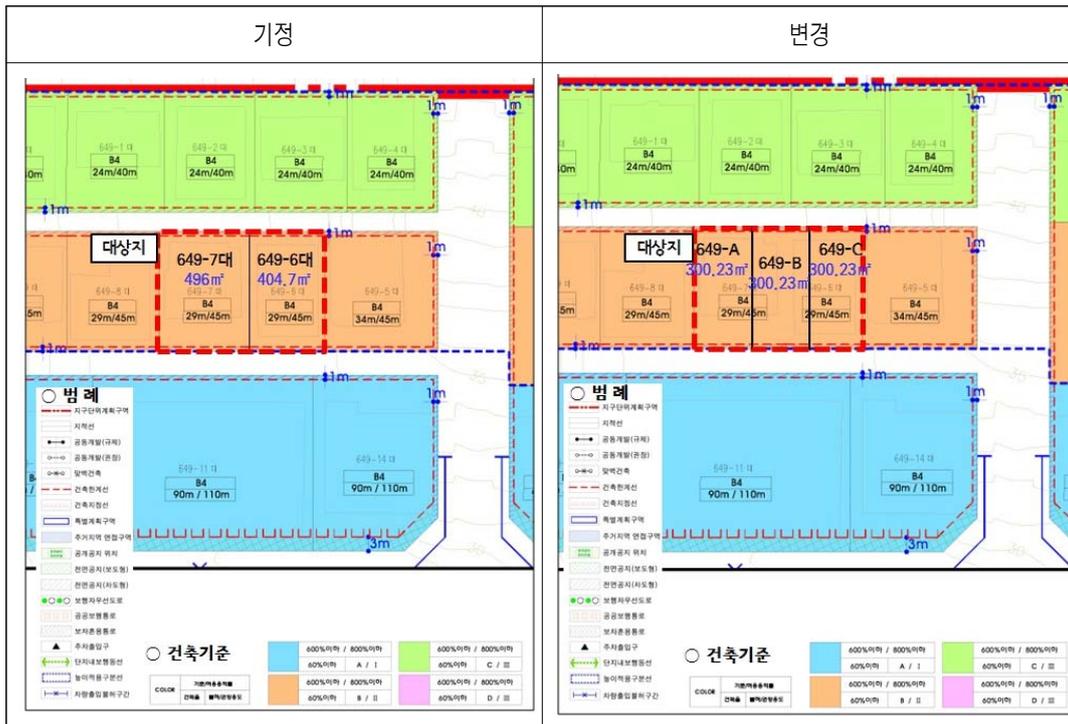
가구			공동개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기정	B4-7	900.7	기정	역삼동 649-6대	404.7	404.7	•단독개발
				역삼동 649-7대	496	496	•단독개발

가구			공동개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변경	B4-7	900.7	변경	역삼동 649-A대	300.23	300.23	•단독개발
				역삼동 649-A대	300.23	300.23	•단독개발
				역삼동 649-A대	300.23	300.23	•단독개발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7-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북악터널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 제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63)

평창동 주민센터(☎ 2148-5121)

종로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안)

1) 제한지역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1번지 외 25필지(35,848㎡)

- 소유현황 : 사유지 18필지, 국·공유지 8필지

- 토지조서 : 별첨

2) 제한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한차례만 3년이내 기간동안 제한)

3)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한사유 :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녹화사업 및 원형보존하기 위하여 제척된 지역으로 개발시 주변의 환경·경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자연경관 유지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마.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공고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91호(2016.12.2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동 728-3호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동대문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번지
-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공지) 사업
- 다. 사업명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 라. 사업규모 : 공공공지 조성 201.3㎡
- 마. 사업시행자
 - 1) 성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2)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 사.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원녹지과(☎2127-4396)
- 차. 게재방법 : 시보게재

토 지 조 서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제기동	728-3	대지	201.3	201.3	민건식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 년도	규 모		소유자		비고
					층수	연면적 (㎡)	성명	주소	
해 당 없 음									

◆ 도봉구공고 제2017-211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51호(2014. 2.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봉구 창동 산192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를』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 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091-3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92, 산156-1 일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4,795㎡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019. 12. 31.까지

바. 주요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3/도봉구 마들로 656번지)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각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4,795	14,795										
1	창동 산192	임야	7,674	7,674	한정모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09동 601호(문정동, 문정래미안 아파트)	7.2/22							
					한정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5동 602호 (잠실동, 트리지움)	5.2/22							
					한인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3동 3201 호(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2.2/22							
					한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9, 202동 3104호(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2.2/22							
					한정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18동 2802호(신천동, 파크리오)	5.2/22							
2	창동 산156-1	임야	7,121	7,121	윤명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신사 동)	6/12							
					윤광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에이동 2902호(정자동, 로얄펠리스)	4/12							
					윤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406동 601호(구미동,까치마을)	1/12							
					윤성원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이주 록훤드시 어함 코트 3167	1/12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창동 산192	부속건물	과일창고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109동 601호(문정 동, 문정래미안아파트)	한정모	서울 도봉구 창동 산192	양순자	거주														
			공작물	42㎡																			
			배 저장고	22㎡																			
			콘테이너	17㎡																			
		베나무	R8cm~55cm	221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35동 602호(잠 실동, 트리지움)	한정국																	
		사과	R15cm~30cm	7주																			
		복숭아	R10cm	1주																			
		장미	R5cm	10주																			
		라일락	R5cm	1주																			
		주목	Rcm	1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133동 3201호(잠 실동, 레이크팰리스)	한인에																	
		체리	R5cm	2주																			
		매실	R5cm	2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19, 202동 3104호(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한인이																	
		포도	R5cm	2주																			
		아시아베리	R5cm	1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피로 435, 218동 2802 호(신천동, 파크리오)	한정선																	
		왕대추	R5cm	1주																			
		두릅	7년생	150주																			
		인동	R5cm	30주																			
		등나무	R5cm	30주																			
		덩굴장미	R5cm	10주																			
		사철나무	R5cm	2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베나무	벽돌건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3	청동 산156-1	부속건물		벽돌건물	2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 (신사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 2902호(정자동,로얄벨리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06동601호 (구미동,까치마을)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이주 록훤드시 어함코트 3167	운명배 윤광배 윤은자 윤성원	서울 도봉구 창동 신 156-1	양철봉	거주	
				벽돌건물	128㎡						
		수목	베나무	R10~50cm	493주						

◆ 양천구공고 제2017-261호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1호(2005.07.06.)로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6호(2005.12.29.)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3호(2016.12.29.)로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7층)(☎ 02-2620-3530)
3.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조서

1)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공공청사1	공공청사	신정동 1319-4, 5	1,865.7	감)1,865.7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문화체육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문화1	문화체육	신정동 1319-4, 5	-	증)1,865.7	1,865.7	-	-

3) 변경 사유서

- 지역 내 부족한 복합문화공간(양천구 중앙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 문화증진 등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 다.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4.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17-270호

공향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열람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향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1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강 서 구 청 장

-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II.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
-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가. 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

구분	가구 번호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7	등촌동	655-42	1,845.1	-	단독개발	
		등촌동	654-85	993.0	-	단독개발	
변경	7	등촌동	655-42	1,845.1	2838.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등촌동	654-85	993.0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군봉근린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서원동) 산170-142번지
 - 2). 면 적 : 2,18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 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사.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02-879-6504)
- 아.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신림동 (서원동) 산170-142	임야	등산로, 임야	7,375	2,180	최충경	50분의 21	관악구 신림동 10-458			
						최백경	50분의9	관악구 신림동 10-426			
						최의경	50분의 20	관악구 신림동 10-458			

◆ 관악구공고 제2017-250호

도시계획시설(장군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434호(2016.12.29.)로 공원조성(변경)계획 결정된 장군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을 시행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0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서원동) 산170-14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장군봉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서원동) 산170-142번지
- 2) 면 적 : 2,18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신림동 (서원동) 산170-142	임야	등산로, 임야	7,375	2,180	최총경	50분의 21	관악구 신림동 10-458			
						최백경	50분의 9	관악구 신림동 10-426			
						최의경	50분의 20	관악구 신림동 10-458			

◆ 서초구공고 제2017-2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초구고시 제8호(2017. 2. 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서초동 1376-1외 1필지 일대 외교안보 연구원 및 외교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나. 명칭 : 외교센터 용도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외교부장관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60
3. 공사완료(준공)현황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준공 (준공검사일)
외교센터 (서초구 서초동 1376-1번지일대)	- 대지면적 : 53,590㎡ - 건축물규모 : 4개동 · 연면적 : 49,013.57㎡ - 사업세부내용(가호 외교센터) ·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약품도매업))872.01㎡	서초구 고시 제2017-8호	2017.02.03 ~ 2017.02.08.	2017.2.15.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건축과(☎02-2155-682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17-24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3호(2005.06.0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3-75호(2013.8.1.)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사 완료되었기에 「동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0번지
(문정도시개발구역 9-2BL)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①	공공청사	법원/ 등기소	문정동 650번지	29,765	2005.06.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3호)	

○ 건축물 규모: 지하1층/지상12층, 연면적 45,106.22㎡,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대법원(서울고등법원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3. 7.
- 완료일 : 2017. 2. 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관리내용	성명	주소	
합 계				55,653	29,765						
1	문정동	340	답	3,655	193	에스에이치공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	-	-	
2	문정동	341-1	구	660	76						
3	문정동	342	답	3,669	1,417						
4	문정동	344-6	답	992	71						
5	문정동	344-7	답	963	815						
6	문정동	345	답	1,283	1,283						
7	문정동	346-2	답	2,304	1,847						
8	문정동	347-3	답	1,457	909						
9	문정동	348	답	1,012	36						
10	문정동	350	전	4,251	2,712						
11	문정동	351	답	2,136	2,136						
12	문정동	352	답	3,825	3,823						
13	문정동	353	전	3,577	2,430						
14	문정동	354	답	602	602						
15	문정동	354-3	전	1,226	1,177						
16	문정동	354-4	답	602	582						
17	문정동	354-5	전	610	127						
18	문정동	360	답	1,559	418						
19	문정동	361-1	답	2,778	20						
20	문정동	362	답	738	738						
21	문정동	362-1	답	752	752						
22	문정동	362-2	답	825	408						
23	문정동	363	답	3,445	565						
24	문정동	364	답	3,636	3,578						
25	문정동	365	답	651	338						
26	문정동	365-1	답	651	3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관리내용	성명	주소	
27	문정동	365-2	답	651	339	에스에이치공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	-	-	
28	문정동	365-3	답	651	312						
29	문정동	365-4	전	651	277						
30	문정동	365-5	답	651	102						
31	문정동	366	답	1,177	948						
32	문정동	367	답	4,013	3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송파구청 건축과 ☎ 02-2047-3027)

◆ 강동구공고 제2017-2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7-261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 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토지보상 8,357㎡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3필지		8,357	8,357						
1	산37	임	5,950	5,95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5950		
					알렉산더 더훈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5, 1201호(공덕동, 백상프로포즈오피스텔)			661.16/5950		
2	162-1	전	463	463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3	산50	임	1,944	1,944	임용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 성원아파트 102-1202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1-1101				1.2/23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64 삼익아파트 104-908				1.2/23	

지장물(건축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소 유 자		세대주	세대원	용 도	구 조
			계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성 명	주 소				
1	162-1	53.55㎡	주거용	38.16㎡	김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71(상일동)			주거용	
			화장실	3.51㎡						
			창 고	11.88㎡						
			관정	1개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92	서울시계 내 한강 (K&P 유선장 상부체 공사현장)	선박 2척 (기선1, 부선1)	K&P 유선장 상부체 공사 보조를 위한 선박운항	2017.2.16. ~ 2017.3.10.	2017. 2.16.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3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8.(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 3. 9. ~ 2017. 3. 22.(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05	김*수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로**다길 **	납세자 상세주소 ***호 (청파동*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06	이*순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라길 **-*	***호 (자양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07	쥬**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 창작개발센터)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15	김*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호 (가락동, 가락공원아파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18	김*진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일로**길 **	(자양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19	임*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가길 **	***호 (자양동, 한솔리베르아파트)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24	임*택, 최*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역삼동, 세동하우스)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29	이*우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대방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33	김*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호 (서초동, 서초이오빌)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37	김*우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B**호 (신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액 (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55	신*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호 0	(음암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56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나길 ***	(자양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0	김*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자양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1	전*봉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천호대로***길 **	***호 (중곡동, 선화빌라*차)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3	심*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길 *	***동 ***호 (선수동*가, 성수현대그림아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5	황*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논현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6	황*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길 **	***동 ***호 (잠원동, 신반포**자이파크)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069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3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7.2.23. ~ 2017.3.8.(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3.9. ~ 2017.3.22.(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09	동반한 애원건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김*화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논현동, 월드빌라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5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민, 이*우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호 (북면동, 시니어캐슬라시온)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캡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길 **-*	(서초동, 구유빌딩)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석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동 ****호	(본오동, 신안아파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중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5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C***E T***RRY J***PH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	****호 (충무로*가, 엘크루메트로시티)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1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계로***-*	***호 (지평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6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엄*수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진구 지암로**길 **-*	(구의동)
1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69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나*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길 **	지중 (반회동)
1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호 (공덕동, 공덕오피스타)
1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마로*길**	***호 (거여동, 성심빌라)
1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7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남*문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동 ***호 (청담동, 현대아파트)
1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7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7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권*훈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검암*로 **	***동 ***호 ()
1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쥬**지엘티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길 **	(정릉동)
1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95	지정장소의 야영, 취사	1,000,000	김*노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동 ***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0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1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1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훈	주소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로*번길 *-**	(동배동)
22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호 (휘경동)
23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현대*** 주식회사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대장동*가)
24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9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남*현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번길 **-*	(소사본동)
25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6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희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 (반포동)
26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7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7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8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8	10-288706	[시밀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7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옥*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미로**길 **-*	(회곡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2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들로 ***-***	***동 ***호 (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3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공*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서로**길 *	***동 ***호 (중계동, 주공*단지아파트)
3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공*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3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규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A동 ***호 (이의동, 광고엔트럴푸르지오시티)
3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심*욱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튜디오)
3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희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	내동 ***호 (신곡동, 진흥아파트)
3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6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탁*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상도동)
3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길 ***-**	***호 (창동, 삼성하우스)
3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계천로**다길 *	(마장동)
3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천*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로**가길 **	(청량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9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길 **-*	***호 (창동, 삼성하우스)
4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문로**가길 *	(보광동)
4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곽*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호 (가락동, 일정빌딩)
4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6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삼전동, 브레스빌)
4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문*범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림드리*길 **-*	(중남동)
4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미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번길 **	***호 (신흥동, 렉스빌)
4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9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뉴*드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오신로 **-*	()
4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희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당하동, 신인실크벨리아파트)
4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엄*섬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동 ****호 (금광동, 레미인공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4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0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장*호	폐문부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	****-***
4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지*신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본현동)
5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송*숙	폐문부제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	*층 (사우동)
5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수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	(봉천동, 정다운집)
5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식, 김*민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호 (지양동, 해연오)
5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남*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차신로*가길 **	(성수동*가)
5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안	폐문부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뚝현로**번길 **	***동 ***호 ()
5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3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영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문래동*가, 서울원림)
5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8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성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천호대로***길 **	(중곡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5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호 (상봉동, 드림하우스)
5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가길 **	지층 ***호 (천호동)
6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호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번길 **	*층 ***호 (주인동, 정우하이츠빌)
6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가길 **-*	(원효로*가)
6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7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6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동 ***호 (이촌동, 시범아파트(이촌동))
6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1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6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셀림***아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번길 **	*동 ***호 (금오동, 평화아파트)
6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일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영철로 **	*층동 **호 (주인동)
6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5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호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 (중산동, 한양수자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6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5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동 ***호 (봉천동, 낙성대현대아파트)
6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9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나길 **	(신대방동)
7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5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신*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적대로**길 **	***호 (동작동)
7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7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철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	()
7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20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이*현	폐문부재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길 ***-**	*층 (문화동)
7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상동구 응담**길 **	(응담동)
7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1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홍*만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길 ***-*	(도림동)
7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1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식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번길 **	B**호 (매탄동)
7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1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길 ***-*	(신길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원)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7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88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영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문래동*가, 서울원룸)
7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190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상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가길 **-*	*층 (흑석동)
7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2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문*철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호 (대치동, 센토빌라트)
8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55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정*훈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길 **	***동 ***호 (대림동, 갑을명기아파트)
8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양*호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길 **	(면목동)
8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24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곽*혁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길 **-*	지층 (삼선동*가)
8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3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석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길 **	**동 ***호 (잠실동, 우성아파트)
8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3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인, 김*순	폐문부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장기동, 초당마을중흥에스클래스리버타이파트)
8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6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삼	폐문부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길 **-*	(삼선동*가)
8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7-01	00033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담	폐문부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	()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구로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 서울(구로) -2017-0002호	㈜하나안전기술단 (110111-5685289)	이영진 (1975.1.6.)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49 (오류동, 랑데르)	010-9042-010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7-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초소방서장

1. 건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박정호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2 (미니레지던스 - 고시원)	건물 계단상 장애물(신발장) 적치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1.26. 납기일: 2017.03.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번호: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594-4119)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7-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송파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 서울(송파)- 2017-0001호 2017. 2. 17.	주동성방재이엔지 (110111-6316156)	김철술 (1954. 6. 29.)	서울특별시 삼학사로 30, 5층 503호 (석촌동,크레송빌딩)	02- 423- 89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위험물팀(☎ 431-410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43-14번지 등 49필지
 - 면 적 : 영구 15,0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응봉교 확장공사
 - 내 역 :
 - 연장(392m), 교대 1개소, 교각 6개소
5. 점용기간 : 2015.12.31.~영구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